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 격월간 공인회계사 저널

2024.12

격월간 9호  
(통권 370호)



창립 70주년 특집 I

창립 70주년 기념 역대 회장 인터뷰

창립 70주년 특집 III

창립 70주년 기념행사 둘아보기

- '줍깅' & 'KBS 열린음악회'

창립 70주년 특집 IV

창립 70주년 기념 학술행사 내용 보기

**KICPA**  
한국공인회계사회

## 경기도 하남시

# 대한민국 마린스포츠의 성지 '미사경정공원'을 품은 도시

지난 11월 2일 미사경정공원 일대에서 특별한 행사가 펼쳐졌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공인회계사회 회원과 가족 400여 명이 참여한 환경보호 플로깅 행사 '줍깅! 깨끗한 환경, 투명한 세상'이 진행됐다. 이번 줍깅 행사가 진행된 미사경정공원은 860아시안게임과 88서울 올림픽 당시 조정과 카누 경기를 위해 지어졌다. 대지면적 약 133만 평에 주경기장, 워밍업장, 녹지가 자리하고 있는데, 주경기장인 조정호수는 길이 2,212m, 폭 140m, 평균수심 3m가 넘는 규모의 위용을 자랑한다. 이 호수에서 물보라를 일으킬 만큼 빠른 스피드과 박진감 넘치는 경정 레이스가 펼쳐진다. 우승 예상 선수의 경주권을 구입해 승자를 맞히고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참여형 마린스포츠도 즐길 수 있어 인기다. 이외에도 잔디축구장, 족구장 등의 스포츠 시설과 잔디마당, 자전거대여소, 그늘막, 매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함께 갖추고 있어 여가와 레포츠를 즐기는 도심 속 자연 공간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다만, 미사경정공원은 근린공원처럼 24시간 출입이 가능한 곳이 아니므로 출입 가능 시간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다.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갈 예정이라면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출입할 수 있고, 자동차는 한 시간 뒤인 새벽 6시부터 8시까지다. 곳곳에 주차장이 잘 구비돼 있어 가족과 함께 공원을 찾아 스릴 넘치는 마린스포츠를 관람하거나 다양한 놀이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이다.

대한민국 마린스포츠의 성지이자 힐링 공원인 미사경정공원은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해 있다. 경기지역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하남시는 동쪽으로 경기도 광주시와 인접해 있고, 서쪽으로 서울시 송파구 잠실, 남쪽은 남한산, 북쪽은 한강을 경계로 경기도 남양주시와

인접해 있다. 인근 양수리에서 시작되는 한강 줄기가 하남시를 동서로 가로지르면서 흐르고, 남한산성이 인접해 있어 수도권 내에서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도시로 손꼽힌다.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거주했던 하남지역이 역사적으로 크게 주목받은 때는 삼국시대부터다. 백제 시조 온조왕 13년(기원전 6년)에 현재의 하남시 춘궁동 일대를 도읍으로 정하고 '하남 위례성'이라 부른 이래 백제 근초고왕 25년(370년)까지 백제의 도읍지로 존재했다. 그러나 고려 태조 23년(940년)에 한주에서 광주라 고쳐 불렀던 것이 조선까지 이어졌다. 이후 1989년 1월 경기도 광주군의 일부가 합쳐지면서 하남시로 승격됐고, 지금의 경기도 하남시로 발전했다.

글\_박세나 기자(park.sena@joongang.co.kr)  
사진\_중앙포토



공인회계사 저널 2024년 12월호(격월간 9호 / 통권 370호)

발행일 2024년 12월 18일 발행인·편집인 최운열 발행처 한국공인회계사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 TEL 02-3149-0100 FAX 02-3149-0200)

편집디자인 중앙일보(TEL 02-2031-1023) 저널편집위원 김범준 / 김태영 / 김항규 / 김희은 / 박규서 / 박세환 / 백광업 / 서원정 / 신경철 / 심규택 / 안해정 / 유형주 / 이상도 편집장 박영철 편집기자 이동주 홈페이지 [www.kicpa.or.kr](http://www.kicpa.or.kr) E-mail [journal@kicpa.or.kr](mailto:journal@kicpa.or.kr)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본회의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 사회공헌·홍보팀(TEL 02-3149-01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옮길 때에는 반드시 '한국공인회계사회『공인회계사 저널』제〇〇〇호(〇〇년〇〇월)'에서 옮겼음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창립 70주년 특별기획

회장 인사말	"투명하고 건강한 경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02
특집 I	창립 70주년 기념 역대 회장 인터뷰 / 본회 사회공헌 홍보팀	04
특집 II	창립 70주년 기념식 현장 속으로 / 본회 사회공헌·홍보팀	08
특집 III	기념행사 둘아보기 - '줄깅' & 'KBS 열린음악회' / 본회 사회공헌·홍보팀	18
특집 IV	기념 학술행사 내용 보기	25

## 피플&오피니언

뷰&뷰포인트	K-회계가 벌류업에 기여하려면 / 백광엽 한국경제 논설위원	43
기자의 눈	'회계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 / 박순업 이데일리 기자	47



## 감사

외부감사 I	기업사냥꾼에게 감사인이 속지 않으려면 / 이주연 금융감독원 회계감리국 수석검사역	49
외부감사 II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2024.10.) 주요 내용 / 강수경 본회 감사인증기준본부 조사역	53

## 기업보고

회계기준	(IASB 공개 초안) 재무제표에서의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 사례 제시 주요 내용 소개 / 김태윤 한국회계기준원 선임연구원	57
IFRS 실무 적용 사례	K-IFRS 제1115호의 적용범위 및 고객과의 계약의 정의 / 장기영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62
ESG경영 리포트	비금융 기업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 지침 - 시나리오 프로세스 심재경 삼일회계법인 Sustainability Team 파트너	67
집중기획	'실효성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컨설팅 성공사례 정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 박상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72
사회공헌	공인회계사와 함께하는 "회계"와 "미래" - 2024년 중학교 1학년 대상 회계 교육 이동천 동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이용진 태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75
회계이슈	재무빅데이터분석사(FDA) 1급 합격자 후기 이홍규 휴업(회원) / 이기환 태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송민성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권현택 한율회계법인 공인회계사	79



## 세무

세무브리핑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 / 김수정 케이에스세무회계 공인회계사	86
세무판례해설	배우자 증여 후 자기주식 이익소각의 실질과세 가능 여부 이동건 국립한밭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법학박사/공인회계사	89
세무현장 24시	미국 주식, 연말에 팔았다 다시 사면 세금 줄일 수 있나? / 김예희 공인회계사	93

## 경영과 트렌드

스포트라이트	저축은행 산업 전망 / 이정현 NICE신용평가 수석연구원 침체의 눈에 빠진 건설산업 진단 / 권준성 NICE신용평가 책임연구원	96
법률라운지 I	지급명령신청 - 감사수수료 미지급 시 법적 조치 / 최지영 법무법인 정안 변호사	104
법률라운지 II	원천세 신고 대리 업무에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 박지인 법무법인 정안 변호사	106



## 쉼표와 느낌표

이코노 북카페 I	"처음부터 89페이지까지 달달 외워라" / 여경미 포브스코리아 기자	109
이코노 북카페 II	부자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성공 방정식 / 오유진 중앙SUNDAY 기자	111
컬쳐&라이프 I	약속 - 과거의 나와 당신에 대한 믿음 / 김소율 미술치료학 박사 / 플로리다마음연구소 대표	113
컬쳐&라이프 II	이국적인 국내여행지 - 무주 덕유산 / 동두천 니지모리스튜디오 / 이환수 여행 작가	117





## 회장 인사말

“투명하고 건강한 경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954년 한국계리사회로 출범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24년 창립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 공인회계사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회원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만 8천여 회원과 함께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전문가 단체로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성장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 전반에 투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지난 역사를 성찰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공인회계사가 국가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곧 국가 경제의 뿌리를 지탱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 70년의 발자취

1954

한국계리사회  
발족

1960

한국계리사회  
회계감사기준 제정

1970

평의원회 설치

1980

기업회계기준 제정

1966

공인회계사법 제정  
(계리사법 대체)

1973

정부, 재무제표  
감사증명에 관한  
규정 제정

1983

세무대리종합  
관리규정 제정

1966

한국공인회계사회로  
명칭 변경

1975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C) 가입

1984

제18차 아시아·  
태평양회계사연맹  
(CAPA) 상임이사국  
서울회의 개최

1969

계리사의 감사증명에  
관한 규정 설치

1978

국제회계사연맹  
(IFAC) 가입

이번 70주년은 기념식, 학술행사, 간담회, 공모전,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많은 회원 및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공인회계사 70년 역사를 되새기고,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도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투명하고 건강한 경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맑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장 



1954-2024

## 1990

**1992**  
「한국공인회계사회  
35년사」발간

**1994**  
국제회계사연맹  
(IFAC) 윤리위원회  
서울회의 개최

**1997**  
국립동회계사무소  
폐지 및 공인회계사  
손해배상책임제도 도입

## 2000

**2001**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1,000명 시대 개막

**2004**  
공인회계사  
50년사 발간

**2006**  
XBRL KOREA,  
XBRL International  
Inc.의 정규회원 승격

## 2010

**2010**  
국가회계기준센터  
설치·운영

**2013**  
IFAC 서울 2013  
평의원회 개최

**2016**  
제1호 회계인  
명예의 전당 헌액  
(조의순 교수)

## 2020

**2020**  
「회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2022**  
「표준감사시간」  
개정 공표

**2022**  
미션 및 Vision 2030  
수립, CI 개정

**2024**  
한국공인회계사회  
창립 70주년



# 창립 70주년 기념 역대 회장 인터뷰

지난 10여 년간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이끌었던 세분의 역대 회장님에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소회를 들어보았다.



**강성원**  
41·42대(2012~2015년) 회장



**최종경**  
43·44대(2016~2019년) 회장



**김영식**  
45·46대(2020~2023년) 회장

**Q1**

오는 12월 11일에 한국공인회계사회  
(이하 '한공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습니다. 축하인사와 함께 덕담  
부탁드립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7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60주년 행사를 치른 것이 며칠 전일 같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 벌써 10년이 흘렀다니 감회가 깊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앞날에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70주년을 맞이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고 높아진 위상에 따른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국민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전

문성 향상과 한국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조화시키는 작업을 다 같이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창립 70주년, 고희연(古稀宴)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희(古稀)'란 '드문 나이'라는 뜻으로 풀이되니, 무엇이든 70년을 이어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옛 어른들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대한민국 기업들 중 창립 이후 70년 이상을 유지해 온 기업 수는 두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공회를 이끌어주셨던 선배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한공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 후배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Q2**

**한공회 회장 퇴임 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강성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현회계법인의 초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201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회계업계 최초로 서현학술재단 이사장을 맡아 지식 기반 사회에 필요한 학술진흥과 우리나라 회계·세무업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힘써오고 있습니다.



최종경

한미협회 활동을 통해 한미동맹의 의미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보수주의자들의 가치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미동맹은 민족의 이슈이지 이념의 이슈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우리 민족이 정체성을 유지하며 독립국가로 존속하면서 번영할 수 있는 국제역학구도상 solution이 한미동맹입니다. 공인회계사들이 한미동맹 유지 발전을 위한民間 차원의 활동을 많이 지원하고 있어서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식

한공회 회장 시절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높아지는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한 많은 아이디어와 실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현회계법인의 초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201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회계업계 최초로 서현학술재단 이사장을 맡아 지식 기반 사회에 필요한 학술진흥과 우리나라 회계·세무업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힘써오고 있습니다.

- 강성원

**Q3**

**한공회 회장 재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인물을 꼽으신다면?  
그 이유도 함께 소개해 주십시오.**



최종경

한공회 회장으로 취임한 첫해였던 2012년 12월 30일, 한공회 숙원사업이던 감사인의 연대·무한 손해배상책임제도를 비례책임제도로 개선시켰던 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내외 귀빈들을 모시고 12월 창립총회를 63빌딩에서 개최하였는데, 그때 김한길 민주당 대표, 박영선 법사위원장, 김관영 민주당 의원(공인회계사) 등을 모셨고, 그분들께서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자리 를 빌려 다시 감사 말씀드립니다.



최종경

2017년 회계개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회계 역사에 길이 남을 대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복식 회계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사용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송도 사개치부법에 이어 회계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되찾은 대사건입니다. 우리 회계개혁 진전 상황을 세계의 회계업계와 회계학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한공회 회장 취임 이후 가장 먼저 한공회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였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KICPA 통합플랫폼 도입 등 비대면·디지털·온라인으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함께 진행되어 더욱 의미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회계투명성'이라는 Vision2030 선포하며, KICPA 이니셜을 활용한 핵심 가치(Core Value)로써, 지식(Knowledge), 성실(Integrity), 협력(Collaboration), 공익기여(Public Interest), 사회적 책임(Accountability)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Q4**

**회계업계가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미래를 준비하는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강성원

회계개혁 안착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부담은 고려하되, 자본시장 선진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회계개혁은 면춰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AI와 빅데이터 등을 회계감사 등에 잘 활용하여 전문가의 역량 제고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길 바랍니다.



최종경

회계개혁을 연착륙시키는 것입니다. 회원 모두가 회계사 직업의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의 경제적 득실을 떠나 회계업계 전체를 생각하고 처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계개혁 완성은 정

부도 기업도 아닌 회계사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김영식

일부 기업들이 회계감사를 단순히 소모적인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 비용을 회계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인회계사들은 디지털 혁신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한공회가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회원 모두가 회계사 직업의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의 경제적 득실을 떠나 회계업계 전체를 생각하고 처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계개혁 완성은 정부도 기업도 아닌 회계사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 최중경

**Q5**

**한공회가 2만 8천 회원들을 위해 해줬으면 하는 것과 어떤 역할을 기대하십니까?**



강성원

한공회가 회원의 위상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책임감 있는 전문가 단체로서 자율·자정·공익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전문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가사회와 공인회계사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 해주십시오.



최종경

회계개혁 연착륙을 위한 자경대 역할에 충실했어야 합니다. 충분히 벌고 있으면서도 몇 푼 더 벌겠다고 수임 질서를 흐리는 일부 회계법인에 철퇴를 가하고, 관련 임원을 업계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악역을 기꺼이 맡는 용기와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한공회가 머뭇거리면 회계개혁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회계사는 2류 직업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김영식

한공회가 단순히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가 아니라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이 전문가적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역량을 강화해서 대한민국에서 보다 신뢰받는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한공회가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 Q6

## 후배 공인회계사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성원

1954년 계리사 30여 명에서 시작해 오늘 날 2만 8천여명의 회원을 가진 국내 최고의 전문가 단체로 우뚝 서기까지 선배 공인회계사들은 헌신과 희생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들의 수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업계가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도 공익을 실천하는 공인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전문가적 성장이 국가 경쟁력의 지표로 이어지는 직업은 공인회계사가 유일하다는 자부심도 잊지 마십시오.**

- 김영식



최종경

이제 막 회계사라는 직업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젊은 회계사들은 일부 선배 회계사들의 직업질서 문란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마시고, 선배 회계사들은 회계사 직업의 사회적 책무와 존엄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시길 머리 숙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영식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자본 시장이 고도화되면서, 공인회계사의 역할은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에 비례해서 책임 역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후배 공인회계사 여러분, 매우 어렵고 힘든 시험과 연수 과정을 마치고 공인회계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순간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공인회계사의 최우선 덕목인 미션 “우리는 투명한 회계로,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구축함으로써,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공헌한다”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진정한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개인의 전문가적 성장이 국가 경쟁력의 지표로 이어지는 직업은 공인회계사가 유일하다는 자부심도 잊지 마십시오.❶





##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공헌한 공인회계사 70년” “믿을 신 信”→“셈 수 數”→“신(信)의 한수(數)”

창립 70주년 기념식 현장 속으로

우리 회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공인회계사 회원과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장 부코 국제회계사연맹(IFAC) 회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선 오프닝 공연, 기념사, 축하영상 및 축사, 시상식, 70주년 기념 퍼포먼스 만찬, CPA뱅드 축하공연 순으로 행사가 이어졌다. 행사장의 생생한 감동을 담아본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동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오픈 공연





##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기념사



존경하는 2만 8천 회원 여러분!

1954년 발족한 우리 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매우 자랑스럽고 기쁜 마음이며, 지금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증권선물위원회 이윤수 상임위원님, 국제회계사연맹(IFAC) 장 부코(Jean Bouquot) 회장님 등 많은 귀빈 여러분께도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0년간 공인회계사는 경제성장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감사와 세무, 경영자문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나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역사 속 공인회계사의 수많은 활약상은 숫자로 구현

되는 경제에 신뢰를 심어줬다는 점에서 “신(信)의 한수(數)”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은 “외부감사법” 제정을 계기로 보다 확대되었고, 회계개혁으로 알려진 “신 외부감사법”으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주기적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으로 대표되는 회계개혁은, 회계투명성 강화와 이해관계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세계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정부와 기업, 회계업계는 세계적 모범사례로서 회계개혁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세계가 바라보는 회계투명성은 10 대 경제 강국 위상에 비해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회계투명성 부족의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가 글로벌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회계개혁의 일부 후퇴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계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안착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기업과 감사인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때 회계개

혁은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외부감사 비용을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 가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야 하고, 감사인은 기업의 어려움을 살피며, 높은 수준의 산업 전문성과 감사품질로 Value-up을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회는 회원 권익증진과 위상 제고에 노력하면서, 공적 직능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도 더욱 확대·강화하고자 합니다.

자체 「신문고」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직업윤리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개설한 「비영리 통합플랫폼」을 기반으로 회계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지자체 등 비영리·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산재된 회계기준의, 기본적이며 공통된 원칙을 정하는 「회계기본법」 제정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회계기본법 제정시, 회계정보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높아져 정부의 통일된 회계정책 수립과 효율적 재정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지속가능성 인증분야의 전문가로서 ESG 공시의 무화에 필요한 정부의 인증제도 마련을 적극 지원하고, ESG 아카데미를 통해 최고의 인증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AI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기업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 만큼, 데이터 분석과 디지털 감사 등 공인회계사에 대한 디지털 기술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AI 등 신기술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의 창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공인회계사의 “전문성과 통찰력”이, 디지털 기술과 접목된다면, 회계투명성과 기업가치 증대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랑스러운 2만 8천 회원 여러분!

회원 여러분이 끊임없이 노력하며, 주어진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 주신 덕분에, 우리 회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신뢰받는 단체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과 함께 회계산업의 상생발전을 지향하며 우리 회를 더욱 성장·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의 공적기능을 저해하거나 회계투명성을 약화시키는 시도에 적극 대응하고, 회계 사각지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회에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하 메시지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앞으로의 70년은 지난 70년보다 더욱 발전하고 국가 경제와 회계투명성 강화에 기여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장 윤한홍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954년 한국계리사회 발족을 시작으로, 지난 70년 간 건전한 시장경제 조성과 경제 성장에 이바지했습니다. 공인회계사 여러분께서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덕분입니다.

이외에도 기업 경영의 투명성 강화, 선진 회계제도 도입 등 투명사회 구현에도 힘써주셨습니다.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회계투명성’이라는 한국공인회계사협회 비전 실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회계업계의 업적을 되새기며, 앞으로의 70년을 준비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디지털 혁명과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 발전으로 인해 공인회계사와 회계업계의 업무 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회계업계는 새로운 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여러분께서는 관련 기술을 업무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들이 새로운 업무 환경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70년은 지난 70년보다 더욱 발전하고 국가 경제와 회계투명성 강화에 기여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창립 70주년을 축하드리며, 공인회계사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하 메시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 “우리 사회의 공익회계사로서 우리 경제에 튼튼한 베풀목”

한국공인회계사회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계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1954년 창립 아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함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헌신해 오신 공인회계사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계사로서 일했던 그 경험이 회계 지식과 경제에 대한 그 개념 때문에 의정활동이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국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할 수가 있어서 축하의 인사를 대신 전하고 있는데요. 꼭 참석해서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70년간 공인회계사는 우리 사회의 공익회계사로서 우리 경제에 튼튼한 베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초선 의원이었던 20대 때, 공인회계사 출신인 제가 신(新)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을 위해서 혼신하고 노력하고 법을 통과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낮게 평가되고 있었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 을 했고, 기적과 같이 신(新)외부감사법이 통과되었던 그리고 그 감격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회계투명성이 점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시 점에 우리 공인회계사와 회계업계의 위상도 함께 높



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경제가 지금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요.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공인회계사 여러분께서 전문성과 윤리의식으로 무장하여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진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이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일했던 그 초심 잊지 않고 의정활동도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든든히 한국의 회계투명성을 지켜주시고, 경제적 의사결정에 기본정보가 되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더욱더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국공인회계사회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 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축하 메시지



한덕수 국무총리

###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힘써 주시기를”

존경하는 공인회계사 여러분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애써오신 최운열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는 공정한 자본시장의 주요한 토대입니다.

공인회계사 여러분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회계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회계제도 개혁과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으로 기업 회계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재무정보의 투명한 공개, 회계사 분들의 공적 사명감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이 조화를 이룬다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의 확대와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 넓고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계의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공정한 감시자 역할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고품질의 회계정보를 제공하여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세계가 신뢰하는 선진경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립 70주년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 장 부코 IFAC 회장이 축사하고 있다.



### 표창 수상자 명단

#### 금융위원장상

마명훈(대주회계법인), 민옥기(선일회계법인),  
상신규(세정회계법인), 임근구(삼정회계법인),  
이재경(삼덕회계법인)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상

박근영(한영회계법인), 이록영(안진회계법인),  
김종필(인덕회계법인), 남궁진(삼화회계법인),  
박준서(한경회계법인), 강동근(안경회계법인),  
윤형두(윤형두회계사무소), 정인철(동명회계법인),  
박민선(회계법인 늘봄), 김성은(신흥세무회계)

#### 창립 70주년 기념 스폰 챌린지

대상 이경화(한국공인회계사회)  
우수상 양하야민(대율회계법인)

#### 수습회계사 성적우수상

- 1년차(기본실무)  
**최우수** 천홍태(삼일회계법인)  
우수 전미진(삼일회계법인), 민지혜(삼일회계법인),  
장려 임상진(삼정회계법인), 유준수(삼정회계법인),  
임성훈(삼정회계법인), 한동원(삼일회계법인),  
조훈(삼정회계법인), 오제상(안진회계법인),  
정다미(삼정회계법인), 김정현(삼일회계법인)

#### - 2년차(외감실무)

**최우수** 손광영(삼정회계법인)  
우수 최해진(한영회계법인), 이효원(삼일회계법인),  
장려 진형석(안진회계법인), 최지호(삼일회계법인),  
황지영(삼정회계법인), 김혜지(안진회계법인),  
제태임(안진회계법인), 김혜민(삼정회계법인),  
김정(삼정회계법인), 송호진(삼정회계법인)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음악 동호인회 'CPA 밴드'가 축하 공연을 하고 있다.





&lt;사진 1&gt; 최운열 회장이 줍깅 행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기념행사 티아보기

- ‘줍깅’ & ‘KBS 열린음악회’

### ‘줍깅! 깨끗한 환경, 투명한 세상’ 성료

지난달 2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첫 행사가 경기도 하남시 미사경정공원 일대에서 개최되었다. 줍깅은 ‘줍다’와 ‘조깅’의 합성어로, 걷고 달리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을 의미한다. 이날 행사에 400여 명의 공인회계사 회원과 가족들이 참여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오전 일찍 도착한 참가자들은 등록 부스에서 사전 참가 신청 내역을 확인한 뒤, 손목밴드와 플로깅 키트를 받았다<사진 2>.

치어리더들의 오프닝 공연에 이어 사회자의 인사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개회사에서 최운열 회장은 “ESG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끄는 가운데 창립 70주년 기념 첫 행사로 공인회계사 회원들이 환경보호(E)와 관련해 작은 실천을 해보자는 취지로 줍깅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사진 1>.

준비 운동을 마친 참가들은 시작점으로 이동하여 출발 신호를 기다렸다<사진 3>. 그리고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대망의 ‘줍깅’이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출발하였다. 코스는 2시간~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기본 코스(5.5km)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위한 하프 코스로 나뉘었다. 코스별 길목마다 다양한 미션과 이벤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다.

<사진 2> 등록을 마친 참가자



<사진 3> 참가자들이 시작점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 4> 쓰레기 봉투를 들고 코스로 진입하는 참가자들



<사진 5> 참가자들이 줍깅 코스에서 고리던지기 미션에 도전하고 있다.



<사진 6> 참가자 가족이 쓰레기를 줍는 자녀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고 있다.



<사진 7> 줍깅 코스를 돌며 모은 스탬프를 보여주고 있다.





줄깅 외에도 가족 단위 행사 취지에 걸맞은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많았다. 참가자들은 네일아트와 스피드 캐리커쳐, 페이스 페인팅 등 각 행사 부스를 방문하여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사진 9,10,11>.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게 준비된 에어바운스존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사진 12,13>. 사회자의 재치 있는 진행으로 분위기가 한층 고양된 가족 레크레이션 타임에선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돋보였고, 별룬&버블쇼는 아이들의 관심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사진 14,15,16,17>.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 경품추첨 시간은 손에 땀을 쥐게 했다. 번호가 불릴 때마다 사람들의 희비가 교차했다<사진 18,19,20,21>.



&lt;사진 8&gt; 줄깅 스템프 릴레이 상품 교환소



&lt;사진 9&gt; 스피드 캐리커쳐 부스를 찾은 참가자



&lt;사진 10&gt; 프리킥 다크 이벤트 참가를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lt;사진 11&gt; 여자아이가 바디페인팅을 받고 있다.



<사진 12> 아이들이 에어바운스존에서 놀고 있다.



<사진 13> 참가자가 에어바운스존에서 자녀와 놀아주고 있다.



<사진 14> 참가자들이 가족 레크레이션에 참여 중이다.



<사진 15> 골든벨 퀴즈에 도전 중인 아이들



<사진 16, 17> 참가자들이 벌룬&버블쇼를 즐기고 있다.





<사진 18, 19, 20, 21> 경품추첨 당첨자들이 무대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최 회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창립 70주년 기념행사인 ‘줄깅’이 성황리에 마쳤다.

<사진 22> 참가자가 기념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KBS 열린음악회’ 속으로

지난달 12일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표 음악 프로그램인 ‘KBS 열린음악회’의 녹화 날이었다. 창립 70주년을 맞아 준비한 두 번째 행사다. 이날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하하고, 공인회계사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준비된 자리였다. KBS 열린음악회는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공인회계사회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회계사 직업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도 있었다. 좌석이 한정되어 선착순(회원 1인당 2명까지 신청 가능)으로 신청받았는데, 금시에 마감이 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티켓 배부처에서 티켓을 받고, 대기하는 동안 포토월에서 인증 사진을 찍는 등 저마다 공연 입장을 기다렸다<사진 1,2,3,4>.

사회자가 유머러스한 진행으로 공연 전 막간에 관객들의 홍을 돋우었으며, 최운열 회장의 인사 말씀도 이어졌다<사진 6,7>. 주최 측의 요청으로 공연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불가했다. 본 방송은 12월 8일 방송되었으며, 본 방송을 시청하지 못한 경우라도 ‘KBS 홈페이지’→‘다시보기’를 통해 볼 수 있다.❶

<사진 1> 신청자가 티켓 배부처에서 신청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 2> 신청자들이 공연 전 포토월에서 사진 촬영하고 있다.



<사진 3> 공연 입장 전, 본인의 좌석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 4> 신청자들이 공연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5> 관객들이 공연장으로 입장하여 공연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6> 사회자가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사진 7> 공연 전 인사말하는 최운열 회장



<사진 8> KBS 흘 외부 전경



<사진 9> 최운열 회장이 공연 후 포토월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기념 학술행사 내용 보기

창립 70주년을 맞아 우리 회에서 준비한 학술행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및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된 동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1

[설명회] 비영리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알고리즘  
- 비영리회계플랫폼과 실무사례 해설 (11.20. 수)

고재근·본회 공공·비영리본부 팀장

### I\_도입말

공익법인은 교육, 복지, 환경 보호, 지역사회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공익법인회계 기준은 공익법인이 투명한 재정 관리를 실현하도록 돋는 지침으로, 이에 따른 재무보고는 단순한 규정을 넘어 공익법인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신뢰받는

조직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혁신기술 개발, 중소기업 지원, 녹색 성장 등 다양한 보조금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조금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조금의 사용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조금 검증은 단순히 회계절차를 점검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조금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며 부정 사용이나 관리 부실을 적발하고 예방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20일 ‘비영리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알고리즘 - 비영리회계플랫폼과 실무사례 해설’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사례와 보조금 검증 실무사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각 세션에서는 비영리회계 실무자가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로 다루며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비영리조직 실무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도구로 KICPA 비영리통합플랫폼(<https://nrops.kicpa.or.kr>)을 선보이며 활용방법을 시연했다.

## II\_설명회의 주요 내용

### 세션 1: 공익법인 회계기준 실무사례 해설

발표자: 최호윤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더함)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제정 취지와 기본원칙, 보고 실체 및 회계단위 설정, 재무제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순자산 분류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설정 및 활용 사례가 공유되었으며, 후원금 관리 및 공통비용 안분에 대한 실무사례가 제공되었다.

#### ①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제정취지 및 기본원칙

공익법인회계기준은 다양한 주무부처와 개별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조직간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과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영리조직과 동일한 회계의 기본원칙을 공유하면서도, 정관에 따른 목적사업별 회계단위 구분이나 자본 대신 순자산 개념과 같은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사진> 최호윤 공인회계사가 '세션 1'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② 공익법인의 보고 실체와 회계단위 설정

보고 실체를 법인 전체로 정의하며, 모법인과 지회, 산하 기관 등을 포함하여 재무제표를 통합적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구분기준은 법인세법에서 과세목적으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는 것과는 다르며, 정보이용자가 공익법인의 설립 목적과 운영 실태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구성 및 작성 시 고려사항**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으로 구성되며, 현금흐름표(수지결산서)를 제외하여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비해 재무제표 작성의무를 완화하였다. 재무상태표는 공익법인의 유동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여주고, 운영성과표는 사업별 사업 수행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 간의 내부 거래를 제거하고, 사업별 비교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공익법인의 순자산 분류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순자산조정, 보통순자산으로 구분된다. 이 중 기본순자산은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사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되는 자산이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공익법인이 수의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회계처리 시 결산조정 방식 또는 신고조정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⑤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 적용 사례

CMS와 지로를 통한 후원금 관리 시 시점별 회계처리, 물품 후원의 수령 및 분배 시 회계처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과 사용 시 회계처리 등 다양한 실무사례가 다루어졌다. 특히, 공통비용의 안분은 비용의 성격과 속성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꾸준히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사업별 성과의 왜곡을 예방할 수 있다.

강의영상은 KICPA비영리통합플랫폼(<https://nrops.kicpa.or.kr>) 공익법인-실무교육에 게재될 예정이다.

### 세션 2: 보조금 및 연구개발비 정산 검증 실무 사례 해설

**발표자:** 김철희 본부장 (본회 공공·비영리본부)  
보조금의 회계감사 대상 기준, 집행 및 정산 과정에  
서의 주요 이슈, 그리고 정산보고서 검증 절차에 대  
해 다뤘다.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등 주요 항목별 검  
증 시 유의사항이 강조되었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부정사용 방지와 관리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회계감사 대상과 검증보고서 작성 대상의 판단  
보조사업자의 회계감사 대상은 동일 회계연도 내 교  
부받은 보조금 총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러 보조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보조금  
을 합산하되,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은 별도로 합  
산해 각각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검증보고서  
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별 보조금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작성해야 하며, 이  
때도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은 각각 별도로 합산  
해 판단한다.

#### ② 보조사업 집행기준과 운영관리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은 사업별로 별도의 집행  
기준이 적용되므로, 정산 및 검증 시 반드시 해당 기  
준과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법령과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성실히 집행해야 하며, 다  
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전용계좌 관리  
및 친족간 거래 제한 등 집행과 관련된 다양한 위반  
사례가 강조되었다.

#### ③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국고보조금은 1억원 이상, 지방보조금은 3억원 이상  
일 경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해 검증기관의 검  
증을 받아야 한다.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해 다른 회계감사 업무  
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예외적으  
로 중앙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은 경  
우에만 허용된다.

#### ④ 비목별 검증 사례

보조사업 집행 시 지출거래의 증빙서류 확인은 필수  
다. 또한, 계약 절차와 거래의 적정성 확인을 해야 한  
다. 사적 이해관계자의 계약위반, 실적 부족 업체와  
의 거래 등 부정사용 사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인건비 검증은 참여인력 현황표를 통해 인력 정  
보의 정확성과 변경사항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월별 참여율의 정확성도 검토해야 한다. 일반  
수용비는 지출내역이 사업 관련성과 적법성을 충족  
하는지, 카드 매출전표와 거래명세서를 통해 지출 세  
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강의영상은 KICPA비영리통합플랫폼(<https://npops.kicpa.or.kr>) 보조금-실무교육에 게재될 예정이다.

### 세션 3. 'KICPA비영리통합플랫폼' 안내

비영리회계 실무자의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KICPA비영리통합플랫폼'은 디지털 시대 비영리회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간단한 회원가입만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주요기능

#### ① 통합 정보 제공

공익법인, 사학기관, 공동주택, 집합건물, 대규모점포 및 보조금의 다양한 비영리부문의 회계·감사와 관련된 법령, 회계기준, 감사실무자료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며 정보이용자가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 ② 전문가와의 협업 지원

외부감사인(또는 검증기관) 추천 서비스와 연구자료, 세미나 정보를 통해 비영리조직과 전문가 간 협업 및 정보 교류를 지원한다.

#### ③ 실무 역량 강화 지원

회계관련 교육콘텐츠와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통해 비영리조직 실무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III\_맺음말

이번 설명회는 비영리조직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유익한 자리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제정 취지와 실무 적용 사례를 통해 비영리조직의 재무정보

**‘ 이번 설명회는 비영리조직 실무자들이 회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한 자리였다. 논의된 성과를 바탕으로 비영리조직이 투명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공 및 신뢰도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실무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 점이 주목받았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보조금과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이슈와 검증 방법을 소개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적 대안을 제시하며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KICPA비영리통합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회계관리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 플랫폼은 통합된 정보 제공과 협업 지원, 역량 강화를 통해 비영리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비영리조직 실무자들이 회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한 자리였다. 논의된 성과를 바탕으로 비영리조직이 투명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KICPA 비영리통합플랫폼 : 비영리 회계·감사 지식의 허브

(<http://npops.kicpa.or.kr>)

비영리통합플랫폼에서는  
비영리부문별 회계 및 감사자료와  
교육 콘텐츠,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2

## [세미나] 회계의 역사와 미래 (11.29. 금)

**I\_한국의 회계 역사: 개성 자본회계 전후사의 재인식**

발표자: 전성호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1) 도입말**

2013년 한국 언론은 개성상인이 사용한 세계 최고 수준의 현대식 회계장부 발견 소식을 보도했다. 이는 개성 래봉장 호텔에서 발견되었으며, 2014년 문화재청에 의해 ‘개성 복식부기 장부’로 등록문화재 제 587호로 지정되었다. 이 자료는 기존 회계사학계에서 중세 유럽에서 기원한 것으로 여겨지던 복식부기 (Double Entry Bookkeeping, 이하 ‘DEB’) 기원을 재조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기업 회계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중세식 DEB와 현대식 DEB**

‘중세식 DEB’는 15세기 이탈리아 루카 파치올리의 저서에서 기원했으나, 개성상인은 약 300년 앞서 복식부기를 사용했다. 특히 개성상인의 금궤이론은 현금 계정을 독립된 개체로 관리해 대차대조표 원리와 유사하다.

‘현대식 DEB’는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 간의 정보 투명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복식부기 원칙을 의미한다. 개성상인의 기록은 원가 관리와 수익 계산 등 오늘날 재무제표의 필수 요소와 매우 유사하다.

**(3) 한국 자본 회계의 전사(前史)**

① 신석기 시대 - 회계의 기원: 한국의 기록 유산으

로 서예(書藝 Art of Writing)의 최초는 울주 암각화를 꼽을 수 있다. 울주 반구대 암각화는 한반도의 사냥 활동을 자산 목록으로 기록한 것으로, 초기 회계의 형태로 간주된다. 영업 활동 결과(사냥 성공과 실패), 자산 목록(고래, 사슴 등), 사냥도구(작살, 배) 등의 기록은 원시적 회계장부로 평가된다.

② 상고 사회 - 매듭의 정치(結繩之政): 주역(周易)에 기록된 ‘매듭의 정치’는 약속과 회계 기록을 의미한다. 고대 한국인은 매듭으로 회계를 관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③ 통일신라 - 회계 기록과 총계정원장: 신라촌락 문서가 오늘날 총계정원장의 초기 형태로 대차평균 원리를 반영하며 현대 회계구조와 유사하다.

④ 고려시대 - 개성상인의 금융과 회계 유산: 개성상인은 금융과 회계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특히 신용 거래 중심의 금융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무담보 신용 거래, 유동성 우선 원칙, 간결성, 고려시대 기원 설 등으로 요약된다. 개성상인의 회계 장부는 기업 실체 회계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⑤ 조선시대 - 국가 및 비영리조직 회계: 조선 왕조는 창고 관리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했으며, ‘용하기(用下記)’라는 회계장부는 약 400년간 동일한 원칙으로 기록되었다. 이는 오늘날 국제회계기준의 4대 기준(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 가능성)과 일치한다.

**(4) 자본 본사(本史)**

① 원가 회계와 자본 관리: 개성상인은 원가 흐름도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비용을 관리했으며,



임금, 원자재 비용, 운송비 등 다양한 회계 항목을 기록했다. 이익 배분과 자본 흐름 관리도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현대 기업 회계의 기본 원칙과 유사하다.

② 분산 원장과 상계 시스템: 개성상인은 거래 기록을 분산 원장으로 관리했으며, 이는 블록체인 기술의 선구적 사례로 볼 수 있다. 거래 기록은 소리(음)와 글자를 결합한 ‘유음장(流音長)’ 시스템으로 관리되었으며, 모든 거래는 실명으로 기록해 위변조가 불가능했다.

③ 화폐환산 회계와 환어음 거래: 개성상인의 장부에는 다양한 화폐 단위를 사용한 환산 거래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현대 외화 환산 회계의 원리를 반영한다. 상평통보, 당오전, 은전 등 여러 화폐의 가치 변동과 환산 방식은 매우 체계적으로 관리되었다.

### (5) 맷음말

개성상인의 복식부기 기록은 자본주의와 현대 회계 시스템의 기원을 재조명하며 서구 유럽의 회계 역사 를 뛰어넘는 한국의 자산 관리 및 회계 기록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다. 이는 세계 회계사학계의 주요 연구 주제로 발전할 가치가 있다.

## II\_현대 중국의 회계 역사 연구: 과거-현재-미래

발표자: 송샤오밍 중국 상하이 리신대학교 교수

### (1) 회계 역사 조사의 중요성

중국 회계 문명은 오랜 역사와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5,000년 중국 문명의 발전과 함께 수치적이고 합리적인 실천의 기초로서 많은 중요한 역사적 자료를 남겨 그 연구 가치가 매우 높다.

회계 역사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계라는 학문 자체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첫 번째, 모든 학문에서 학문의 역사 연구는 그 학문 발전의 토대이자 성숙의 징표다.

두 번째, 회계는 인류 문명의 디지털 합리성을 대표하며 수천 년의 중국 역사와 관행의 경험을 통해 회계는 국가, 기업 및 가족과 같은 다양한 수준의 사회 조직의 재무 관리와 관련이 있다. 회계의 역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재무 관리의 합리적 본질을 연구하는 것이며, 이는 인간이 자신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회계 역사 연구는 현재를 더 잘 파악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기반이 된다.

이처럼 중국 회계학계에서는 회계사(史) 연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많은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실제로 회계사 연구자는 역사의 신비를 탐구하고 인류 사회와 문명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 (2) 중국 회계사 연구의 과거와 현재

중국의 일부 초기 회계학자들은 1930년대부터 회계 역사를 연구하면서 서구 회계, 특히 복식부기의 진화사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국 회계의 역사적 발전을 탐구해 왔다. 1949년 이후 중국은 소련으로부터 사회주의 회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나 회계 역사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무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1978년 이후부터 중국에서 회계 역사 연구가 서서히 시작되어 회계 관련 학술회의를 개최되는 등 분산적이었던 연구가 조직·계획적이며 단계적인 중국 회계사 연구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다.

1978년부터 2024년까지 46년간 중국에서는 회계사 관련 연구 저서, 회계사 관련 교재, 번역서 등이 60여 편 출간되었으며, 회계사 관련 연구 논문도 다수 발표되었다. 또한, 학술 연구와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연례 컨퍼런스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회계 역사 연구에 대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등 회계에 관한 역사 및 문화 연구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 (3) 중국 회계사 연구의 미래

현재 중국이 문화 건설에 중점을 두고 중국 회계 역사에 대한 자율적인 지식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회계 역사 연구의 미래는 더욱 목표가 명확해지고 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조직적인 학술 연구를 수행하여 회계 역사 연구와 회계 문화 연구의 교차 발전과 회계 역사·문화의 대중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경제사·기업사·법률사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강화하여 다양한 유형의 역사 자료의 수집, 대조, 출판 및 연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중국 특성을 가진 자율적 회계 지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계 역사에 대한 글로벌 및 지역 협력과 연구 교류를 강화 할 계획이다.

### (4) 결론

40년 이상의 노력 끝에 중국은 사회 전체가 회계 역사 연구를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고 회계 역사 연구를 회계 문화 연구 및 홍보와 밀접하게 통합하였다. 특히, 2023년 10월에 귀다오양(郭道揚) 교수의 「중국 회계총사」가 출간되었고, 2024년 6월 우한에서 제16차 세계회계사가대회(WCAH 2024)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등 중국 회계사 연구는 많은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서로 가깝고 문화가 비슷한 중국, 일본, 한국 등 회계사 연구의 국제적 협력과 교류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모두의 공동 노력으로 회계사 연구는 점점 더 중요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III\_회계의 미래 -AI시대의 회계전문가

발표자: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1) 도입말

AI와 빅데이터 분석이 회계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WEFA(2023) 조사에 따르면 회계 기장, 급여처리 직종은 향후 5년 내 소멸 위험이 높은 직종으로 평가되었으며, 회계사와 감사인도 23위에 포함되었다. AI가 회계사 시험도 통과한 사례 (Eulerich et al., 2024)는 디지털 기술이 회계분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혁신의 회계 전문직에 대한 영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 혁신이 현재 회계 분야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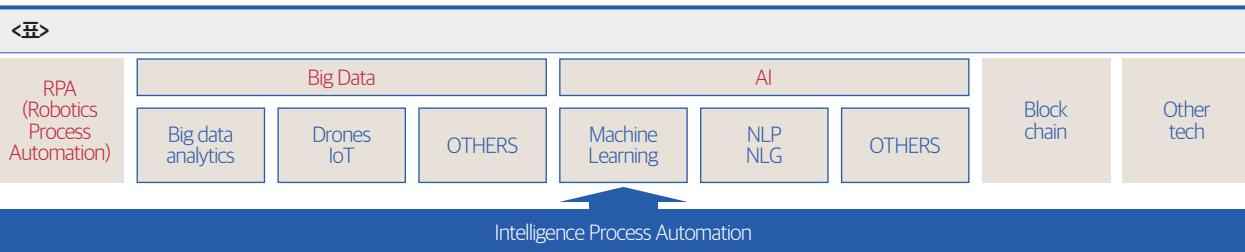
### (2) 디지털 기술혁신과 회계

Zhang(2019)에 따르면 회계산업에서의 디지털 기술의 생태계는 <표>와 같은 기술들이 이용된다.<sup>1)</sup>

이 중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는 구조화된 데이터와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로, 회계법인은 VAT 매출대사, 증명서 발급 등 세무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Big Data는 방대한 회계 데이터를 분석해 경영 정보와 결합하며, 실시간 재무 보고 및 비재무 정보 공시 등 새로운 회계 데이터 생태계를 형성한다(Vasarhelyi et al. 2015).<sup>2)</sup> 마지막으로 AI(Artificial Intelligence)는 대량의 데이터 분석, 비재무 정보 보고서 작성, 감사계약 의사결정 지원

**주1\_** Zhang, C. 2019. Intelligent process automation in audit. Journal of emerging technologies in accounting, 16(2), 69-88.

**주2\_** Vasarhelyi, M. A., Kogan, A., & Tuttle, B. M. (2015). Big Data in accounting: An overview. Accounting Horizons, 29(2), 381-396.



출처: Zhang(2019)의 figure1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되며, 향후 전문가적 판단까지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CPA Canada, 2024).<sup>3)</sup>

### (3) 디지털 기술혁신 상황에서 회계사의 대응 전략, 필수역량과 미래 역할

회계사는 사라질 위험에 대비해 AI 전문가, 데이터 분석가 등 새로운 직무 역량을 갖춰야 한다. CPA Canada(2021)는 회계사의 책임을 투명성, 설명 가능성, 책임성, 개인정보 보호 등 윤리적 문제 해결로 확장하며, IFAC(2021)도 회계사를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컨트롤러, 전략적 조언자로 정의했다.

Gould(2019)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 혁신 환경에서 공인회계사들이 통계 역량(데이터 패턴 인식 및 비즈니스 인사이트 도출), 데이터 역량(데이터 관리, 변환, 모델링, 머신러닝 기술 활용), 사업 역량(기업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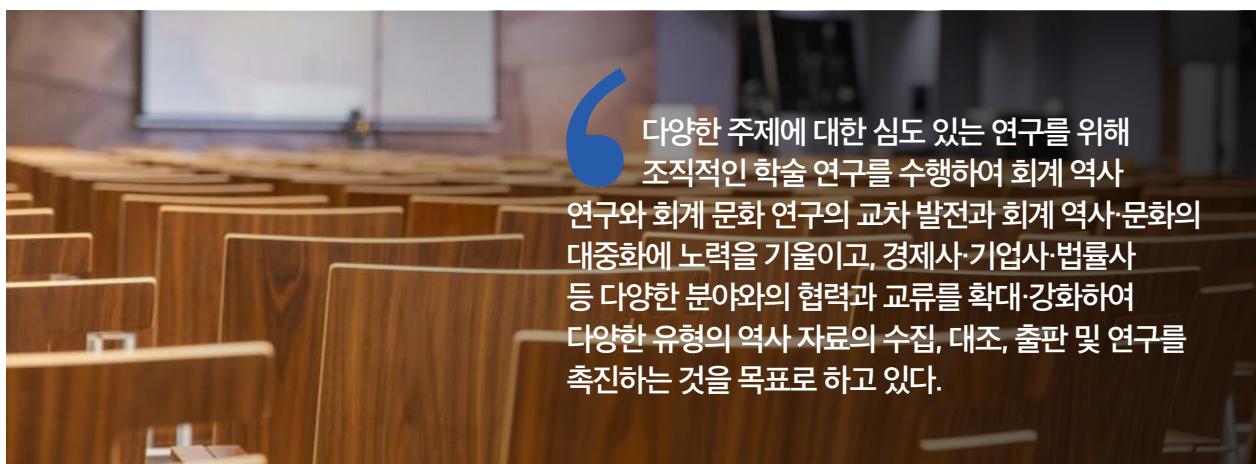
영 및 ESG 전략 수립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확보해야 한다.<sup>4)</sup>

### (4) 결론

Intelligence Process Automation은 회계 및 감사 분야에서 단순 기장 업무뿐 아니라 회계 전문직의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디지털 기술혁신이 새로운 과제를 초래하는 만큼, 회계전문가는 이를 해결하고 신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필요하다.

**주3\_** CPA Canada, 2024 Navigating the AI Revolution: Key Updates for Today's CPA

**주4\_** Gould.S., 2019. Building Data Science and Analytics Capabilities in Finance and Accounting. available at : <https://www.ifac.org/knowledge-gateway/preparing-future-ready-professionals/discussion/building-data-science-and-analytics-capabilities-finance-and-accounting>



## 3

## [심포지엄]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 회계기본법: 투명성과 신뢰를 위한 새로운 틀 (12.2 월)

박종성\_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I\_서론: 회계기본법의 필요성

회계는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회계제도는 조직 유형별로 다른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일부 비영리단체는 회계정보 제공 의무에서 제외되어 회계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키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조직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본 규범인 '회계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 법은 회계정보의 생산, 공시, 감사, 감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규제를 통해 조직 간 회계정보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정보이용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할 것이다.

### II\_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① 투명한 회계정보의 요구

회계정보는 조직의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주주와 채권자, 그 밖의 다양한 정보이용자 및 정책 당국 모두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일부 조직유형에서 회계정보의 생산과 공시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정보이용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 ② 사회적 신뢰와 경제 효율성 제고

투명한 회계정보는 조직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자금 흐름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회계정보가 정확하고 일관되게 제공되지 않을 경우, 조직과 경제 전체

<사진> 박종성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 회계기본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 ③ 현 회계제도의 문제점

현 회계제도는 조직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과 용어를 사용한다. 일부 규정은 상호 충돌하거나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보이용자와 정보제공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며, 회계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 III\_회계기본법의 주요 목적과 효과

#### ① 사각지대의 해소

회계기본법은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공통의 회계 규범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이게 된다. 종교법인, 노동 조합 등도 회계정보를 공시하고,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회계정보의 유용성 증대

회계정보의 유용성은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외부감사제도를 의무화하고,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포함한 표준화된 회계원칙을 도입하여 정보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 ③ 혼란과 비효율 감소

조직 유형별로 천차만별인 회계 용어와 규정을 통합함으로써 회계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정책결정자와 정보제공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④ 일관된 회계정책 수립

회계기본법은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회계정보의 생산, 공시, 감사, 감독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는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국가 차원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 IV\_회계기본법의 추진 방향

### ① 포괄적 적용

회계기본법은 영리, 비영리, 공공기관 등 모든 조직유형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조직 간 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보장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한다.

### ② 선택-면제(Opt-Out) 조항 도입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부 규정을 면제할 수 있는 유연성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이를 회계기본법 주무부서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 ③ 회계 용어와 규정의 통일

다양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회계 용어와 규정을 표준화하여 혼란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즉 회계정보 생산자와 이용자

‘회계기본법은 회계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회계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 ④ 회계기본법 주무 부서 지정

회계기본법의 운영을 책임질 전문성을 갖춘 주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이 부서는 각 조직 유형별 주무부서와 협력하여 규정을 보완하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회계정책의 체계적 관리

회계기본법은 회계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회계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 V\_결론: 회계기본법의 의의와 미래

회계기본법은 단순히 규정을 나열하는 법이 아니라, 회계제도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운영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조직에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생산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정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안은 우리 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회계제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회계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 초기 예상되는 문제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법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회적 신뢰와 경제적 투명성을 위한 첫걸음으로써 회계기본법 제정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 4

## [세미나] 지속가능성 관련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경쟁력 제고방안 (12.11. 수)

### I\_ 지속가능성 경영 및 공시의 발전과 최신 동향

발표자: 삼일회계법인 권미업 파트너

혼란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향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은 다소 둔화되었지만, 그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2015년 파리협정을 시작으로 꾸준히 발전해 온 지속가능성 경영과 공시의 발전 과정, 그리고 최신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1) 지속가능성의 이해

글로벌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전통적인 재무정보와 함께 비재무 정보인 환경과 사회, 그리고 기업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발표된 파리협정이 이듬해 2016년부터 국제법으로써 공식 발효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2019년 미국의 주요 대기업 CEO 협의체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usiness Round Table, 이하 'BRT')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발표된 후, 이어 2020년 다보스 포럼에서 ESG 공시 기준 통합을 지지하는 글로벌 선언이 있었다. 같은 해, 글로벌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CEO 래리 평크의 투자 기업들에게 기후 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연례 서한은 ESG 경영을 기업 운영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주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후 2023년부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확정해 나갔고, 정보 공시를 의무적으로 제도화하는 논의가 마무리됐다. 한국은 지난 4월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이번 달 안으로 KSSB가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공시 의무화 시점을 '2026년 이후'로 제시한 상태다.

#### (2) 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규제 동향

환경(Environment)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가 집중되었으나 최근 분야와 범위가 확장되어 ESG 관련 다양한 규제가 새롭게 생기거나 발전하고 있다. 다양한 규제 중 기업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탄소'와 '공급망'을 꼽을 수 있다.

먼저 국제사회가 약속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국제사회의 '탈탄소화' 요구가 확대 및 강화되면서 국내 목표량이 상향 조정되고, 산업 부문 감축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부문 배출 허용량이 축소됨에 따라 배출권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유상 할당 비율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경제권에서는 무역과 통상을 연계하여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이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sup>1</sup>)를 통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 품목에 세금을 부과하여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미국도 수출국의 탄소 가격이 미국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청정경쟁법(CCA<sup>2</sup>)이 통과된다면 2025년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석유화학, 정유, 철강 등 12개 품목에 대해

주1\_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주2\_ Clean Competition Act



온실가스 1톤당 55달러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EU는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 관련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CSDDD<sup>3)</sup>)를 마련했다. CSDDD는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 리스크를 식별 및 관리하고, 이를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실사 체계를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비유럽(Non-EU) 기업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EU 시장 접근을 위해 동등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규제 위반 시 벌금 부과, 손해배상 책임, 환경과 인권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협력업체와의 거래 중단 등의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

### (3)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글로벌 3대 공시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국제사회에는 400여 개의 공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있었다. 2021년 주요 20개국(G20)의 지지를 받아 지속가능성 위원회(ISSB<sup>4)</sup>)가 설립됐고, 이후 공시 기준을 만들던 여러 국제기관이 통합되면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IFRS S1·S2)<sup>5)</sup>의 첫 윤곽이 드러났다. 이후 EU가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SRD)<sup>6)</sup>과 기준(ESRS)<sup>7)</sup>을 마련했고, 미국도 기업의 기후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기후 공시 규칙’을 지난 3월 마련했다. 각 공시 기준별로 요구사항이 세부적으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종속기업까지 포함한 연결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거버넌스,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목표로 구성된 4가지 핵심 항목을 공시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은 다양한 지속가능성 주제 중에서 자사의 운영에 가장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주제를 결정해야 한다. 공시 기준별로 공시 목적과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에 따라 중요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며, 일부 기준은 특정 관점을 우선 반영하

**‘CSDDD는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 리스크를 식별 및 관리하고, 이를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실사 체계를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비유럽(Non-EU) 기업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EU 시장 접근을 위해 동등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규제 위반 시 벌금 부과, 손해배상 책임, 환경과 인권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협력업체와의 거래 중단 등의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

고 있다. ISSB의 IFRS S1·S2와 SEC의 기후 공시 규칙은 투자자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에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인 ‘재무적 중요성(Financial Materiality)’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반면, EU는 다른 공시 기준에서 요구하는 ‘재무적 중요성’ 뿐만 아니라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영향 중요성(Impact Materiality)’까지 모두 고려한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를 도입해 기업의 재무 성과와 사회적 책임을 모두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EU CSRD·ESRS이 가장 포괄적인 공시 기준이기 때문에 이중 중요성 접근법을 기반으로 준비하면 다른 공시 기준에서 요구하는 주요 사항들을 자연스럽게 커버할 수 있다.

### (4)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준비

글로벌 공시 규제가 도입되면서 기업은 새로운 정보

**주3\_**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주4\_**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 전 세계 146개국이 도입한 회계기준을 만든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산하 기관

**주5\_** IFRS S1 & S2: ISSB가 제정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S는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의 약자로 S1은 일반요구 사항, S2는 기후 관련 공시 내용으로 구성

**주6\_**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위한 지침으로 공시 대상기업과 시기 등으로 구성

**주7\_**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G 공시 기준으로 27개의 공통 기준과 10개의 ESG 주제별 기준으로 구성

공시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준비 단계는 점진적인 발전 경로(Maturity Curve)를 따른다. 초기에는 공시 기준과 데이터 관리 체계가 미흡하지만, 점차 공시 지표 수립, 데이터 자동화, 경영진 감독, 외부 인증 등 체계를 고도화해 통합 공시 체계 구축까지 마련해 완전한 공시 준비 상태로 발전해 나가는 방식이다.

EU 상장기업은 EU CSRD에 따라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가 2025년(2024년 회계연도 정보에 대해)부터 시작되어 공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PwC 조사 결과에 따르면, EU 기업의 임원진 10명 중 3명은 CSRD 도입을 통해 매출 증가와 비용 절감 혜택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또한, 일부 기업은 보고서 준비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보 인증 전문가가 참여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고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인증 전문가는 기존 재무제표 감사인이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품질 개선, 가치사슬 전반의 정보 수집 등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일부 기업은 CSRD 공시 준비에 있어 고도화 단계를 거치고 있다. 덴마크 해상풍력 회사인 오스테드(Ørsted)는 공시 준비 단계에서 EU CSRD·ESRS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참고해 자체 보고 체계를 설계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좋은 사례다.

앞서 설명한 다양한 규제는 기업에게 공시 규제 대응, 탄소세, 공급망 관리, 환경 및 인권 리스크 관리와 같은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친환경 생산, 공급망 투명성 강화, 규제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지속가능성 경영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기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다.

## II\_지속가능성 인증 및 윤리기준 제정 동향

**발표자:** 본회 감사인증기준본부 황근식 본부장

### (1) 글로벌 동향

EU와 미국 등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정보의 공시와 인증이 속속 의무화되고 있다. 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은 2024년부터 지속가능성정보의 공시와 인증을 의무화하고, 2028년까지 인증 수준을 제한적 확신에서 합리적 확신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미국 SEC도 기후 관련 공시 규정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높은 인증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인증 기준과 윤리기준의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 이에 발맞춰 국제회계감사기준위원회(IAASB)와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는 국제 지속가능성 인증기준과 윤리기준 개발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고 있다. IAASB는 지속가능성 보고에 적용할 포괄적 인증기준으로 ISSA 5000을 제정하고, 2024년 11월 최종 공표하였다. IESBA는 모든 지속가능성정보 인증인에게 적용되는 직종 불문 독립성 및 윤리기준(IESSA)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최종 공표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 (2) 지속가능성 인증기준 주요 특징

ISSA 5000은 지속가능성 인증업무의 글로벌 기준선(Global Baseline)으로서 향후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정될 일련의 지속가능성인증기준의 기반 역할을 한다. ISSA 5000은 모든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에 적합한 포괄적(overarching) 기준이다. ISSA 5000은 원칙중심으로 구성되어 주제, 보고 방법, 보고 기준, 정보이용자에 관계 없이 모든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ISSA 5000은 인



**ISSA 5000에 따라 인증인은 위험기반 접근법에 따라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며, 이를 위해 위험절차와 위험에 대응한 추가 절차를 수행한다. 인증인은 제한적 확신업무에서도 중요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시를 식별할 뿐만 아니라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제한적 확신업무에서도 통제환경을 포함한 내부통제의 구성요소를 이해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증인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지만,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와 품질관리를 인증 업무의 기본 전제로 요구한다. 각 국가의 규제 기관이나 기준 제정 기구는 ‘최소한 이에 준하는’ 기준을 특정하거나 ‘최소한 이에 준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 인증업무에는 전문가와 타 인증인이 참여할 수 있다. ISSA 5000에 따라 인증인 측 내부 전문가는 업무 팀원을 구성하며 인증인의 지시·감독·검토를 받는다. 반면 인증인 측 외부 전문가는 업무 팀원이 아니며 인증인은 외부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한다. 이를 위해 인증인은 전문가의 적격성·객관성, 전문가 업무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타 인증인은 인증인이 지시·감독·검토를 할 수 있다면 업무 팀원에 해당하나 지시·감독·검토를 할 수 없다면 외부 전문가와 유사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ISSA 5000에 따라 인증인은 위험기반 접근법에 따라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며, 이를 위해 위험절차와 위험에 대응한 추가 절차를 수행한다. 인증인은 제한적 확신업무에서도 중요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공시를 식별할 뿐만 아니라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제한적 확신업무에서도 통제환경을 포함한 내부통제의 구성요소를 이해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지속가능성 인증 기준(ISSA 5000)은 2026년 12월 15일 이후 시작되는 기간이나 특정 시점의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인증업무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되고 권장된다.

#### (3) 지속가능성 윤리기준 주요 특징

IESSA는 기존 국제윤리기준에 새로운 파트인 Part 5로 신설되었다. 공인회계사뿐만 아니라 비공인회계사도 적용할 수 있게 제정되었다. 이 중 지속가능성 인증 독립성 기준은 일반목적 보고체계 하에서 지속가능성 정보를 인증할 때 적용되며, 재무제표 감사에 적용되는 독립성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한다 (benchmarking and mirroring). 즉, 지속가능성 인증 독립성 기준은 재무제표 감사에 적용되는 독립성 요구사항과 그 요구수준이 동일하다. 독립성 외 지속가능성 인증에 적용되는 기타 윤리기준도 Part 5에 포함되었으며, 그 내용은 현 기준의 Part 1(윤리강령), Part 3(개업공인회계사)의 내용을 기초로 한다. 이 기준은 2025년 1월에 PIOB 승인을 통해 공표될 예정이며, 2026년 12월 15일부터 적용되고 조기 적용이 허용·권장된다.

#### (4) 시사점 - 공인회계사의 역할

공인회계사는 높은 윤리의식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다분야 팀의 협업을 이끄는 리더로서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공인회계사가 ‘인증전문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고품질의 인증으로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전한 지속가능성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III\_지속가능성 인증인 전문성 확보 방안

발표자: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

### (1) 지속가능성 인증의 필요성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일관되고 비교가능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기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일관되고 비교가능한(consistent and comparable)’ 지속가능성 정보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통일된 공시기준’이 필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reliable)’ 지속가능성 정보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인증(assurance)’이 필요하다.

우리는 과거 회계의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다. 일정한 회계기준이 없이 기업마다 다양한 회계처리를 하던 시대에서 일관되고 비교가능한 회계정보(재무제표)를 제공하기 위하여 회계기준이 제정되었고, 국가 간 비교가능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IFRS)’이 제정되었다. 또한, 영국 철도산업 재무제표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회계감사’가 출현하고, ‘공인회계사’라는 직업과 ‘회계법인’이 출현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일관되고 비교가능한 지속가능성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수백 개이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몇 개(국제지속가능성기준(ISSB 기준), 유럽 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미국 SEC 기후공시 규칙 등)로 수렴되어 가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인증’의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 회계정보와 관련된 ‘공시’와 ‘인증(회계감사)’의 역사에서 지속가능성 정보와 관련된 ‘공시’와 ‘인증’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2) 지속가능성 인증인 자격제도 도입 필요성

대부분 국가에서 지속가능성 인증인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회계법인과 ‘인가받은 독립된

제3자(회계법인 외의 자)’가 모두 지속가능성 인증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인가받은 독립된 제3자’에게도 회계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독립성과 전문성, 윤리, 품질관리 등을 요구하며, 미국에서도 인증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요구한다. 즉, 대부분 국가에서 인증인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아도, 모든 인증인에게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및 일정 수준의 윤리 준수, 품질관리 등을 요구함으로써 어떤 인증인이 인증을 제공하는가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인증품질’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만약 지속가능성 인증인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면, 일부 기업은 적정수준의 인증 품질을 제공하지 않는 인증인을 선호하게 되고, 이는 부실 인증으로 이어져서 결국 투자자와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회계정보의 경우에 분식회계와 부실 감사가 발생하면 결국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처럼 지속가능성 정보의 경우에도 잘못된 공시(ESG 위싱)와 부실 인증이 발생하면 투자자와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일정한 수준의 인증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인증인만 지속가능성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인증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3) 지속가능성 인증인 전문성 확보 방안

일정한 수준의 인증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인증인의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는 <그림>과 같은 지속가능성 인증인 자격제도 운영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험 응시 전에 일정한 교육(지속가능성 일반론,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기준, 인증기준, 윤리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지속가능성 인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일정 기간 실무 수습을 요구하고, 자격 취득 후에도 계속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ESG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며, 일정한 교육을 마치고 퀴즈를 통과하면 수료증을 발급해 준다.

중장기적으로는 회계정보(재무제표) 감사를 하는

<그림> 지속가능성 인증인 자격제도 운영 방안(안)

① 시험 응시 전  
자격요건:  
교육 이수,  
사전학점 이수,  
특정 학위 등  
요구

② 자격시험:  
재무회계와  
회계감사, 지속  
가능성 일반론  
과 공시, 인증,  
윤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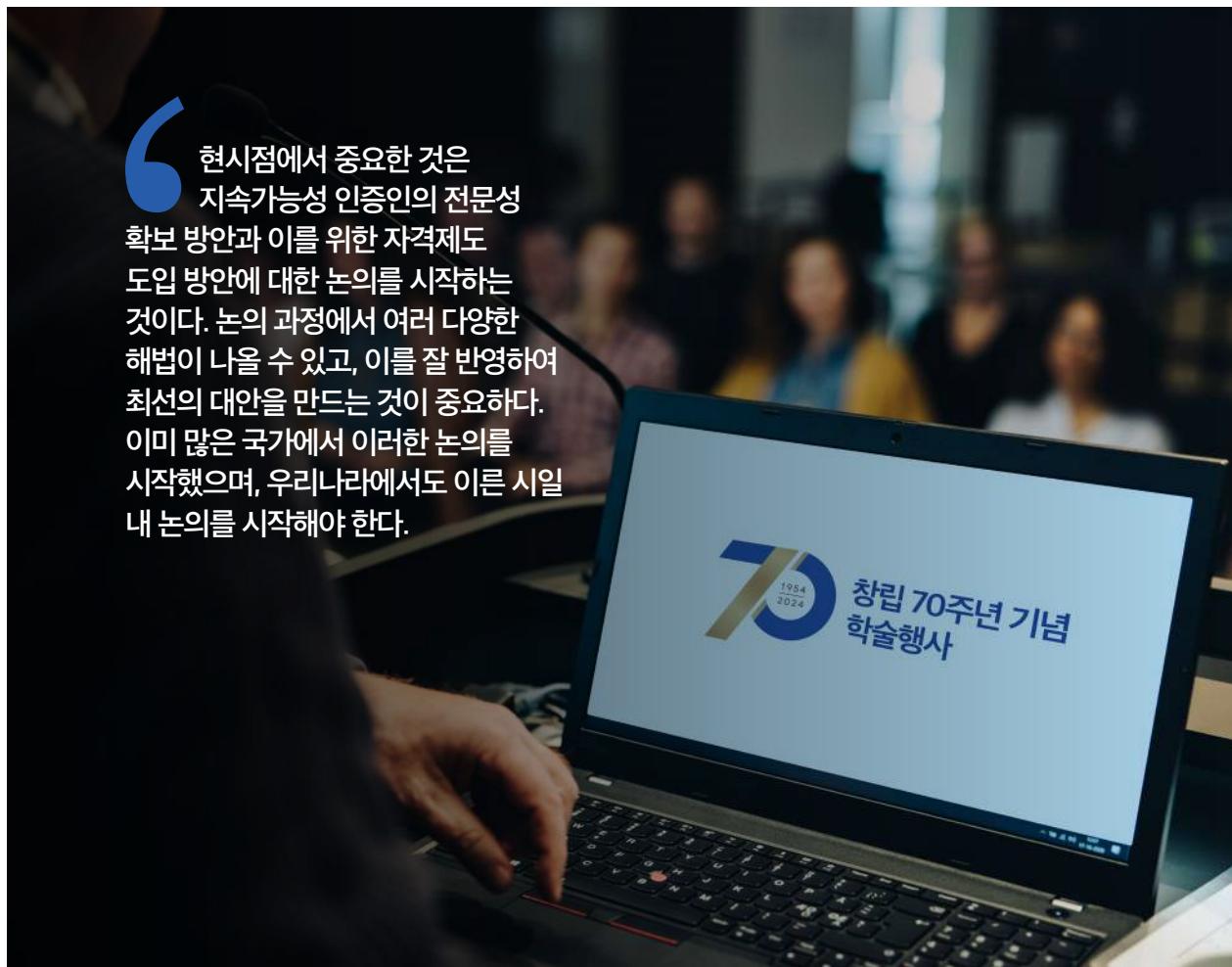
③ 실무수습:  
수습기간,  
횟수 등 요구

④ 계속교육:  
자격증 취득 후  
매년 일정기간  
의 계속교육 등  
요구

공인회계사와 유사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현행 '국가공인민간자격증'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여 지속가능성 인증인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 인증인의 전문성 확보 방안과 이를 위한 자격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해법이 나올 수 있고, 이를 잘 반영하여 최선의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른 시일 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❶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 인증인의 전문성  
확보 방안과 이를 위한 자격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해법이 나올 수 있고, 이를 잘 반영하여  
최선의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른 시일  
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5

## 디지털 혁신과 함께하는 회계·세무 IT 솔루션 쇼케이스 (12.11. 수)

창립 70주년 기념식 행사가 열리는 지난 1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의 메이플룸과 틀립룸에서 진행된 회계·세무 IT 솔루션 쇼케이스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전 등록한 참가신청자들은 관심 있는 세션에 자유롭게 참석했다.

<사진> 사람들이 행사장 입구에서 일정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참가신청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 경품 추첨 이벤트 당첨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K-회계가 밸류업에 기여하려면

백광업 한국경제 논설위원

국제회계기준(IFRS)이 국제무대에 등장한 지 20년이다. 2005년 유럽연합(EU) 상장사들이 처음 채택했다. 외환위기 이후 다수의 아시아 기업과 2000년 대 초 엔론 월드컴 등 초대형 미국회사들에서 부실 회계 문제가 불거지면서 탄력받았다.

한국에서 IFRS가 처음 선보인 건 15년 전이다. 2009년부터 원하는 기업에 조기 적용을 시작했다. 2년 뒤 2011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의무화했고, 2조원 이하 상장사에는 2013년부터 적용했다. 140여개국이 선택한 세계 최대 회계기준은 건강하고 신뢰받는 선진시스템으로 정착하고 있을까.

### 투명성 제고,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개발한 IFRS는 '원칙 중심'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보 왜곡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택한 발상의 전환이다. '원칙 중심'과 반대되는 '규정 중심' 회계기준은 명확한 경계선 제시가 특징이다. 세세한 회계처리 규정 제시로 논란의 소지가 적다.

하지만 바로 이 특징 탓에 기업의 실질 전달에 실패하는 정보 왜곡 문제가 야기된다. 명확한 경계선이 외려 거래설계의 유인을 제공해 회계 부정을 유발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국이 낯선 IFRS 도입을 전격 결



정한 것도 이 같은 고민의 결과다.

IASB로부터 '모범국' 평가도 받은 한국은 IFRS 도입으로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으로 회계투명성이 제고됐다. K-GAPP 시절보다 재무제표 형식이 단순화되고 자산과 부채 등의 시장가격 재평가도 시작됐다. 감독당국의 요구에 맞추는 기계적인 처리에서 기업 자율로 전환해 선진 회계의 기초를 다졌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회계기준 채택은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도 동일한 회계표준을 준수함으로써 해외 진출 투자유치 등이 한결 유리해졌다.

기업 입장에서는 재무제표 본문 외에 결론 도출 근거나 실무지침 등을 주석으로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본문이 단순화되면서 첨부되는 주석 정보가 복잡해져 투자자의 접근이 더 어려워졌다는 견해도 나온다. 하지만 공시 신뢰도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일 반적이다.

### 미완의 원칙중심 회계, 글로벌 각자도생

긍정적 변화만 있었던 건 아니다. 생소한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갈등이 뒤따른다. 기업의 실질을 드러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 됐느냐는 근본적 질문에 자신있게 답하기가 쉽지 않다. IFRS 가 유럽 중심으로 확산하고 미국·중국·일본 등은 도입하지 않은 이유다.

미국에선 많은 자율적 회계처리 허용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감점이라는 견해가 제기돼 도입이 무산됐다. 중국은 IASB와의 협의를 거쳐 자국 회계기준에 일부 IFRS 원칙을 가미한 독자기준을 사용 중이다. 일찍이 2015년부터 IFRS 적용 의무화 방침을 세웠던 일본도 자국 회계기준과 IFRS를 혼합한 수



회계 관련 세 주체는 정보제공자, 감사인, 정보이용자다. 원칙중심 회계기준은 정보제공자와 감사인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을 전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 공시되는 정보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할 것이라는 발상이다.

정국제기준(JMIS)으로 갔다.

회계 관련 세 주체는 정보제공자, 감사인, 정보이용자다. 원칙중심 회계기준은 정보제공자와 감사인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을 전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 공시되는 정보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할 것이라는 발상이다. 하지만 명확한 경계선이 없는 원칙중심회계는 발상의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완'으로 평가받는다.

IFRS는 아시아와 미국에서의 여러 회계사고를 목격한 뒤 유럽 내 16개 거래소의 상이한 회계기준을 통일해 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원칙만 천명하고 디테일한 회계처리방식을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위임한 것은 그만큼 통일하기 힘든 대목이 많아서이기도 하다.

통일시키지 못한 부분은 전문가의 판단에 맡기자는 취지는 나무랄 데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작동은 간단치 않다. 전문가마다 판단이 제각각이다. 이해당사자인 감독기관, 정보이용자, 기업, 감사인 등도 입장이 상이해 이해상충이 불가피하다.

### 등장 20년 만에 대변화 모색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IASB는 올해 4월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 관한 새로운 기준 'IFRS 18' 최종안을 발표했다. 손익계산서 표시와 주석공시기준 등을 대폭 손 봐 2027년부터 적용한다.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영업이익 표기'다. 지금까

지 영업이익을 다루는 IFRS의 방식은 그리 미덥지 못했다. 영업이익에 대한 관점부터 수긍이 쉽지 않다.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인데도 IFRS는 지금껏 영업이익을 정의조차 하지 않았다.

정의가 없으니 기재도 의무가 아니다. 각국은 영업이익 공시를 정보제공자의 자율판단에 일임한다. ‘기업이 하는 일은 전부 영업’이라며 영업이익을 따로 표기하지 않는 사례도 적잖다.

이런 상황에서 IFRS 18은 공백이던 ‘영업’의 개념을 새로 정의했다. 재무제표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IASB가 정의한 ‘영업’은 ‘투자’와 ‘재무’를 제외한 모든 범주다. 투자와 재무의 범주를 먼저 규정하고 여기에 미포함된 잔여손익을 전부 영업으로 보는 관점이다. 현행 현금흐름표 작성과 유사한 접근방식이다.

새 기준이 시행되도 영업이익과 영업외이익은 구분되지 않는다. 유무형자산처분손익, 각종 손상차손, 기부금, 외환손익 등 K-IFRS에서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해 온 여러 기타손익항목이 영업손익에 포함될 개연성이 높다.

## 재무정보 유용성 제고될까

IFRS 18에서 정의한 영업 개념은 우리로선 꽤나 낯설다. 현행 K-IFRS의 영업과 상당히 다르다. 한국은 IFRS 도입 초기부터 K-GAPP을 원용해 영업이익을 표기해 왔다. 수익에서 매출원가, 판매비과 관리비 등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한국에서는 ‘실적=영업이익’이라는 인식이 큰 점을 들어 IASB의 양해를 구해 예외를 허용받았다.

IFRS 18 도입 시 기존 영업이익에 적잖은 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지주회사들의 경우 영업이익 급감이 불가피하다. 회계기준원이 2022년 상장지주회사 62곳을 분석한 결과 7.1%인 영업이익률은 IFRS 18

적용시 4.1%로 반토막난다.

전문가들은 IFRS 18의 영업개념에 썩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 모습이다. 한 조사에서는 전문가 3명 중 2명(65.4%)이 K-IFRS 영업손익 표기가 IFRS 18의 그것보다 정보유용성 측면에서 양호하다 답했다. 현행 영업손익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는 답변도 85.1%로 압도적이다.

새 영업이익 정의가 불러올 혼란에 대비한 회계당국의 고민도 크다. 금융위원회는 IFRS 18에서 요구하는 영업손익 외에 한국식 영업손익을 별도로 표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하지만 병기 방식이 도입되더라도 회계장부의 국제 비교는 여전히 만만치 않다. 각국 기업의 영업이익 표기가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인지 따져보는 절차가 필요하다. 일반투자는 물론 전문적인 기관투자가들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다.

## 원칙 중심이 ‘이현령 비현령’으로

IFRS 회계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이외에도 적잖다. 특히 어디까지가 자율의 범위이고, 어디부터 분식인지에 대한 분쟁이 잦다. 당국과 기업이 이견을 좁힐지 못해 법정으로 달려가는 일도 다반사다. 최고의 전문가 집단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해 회계 비전문가인 판사에게 판정을 넘기는 꼴이다.

이런 분쟁은 기업 존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법정 공방이 한창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대표적이다. 아직 최종심 전이지만 하급심에서 회계 당국의 주장은 상당 부분 기각됐다. 최종적으로 당국의 견해가 인정되더라도 명예추락은 불가피하다. 판사마다 다른 결론을 낸다는 점은 정부 판단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다.

미완의 제도이다 보니 몇 년 단위로 새 기준이 제시되는 상황도 기업들에게 불편하다. 지난해 도입된



IFRS 17을 둘러싼 보험업계의 반발이 잘 보여준다. IFRS 17을 따르면 메리츠화재 순익이 업계 부동의 1위 삼성화재를 앞지를 수도 있다. 기업의 실질은 그대로인데 가치평가가 급변하는 상황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통제하기 힘든 변동성은 회계정보 작성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리스크다.

### K-회계 선진화 지혜 모을 때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갖은 점도 돌아볼 대목이다. 원칙중심 회계라는 본질과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가능하다.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마다 극심한 혼란을 겪다보니 ‘다음엔 뭘까 겁난다’는 경제계 반응이 나온다.

물론 IFRS가 ‘제 멋대로 회계’인 것은 전혀 아니다. ‘원칙 중심’ 아래 공정가치를 발견해 나간다. 합리

적인 원칙을 외부감사인과 투자자에게 제시하고 설득할 수 있다면 하나의 거래에 두 개의 상이한 회계 처리도 가능하다. 회사가 재량권을 발휘해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하면 된다.

이는 IFRS의 특장점임에도 현실에서는 리스크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기업의 자율적 회계처리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면 분식으로 몰리는 사례가 잦아서다. 미완의 영역을 회계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제도의 신뢰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 K-회계가 한국 경제의 리스크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지난 10여 년의 적용과정에 대한 냉정한 복기가 필요하다. 잘잘못을 가리고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새 기준이 수시로 나오는 미완의 시스템인 만큼 열린 자세가 절실하다. 문제를 외면하고 회피하는 태도로는 밸류업에 기여하는 선진 K-회계 구축이 요원하다. ◎



## 기자의 눈

※ 이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로 「공인회계사 저널」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회계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

박순업\_이데일리 기자

역사학자이자 회계학자인 제이컵 솔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 교수는 저서 ‘회계는 어떻게 역사를 지배해 왔는가’에서 회계 투명성이 기업, 나아가 국가의 흥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건전한 회계 관행은 안정적인 정부와 약동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꼭 필요한 수준의 신뢰를 낳지만, 부실한 회계와 그에 따른 책임성의 부재는 재정 혼란과 경제 범죄, 사회 불안,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즈니스의 언어이자 경제 투명성을 지탱하는 근간이라고 불리는 회계는 경제 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축해 왔다. 단순히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록하던 데서 이탈리아 피렌체의 상인들은 복식부기 (double-entry bookkeeping) 시스템을 도입했고, 산업혁명을 거치고 주식회사가 등장하면서 체계적인 회계제도가 마련됐다.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하면서 국제 회계 기준이 도입됐다.

2000년대로 들어서면 엔론(Enron)·월드컴 (WorldCom) 등 거대 기업들의 회계 스캔들이 발생하면서 회계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다시 한번 높아지자 미국은 2002년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을 제정해 기업의 재무 보고와 내부통제 수준을 높였다. 이는 투자자들이 기업 재무 정보를



신뢰할 수 있어야 자본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이처럼 회계제도의 변화는 기업과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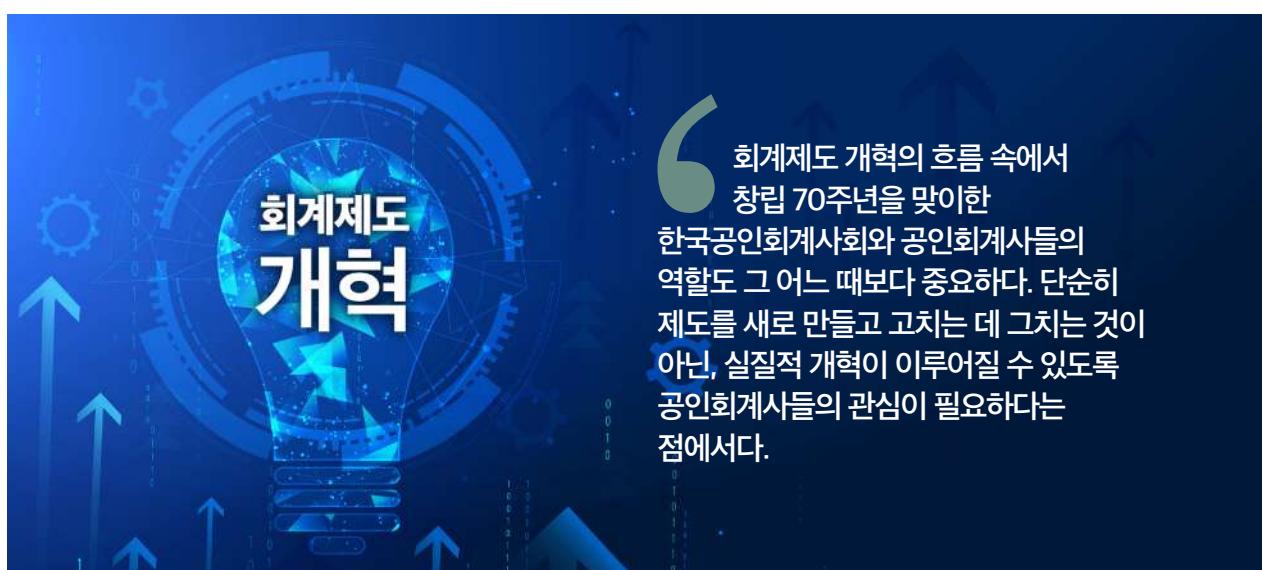
국내에선 2017년 국회를 통과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외감법)이 회계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를 6년 만에 1단계 높였고,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선 회계 투명성(회계·감사 활동) 부문이 60위권에서 40위권으로 상승했다. 2016년 회계 투명성 순위가 61개국 중 61위까지 추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른바 '회계제도 개혁'의 바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시절 지정 감사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신외감법 발의와 처리를 주도해 '신외감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지난 6월 취임 이후 임기 동안 회계제도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다. 그는 제도 개혁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높여 기업과 국가

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최 회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회계기본법 제정으로 회계제도 개혁을 완성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회계기본법은 회계 기준·절차를 체계화하고 회계 정보의 일관성·신뢰성을 높이는 법안이다. 현재 회계 관련 규정은 개별 법령으로 분산돼 있어 통일성이 떨어지고,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업계에선 회계기본법이 제정되면 우리 사회 전반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회계제도 개혁의 흐름 속에서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인회계사들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제도를 새로 만들고 고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기업과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회계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와 함께 70주년을 맞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한 사회적 위상도 한층 높아지길 기원한다. ◉





# 기업사냥꾼에게 감사인이 속지 않으려면

이주연 금융감독원 회계감리국 수석검사역

※ 사례 이용 시 유의사항 : 본 회계 심사·감리 등 지적 사례는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조치한 것으로 사례에 언급된 내용 중 일부는 이해 제고 등을 위해 각색하였으며,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례에 일반화하여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 소규모 상장사 대상 기업사냥 범행의 특성

금융·증권시장에서 소위 ‘기업사냥꾼’이라 함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기업 인수·경영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상장사를 대상으로 각종 불법 자본 수익, 자금 유출 등 범죄 이익을 취하고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게 하는 조직적·전문적인 기업 대상 범죄행위자’를 일컫는다.

기업사냥 범행의 전형적인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기업사냥꾼들은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사채업자나 친분이 있는 저축은행 등을 통해 자금을 대출하여 상장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고 경영권을 획득(무자본 M&A)한다. 이때 사채업자 등에게 자신이 인수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필연적으로 인위적인 주가조작이 뒤따른다. 상장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대출을 받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 주식의 반대매매를 당하게 되므로 어떻게든 주식 가격을 올려 반대매매를 막고, 이에 상응한 주가 차익 또는 일부 주식으로 대출금을 변제한다.

셋째, 기업사냥꾼들은 처음부터 상장회사의 영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인위적인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적 자본 수익 취득이나 자금 유출에만 관심이 있다. 이 때문에 인수한 상장회사의 업종과는 전혀 관련 없

는 다수의 업체에 투자·대여의 외관을 형성하면서 유상증자, 사채발행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자금을 유출하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영권 행사를 일삼는다. 이렇게 유출된 상장사 자금은 인수 시 빌려온 고리의 이자 및 원금 상환, 투자·대여의 외관을 형성하게 해준 투자·대여 상대 회사에 대한 수수료, 그들의 품위유지비 등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이들이 애초부터 투자 대상으로 삼을 업체(**펄**<sup>①</sup>)를 선정하는 기준은 기술력·사업성·영업능력이나 회사와의 시너지 효과와 같은 관점이 전혀 아니다. 주가를 부양하기에 좋은 소재인지, 투자를 가장한 자금 유출이 용이한지, 업체 관계자가 특수관계인이거나 이면 계약 등 내부적 이해관계에 대한 협력이 가능한지 등이다. 결과적으로 자신들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고점에서 불법 수익을 현실화(exit)하면서 각종 손상처리 등 회사의 기업가치 하락으로 왜곡된 주가가 조정되면 시장에 피해를 그대로 전가시키게 되는 구조다.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주가조작(허위공시,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 자금 유

**주1** 펄(pearl)은 주가 부양을 위한 호재성 공시나 뉴스와 관련된 수익성이 좋아 보이는 사업 내지 회사. 쉘(shell)은 주가조작 대상 상장회사를 의미(펄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을 희망고문 할 정도로 사업에 필요한 기간이 길고 성공 시 가치가 클수록 좋고 쉘은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이 낮고 대주주 주식 보유비중이 높은 종목이 선정됨



출(배임, 횡령 등)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기업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 결과 상장회사를 급격하게 부실화 시켜 상장폐지에 이르게 하여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자본시장을 사기도박판으로 만들어 건전성을 훼손한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언급한 전형적인 기업사냥 범죄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감사인이 어떠한 지점을 간과하여 감사 실패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A사에 대한 개관

甲은 무자본 M&A를 통해 A사(코스닥 상장기업)를 인수하고, 반대매매를 피하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신규 사업 진출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인위적 인 주가상승을 유도했다. 또 A사 업종과 전혀 관련 없는 다수의 비상장 업체를 인수한다며 잊은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가장납입 등으로 A사 자금을 외부로 유출하고 회계적으로는 손상으로 간단히 정리했다. 그 결과 A사의 영업실적과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甲이 A사를 인수한지 불과 1년 만에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었고 2년 후 최종 상장폐지 되었다. 물론 A사 감사인에 대한 감리지적은 A사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 전 감사보고서에 대한 것으로 외부감사 당시 감사인은 甲이 기업사냥꾼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A사에 대한 공시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았다면 A사가 기업사냥 범죄의 모든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니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甲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지 말고 철저히 확인했어야 한다.

### A사 감사인은 무엇을 놓쳤을까?

#### ① 공시사항 확인은 기본

감사인은 회사의 중요 공시 내용을 확인하여 주주

및 경영자의 특징과 회사의 중요 변동사항 등을 파악하고, 회사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감사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해연도 두 번의 최대 주주 변경 사실, 최대주주 인수자금이 차입금인 사실, 유상증자 관련 납입일 등이 수 차례 변경된 사실, 최대주주 변경 사유가 저축은행 주식담보대출로 인한 반대매매였던 사실, 최대주주 변경 후 잊은 전환사채 발행과 비상장주식의 인수 등 중요 공시사항을 파악하지 않았다. 그래서 A사가 기업사냥 범죄의 대상이 되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고, 재무제표 왜곡표시 및 부정위험 등을 식별하고 평가하지 않았다.

#### ② 실재성 미확인

甲은 저축은행 차입금으로 A사를 인수하였으나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로 최대주주 지위가 위태롭자 또다시 '20.9월 사채업자로부터 100억원을 빌려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고, 다음날 100억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하는 소위 '찍기 수법'으로 유상증자 가장납입을 하였다. '20.11월 이를 숨기기 위해 실제로는 60억원에 인수하는 B사(비상장) 주식을 160억원에 인수하였다. 그러나 사정이 있어 '20.12.31. B사 주식 인수계약은 취소되었고 상대방은 60억원을 반환하였다. 甲은 가장납입을 숨기기 위해 과대평가된 금액인 100억원에 대하여는 기밀 현재 미수금 100억원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1.2.1. 100억원이 회수되었으며, 같은 날 수표로 출금하여 신규 투자를 위한 에스크로<sup>2)</sup> 목적으로 법무법인 C에 100억원을 보관하였다며 이를 선금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주2\_** 에스크로(escrow)는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거래 시에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삼자가 중개하여 금전 또는 물품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말한다.

감사인은 '21.2.20.경 기말 감사를 하였는데, '20.12.31. 현재 미수금 100억원에 대해 주식인수계약 취소로 미수금 100억원이 발생하였고, '21.2.1. 회사 통장에 100억원이 입금되어 미수금이 회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날 회사 통장에서 다시 인출된 수표 100억원은 '21.2.1. 현재 법무법인과의 금전보관계약서 및 금전보관확인서 사본으로 그 실재성을 인정하였다.

미수금 100억원의 보유원천은 '20.9월 유상증자 금액으로 납입일 당일 전액 수표로 출금되었다가, '20.11월 B사 주식인수계약일에 회사 계좌에 입금되었고 다시 당일 B사 최대주주계좌로 이체되었다. B사 주식인수계약해제로 인한 미수금 반환명목으로 '21.2.1. 회사에 수표로 입금되었다가 당일 다시 수표로 출금되어 신규 투자 에스크로 목적으로 법무법인 C에 보관했다고 회사가 주장했지만 유상증자 이후 동 자금이 한 번도 회사 통장에 예치된 적이 없었다. 물론 회사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쓰인 적도 없어 가장납입이나 증자대금 유용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부정행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감사인은 미수금 100억원이 '21.2.1. 회사 통장에 입금되었고, 다시 수표로 출금하여 법무법인에 보관하고 있다는 회사가 제시한 금전보관계약서와 금전보관확인서만으로 감사증거 수집을 종료하였다.

이런 비경상적으로 보이는 유의적 거래의 경우, 감사인은 해당거래의 사업상 논리적 근거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거래가 부정한 재무보고를 수행하거나 자산횡령을 은폐하기 위하여 체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 감사증거 확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미수금 회수액 100억원은 '21.2.1. 입금된 당일 전액 수표로 출금하여 신규투자를 위한 에스크로 목적으로 법무법인 C와 금전보관계약서를 체결하여

동 법인에 보관하고 있다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 감사인은 100억이라는 거액을 에스크로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 아님에 따라 투자처, 투자내용, 투자규모, 투자진행상황 등이 적정한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리고 법무법인 C가 100억원을 보관하기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지, 무기명 유통이 용이한 수표의 특성상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절차를 마련하였는지를 검토했어야 한다. 또한, 동 금전보관계약서는 보관요청인인 회사의 요청만 있으면 즉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제3자와 거래에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에스크로 목적이 아닌 단순 보관계약에 해당하므로 감사일 현재 법무법인 C가 적정하게 실물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

####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15.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감사기준서 240 재무제표 감사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문단 13.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200에 따라, 기업의 경영진 및 지배기구의 정직성과 성실성에 대한 감사인의 과거 경험과 관계없이,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감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여야 한다.

문단 33.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감사인은 다음의 감사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c)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나는 거래, 또는 기업과 그 환경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와 감사 중에 입수한 정보에 근거했을 때 비경상적으로 보이는 유의적 거래의 경우, 감사인은 해당 거래의 사업상 논리적 근거(또는 그 결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거래가 부정한 재무보고를 수행하거나 자산횡령을 은폐하기 위하여 체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 [감사기준서 250 재무제표감사에서 법률과 규정의 고려]

A18. 다음 사항은 법규위반의 징후가 될 수 있다.

- 비경상적인 현금지급, 소지인에게 지급하는 자기앞수표 형태의 구매 또는 익명의 은행계좌로의 이체

#### ③ 부정이 의심되는 상황에서의 감사절차

회사가 미수금의 원천인 유상증자 대금 전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출하여 자기앞수표로 보유하였고,



## 외부감사 I

미수금 회수액을 다시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법무법인에 보관하는 등 보유과정에서 그 사유의 타당성이나 규모의 적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자금유용 등 부정행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자기앞수표의 실재성 등 확인을 위하여 그 실물을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한편 실물 확인만으로 감사절차를 종료한다면 회사가 실물 확인 시점에 타인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수표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회계부정을 은폐하더라도 이를 적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보유 사유의 타당성과 보유 규모의 적정성 등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외에는 회사가 해당 수표 등을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를 추가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1」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무기명으로 유통되는 금융자산의 실재성 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

## 【문제제기】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 등 무기명으로 유통되는 금융자산(이하 'CD 등'이라 한다)의 실재성 및 소유권 확인 등을 위하여 금융자산 실사과정에서 CD 등의 사본 또는 발행사실확인서를 확인하였다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회계감사기준 500 감사증거' 관련)

## 【의견요약】

CD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사본이나 발행사실확인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될 수 없음. CD 등의 실재성 및 소유권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D 등의 실물을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분석적절차를 통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보유사유의 타당성과 보유규모의 적정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회사가 해당 CD 등을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실무검토의견】

1. CD 등은 현금과 같이 언제든지 무기명으로 유통될 수 있어 감사위험이 특히 높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평가수준과 무관하게 일정수준 이상의 입증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2.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CD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분석적절차를 통하여 회사의 영업현황, 재무구조 또는 자금능력 등에 비추어 그 보유사유의 타당성과 보유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함. 특히 거액의 CD 등을 결산일이 임박하여 취득하거나 유상증자 대금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출하여 CD 등으로 보유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보유과정에서 그 사유의 타당성이나 규모의 적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자산부족의 은폐 또는 자금유용 등 부정행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함.

3. CD 등의 실재성 등 확인을 위하여 그 실물을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함. 실물확인은 회사가 보관하는 CD 등의 원본을 직접 검사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증권예탁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직접 발행한 잔고확인서 또는 보호예수증명 등을 검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CD 등의 사본이나 발행사실확인서만을 확인하는 것은 적절한 실물확인 방법으로 볼 수 없음.

4. 한편 실물확인만으로 감사절차를 종료한다면, 회사가 실물확인 시점에 타인소유 CD 등을 일시적으로 차용하거나 타인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부외부채)하여 CD 등을 취득·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부정을 은폐하더라도 이를 적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중요성의 관점에서 보유사유의 타당성과 보유규모의 적정성 등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외에는 추가적으로 회사가 해당 CD 등을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5. 회사가 CD 등을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에게 취득자금의 원천 및 입·출금 관련 증빙자료(통장 기록 등)를 요구하여 정상적인 회사의 자금능력으로 해당 CD 등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양도하였다면 양도대금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유입되어 보유 또는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시사점

기업사냥꾼들은 계속 존재한다. 이들은 2000년대 초 가장납입 후 이를 숨기는 방법으로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을 외부감사인에게 제시하는 게 한때 유행이었다. 그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당시 금융감독원 회계감리국에서 감사인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앞서 소개한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1」이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더 이상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을 인정해 주지 않자 이들은 비상장주식 고가 매수, 대여금, 선급금 등 지급으로 외관을 갖춘 후 이후 조금씩 손상처리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었다. A사도 마찬가지로 가장납입된 금액이 B사 주식 고가매수였다가 기말 미수금이 되었고, 이후 선급금이 되었다가 최종 손상으로 회계처리 되었다.

감사인이 기업사냥꾼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이런 기업사냥 범죄의 특성을 인지하고 감사대상 회사의 공시사항을 확인하여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질 사주와 경영진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①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2024.10.)

## 주요 내용

강수경 본회 감사인증기준본부 조사역



### I\_ 배경

지난 10월 21일 우리 회 감사인증기준본부는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를 추가·보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2024.10.)'을 발표하였다.

우리 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Working Group<sup>①</sup>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2019년 11월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를 최초 발표하였고, 2021년 1월에 이를 한 차례 보완한 바 있다.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2023년도에 자산총액 2조 원<sup>②</sup>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을 시작으로 현재 시행 중이다. 이번에 발표한 FAQ에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주요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감사 품질 제고를 위하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부문 범위 결정 및 그룹·부

문 감사 절차 등의 이슈를 추가하였다. 또한, 후속연도 통제 테스트와 관련한 FAQ도 추가하였다.

### II\_ FAQ 개정 주요 내용

#### (1)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 부문 범위 결정(이하 'Scoping') 시 고려사항

이번 FAQ에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목적으로 Scoping을 할 때 고려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각 부문별로 수행하여야 할 절차를 다루었다.

먼저, FAQ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목적으로 각 부문을 구분할 때 재무제표 감사와 동일하게

**주1\_**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 4개 대형 회계법인 포함 9개 감사인으로 구성

**주2\_**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기준



## 외부감사 II

부문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는 위험기반 접근 방법을 적용하여야 함<sup>3)</sup>을 명시했다. 또한,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 중 추가 고려로 인하여 테스트에 포함할 부문을 결정할 때 유의해야 할 양적·질적 위험 요소를 제시하였다<표 1>

&lt;표 1&gt;

부문 구분	부문 결정 시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
유의적인 부문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 부문의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의 절대적인 규모 또는 개별 부문의 특정 계정 등이 그룹재무제표의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중요도</li> <li>부문에서 유의적 변화가 발생함</li> <li>부문에서 그룹 공통의 시스템과 절차를 적용하지 않음</li> <li>부문과 관련된 특정 위험 등</li> </ul>
유의적인 부문은 아니지만 합쳤을 때 중요한 왜곡표시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 계정 등의 수준에서, 잔여 부문의 특정 계정 등의 합계금액(이하 '잔여 금액')이 그룹 중요성 또는 그룹수행 중요성 금액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지 여부, 또는 그룹재무제표 특정 계정 등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지 여부</li> <li>잔여 금액을 구성하는 부문의 수, 잔여 금액이 존재하는 부문의 유의적 계정의 평균 금액 등 잔여 금액의 분산도</li> <li>부문으로의 권한 이양과 부문의 활동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 통제환경의 효과성</li> <li>부문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등 그룹차원 통제의 주기·시기·범위 등</li> </ul>

또한, 이번 FAQ는 각 부문에서 수행하여야 할 절차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lt;표 2&gt;

부문 구분	부문 감사인 등이 수행하는 감사절차
유의적 부문	재무적으로 유의적인 부문 부문 재무제표의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와 식별된 모든 관련 경영진 주장에 대하여 평가된 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는 통제를 테스트
	특정 위험으로 유의적인 부문 특정 위험을 포함하여 그룹재무제표의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특정 위험에 대처하는 통제를 테스트 <sup>4)</sup>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	개별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 특정 위험에 대응하는 거래수준 통제의 운영효과성 테스트 등 '특정 위험으로 인하여 유의적인 부문'과 유사한 절차를 수행
	합쳤을 때 중요한 왜곡표시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 전사적 수준 통제를 테스트하는 것이 감사인에게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먼저 평가
기타 부문	추가 고려에서 제외할 수 있음

한편, FAQ는 중요왜곡표시위험이 감사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으므로 재무제표 감사 목적으로 실증절차를 수행하는 부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목적으로 통제 운영 효과성 테스트를 수행하는 부문은 일치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다만, 위험평가 결과에 대응하여 회사가 갖추고 있는 통제의 수준과 감사인이 수행하는 실증절차의 수행 단위가 달라서 실증절차와 통제 테스트를 수행하는 각 부문이 최종적으로 불일치할 수 있다.

## (2)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 그룹 및 부문 감사 절차

이번 FAQ에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그룹 및 부문 감사 절차에 대한 안내를 추가하였다.

먼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부문 감사인을 활용하기로 계획한 경우, 재무제표 부문 감사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부문 감사인이 동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FAQ는 두 업무가 통합되어 수행되므로 두 부문 감사인이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감사 목적에 따라 절차를 수행하는 주체나 그룹업무팀이 부문의 업무에 관여하는 정도는 다를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FAQ는 그룹업무팀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결론에 중요한 그룹차원 통제를 식별하고 테스트하여야 함을 언급하면서 그룹차원

**주3\_** 위험기반 접근법에 따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목적의 부문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유의적 부문(재무적으로 유의적인 부문, 특정 위험으로 인하여 유의적인 부문),

②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개별적으로 그룹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특정 위험을 포함하는 부문, 개별적으로는 그룹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만, 다른 부문과 합쳤을 때 그룹재무제표의 특정 거래유형, 계정잔액, 또는 공시에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지 않은 부문, 기타)

**주4\_** 식별된 특정 위험이 전반적인지 여부 등에 따라 모든 관련 경영진 주장에 대한 통제 테스트도 가능

통제의 운영 효과성을 테스트하여야 하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해당 테스트는 그룹업무팀이 직접 수행하거나, 경우에 따라 부문 감사인이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추가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종결 단계 시 고려사항도 다루었다. 그룹업무팀은 부문 감사인에게 부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 대신 관련 테스트의 '결과물'을 제공받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그룹업무팀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형성하기 위하여 부문에서 식별된 모든 미비점을 집계하고, 그 미비점이 개별적으로 또는 결합하여 그룹 재무제표 수준에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미비점 평가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추가 고려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 부문에서 실증절차에 의해 발견된 왜곡표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3)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 회사의 Scoping에 대한 감사인 고려사항

회사의 Scoping에 대해 감사인이 고려할 사항과 회사의 Scoping 결과가 감사인과 다른 경우에 감사인이 취해야 할 절차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후 빈번한 질의 사항이다. 따라서 이번 FAQ에 별도 섹션에 추가하였다.

FAQ에 따르면 감사인의 설계·운영 효과성 테스트는 회사의 Scoping 절차를 이해하고, 회사의 Scoping 절차가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에 따라 대상 범위를 선정하는 통제로써 효과적인지 평가하는 것이다. 감사인은 ①회사의 Scoping 방법이 평가 및 보고기준에 부합하는지, ②양적 및 질적 판단기준이 적절한 근거와 함께 문서화되었는지, ③적절한 경영진이 Scoping 결

과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가 존재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FAQ는 회사의 Scoping 결과가 감사인과 다른 경우, 감사인이 취하여야 할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회사의 Scoping 결과가 감사인과 다른 경우, 이는 감사인이 이전에 식별하지 못한 내부통제 미비점을 시사할 수 있다. 감사인은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고 회사의 Scoping 절차에 미비점이 존재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이 테스트 대상으로 선정한 부문을 회사는 평가 대상 부문으로 선정하지 않았더라도 감사인은 해당 부문에서 통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지 않아 통제 미비점이 식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설계·운영 효과성 테스트의 성격·시기·범위를 결정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추가로 FAQ는 회사의 Scoping 결과가 감사인과 다른 원인과 그 대응 방안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FAQ에서 언급된 예시 중 일부를 소개한다.

첫 번째, 회사와 감사인이 적용한 양적 기준에 차이가 존재하여 회사의 Scoping 결과가 감사인과 다를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은 Scoping에 차이가 있는 부문에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낮지 않은지 여부를 재검토한다. 만약 재검토 후에도 여전히 중요왜곡 표시위험이 낮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감사인은 회사가 Scoping 가이드 라인의 질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평가한다. 반대로 중요왜곡표시위험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 감사인은 해당 부문을 테스트 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사인의 양적 기준 자체를 올릴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

두 번째, 잔여 부문의 위험에 대응하는 통제에 대한 견해가 상이하여 Scoping 결과에 차이가 날 수 있



다. 예를 들어 회사는 잔여금액에 그룹 수준에서 운영되는 통제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감사인은 그러한 통제가 충분히 정밀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사가 그룹 수준 통제를 개선한 후에 해당 통제를 테스트할 수 있다. 그룹 수준 통제가 충분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잔여금액을 구성하는 부문 중 일부를 선정하여 해당 부문에서 통제를 테스트할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상기를 포함하여 FAQ에서 언급된 Scoping 차이의 원인과 그에 따른 감사인의 대응 방안은 참 고목적의 예시일 뿐이다. 감사인은 Scoping 차이의 원인을 충분히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실행하여야 한다.

#### (4) 후속연도 통제 테스트 관련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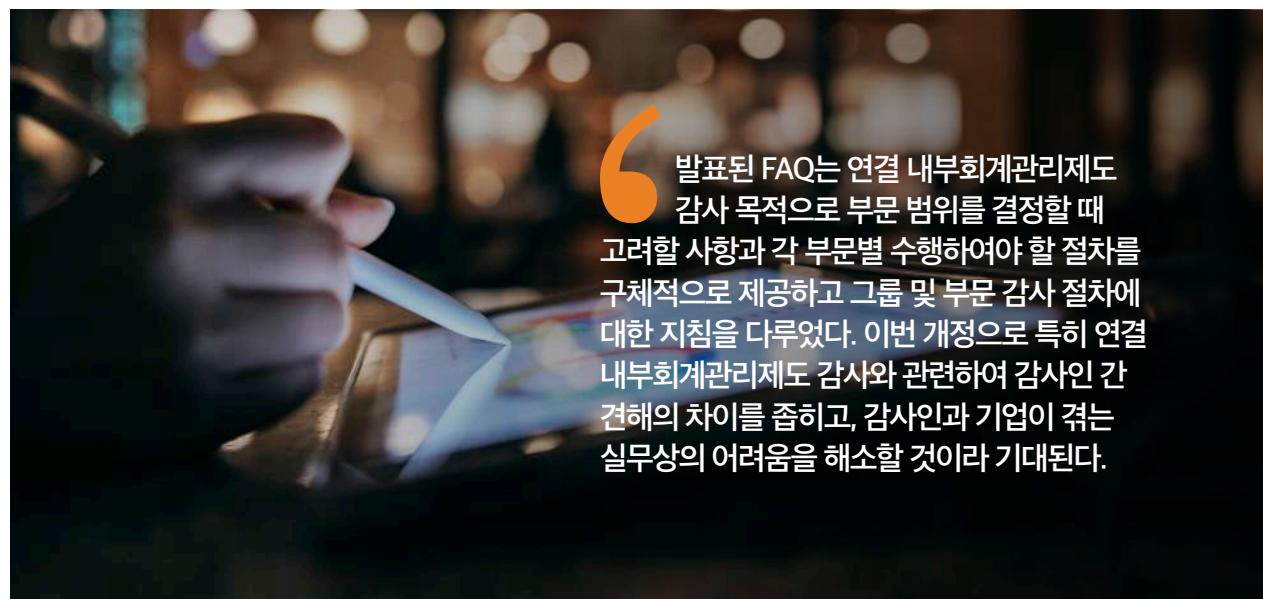
이번 FAQ는 후속연도 통제 테스트와 관련한 지침을 반영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시행된 지 여러 해가 지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당기에 통제의 설계 및 운영 효과성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

고 전기 테스트 결과에 의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빈번하였다.

이에 대하여 FAQ는 이전의 감사에서 입수된 감사증거나 회사의 변화관리체계의 효과성을 근거로 당기에도 통제의 설계·운영이 효과적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전 연도의 통제 테스트 결과 또는 회사의 변화관리체계는 필요한 테스트의 성격·시기·범위를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설계 및 운영 효과성에 대한 직접 증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 III\_ 기대효과

이번 FAQ는 특히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인 간 견해의 차이를 좁히고, 감사인과 기업이 겪는 실무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라 기대된다. 우리 회는 앞으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Working Group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FAQ도 계속 추가·보완할 계획이다. ①





# (IASB 공개 초안) 재무제표에서의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_사례 제시 주요 내용 소개

김태윤\_한국회계기준원 선임연구원



## I\_ 배경

작년 2023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이하 ‘IASB’)의 안건 협의에서 재무제표에 반영된 기후 관련 위험 정보가 불충분하고, 재무제표와 그 밖의 재무보고에서 보고된 정보 간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IASB는 기후 관련 사항들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교육자료<sup>1)</sup>를 제공하였다. 또한, 기업이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의 영향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기 위해 IFRS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을 다른 사례를 개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024년 7월, IASB는 ‘재무제표에서의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_사례 제시( Climate-related and Other Uncertainti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_proposed illustrative examples)’ 프로젝트의 공개 초안을 발표하였다. IASB는 동 공개 초안에 대한 세계 각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11월 말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회계기준원은 올해 9월부터 약 4주간 국내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하였다. 회계기준원은 10월 8일 새로운 공개 초안을 국내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 국내 실무에 미치게 될 영향을 미리 점검하-

는 장을 마련하고자, IASB가 제시한 사례별로 영향을 받는 기업들·투자자·회계법인·학계 등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0월 24일에는 ‘2024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Workshop’에 참석하여 기업들에게 공개 초안의 내용과 국내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였다. 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 고려하여, 11월 말 IASB에 국내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이번 IASB의 공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당 개정이 적용될 때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한 회계기준원 회계기준실의 예비적 검토 의견을 설명한다.

## II\_IASB 공개 초안 주요 내용

이번 공개 초안은 기업이 기후 관련 불확실성과 기타 불확실성의 영향을 재무제표에 효과적으로 보고하기 위한 IFRS 회계기준의 요구사항 적용 방법으로

**주1\_** IASB가 발표한 교육자료의 국문 번역본은 IFRS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s://www.ifrs.org/content/dam/ifrs/supporting-implementation/documents/translated/effects-of-climate-related-matters-on-financialstatements-korean-translation-final.pdf>



총 8가지 사례를 제공한다. 이 사례들은 크게 ‘중요성 판단’, ‘가정 및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공시’, ‘정보의 세분화’로 나눌 수 있다. 8가지 사례 중 사례.5를 제외한 나머지 사례들이 모두 기후 관련 불확실성에 관한 공시 사례를 다룬다, 예시 사례에서 설명하는 원칙과 요구사항은 다른 유형의 불확실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각 구분이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리고 관련된 사례들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lt;표 1&gt;

구분	내용	사례
중요성 판단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이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 판단	사례.1
		사례.2
가정, 추정 불확실성 원천에 대한 공시	기후 관련 가정과 기타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이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미친 영향에 대한 정보 공시	사례.3
		사례.4
		사례.5
		사례.6
		사례.7
통합과 세분화 공시	서로 다른 기후 관련 위험 특성에 따라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를 세분화하여 공시	사례.8

각 사례별 관련 기준서 및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이번 호에서는 각 사례별로 IFRS 회계기준의 공시 요건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다루고자 한다. 다만, 모든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의 게시 자료<sup>2)</sup>를 참고 바란다.

## ① 사례.1과 2

사례.1과 2는 각각 재무제표에서 IAS 1 ‘재무제표 표시’의 문단 31의 요구사항에 따라 IFRS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 이외의 추가 공시가 필요한지에 대해 중요성 판단을 내리는 방법을 다룬다. 두 사례 모두 기후 관련 사항이 재무제표에 정량적으로 중요

&lt;표 2&gt;

구분	사례	기준서	내용
중요성 판단	사례.1	IAS 1.31	자본집약산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체의 전환계획이 추가 공시로 이어지는 중요성 판단
	사례.2	IAS 1.31	기후 관련 전환위험에 대한 노출이 제한적인 산업을 영위하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전환계획이 추가 공시로 이어지지 않는 중요성 판단
가정, 추정 불확실성 원천에 대한 공시	사례.3	IAS 36.134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영향으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기능액 산정 시 배출권 원자가 주요 가능성으로 포함되는 경우의 공시
	사례.4	IAS 1.125, 129	자본집약산업에서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노출된 기업의 비유동자산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기능액 계산에 사용된 가정 및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 공시
정보의 통합과 세분화 공시	사례.5	IAS 1.31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이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자산성 관련 불확실성의 추가 공시
	사례.6	IFRS 7, 35A~38	기후 관련 위험으로 인한 신용위험 노출, 신용 위험 관리실무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위험 이 기대신용손실의 인식과 측정에 어떻게 고려되는지 보여주는 금융기관의 공시
정보의 통합과 세분화 공시	사례.7	IAS 37.85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관련 비용발생 시점의 불확실성이 높은 석유화학 제조업체의 해체 및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공시
	사례.8	IFRS 18, 4142, B110	온실가스 배출량 정도(기후 위험 노출정도)에 따라 자산의 세분화된 공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 두 사례 모두 기업이 기후 관련 사항이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의 인식과 측정에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제한다. 대신 두 사례 모두 IAS 1의 문단 31<sup>3)</sup>을 적용하여 각각 기후 관련 사항이 재무제표에

**주2\_** IASB 공개 초안: 재무제표에서의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 사례 제시와 관련한 회계기준원의 검토보고서는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https://www.kasb.or.kr/front/board/View2002.do?seq=2244&step\\_code=3003006000](https://www.kasb.or.kr/front/board/View2002.do?seq=2244&step_code=3003006000)

**주3\_** IAS 1 문단 31 : 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주석 포함)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특정 요구사항이 열거되어 있거나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기술되어 있더라도 그라하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특정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추가적인 공시를 제공할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정성적으로 중요한지 평가하고, 이에 따라 추가 공시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다룬다.

사례.1의 경우, 기업은 기업의 전환계획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기업이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노출된 산업에 속하므로(외부 정성적 요인), 해당 전환계획이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공시한다.

반면, 사례.2의 경우, 기업은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노출이 제한적인 산업에 속하므로(외부 정성적 요인)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정책이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추가 공시하지 않는다.

## ② 사례.3

사례.3은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영향을 받는 기업이 관련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산정 시 IAS 36 '자산손상'에 따라 주요 가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방법을 다룬다. 경영진은 손상검사를 위해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 측정 시, IAS 36을 적용하여 미래에 존재할 다양한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가정에 기초하여 현금흐름을 예측해야 한다. 기업은 IAS 36의 문단 134(4)(가)-(나)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의 미래 가격 또는 향후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범위와 같은 경영진이 사용하는 주요 가정 및 경영진이 주요 가정치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하여 공시한다. 또한, 동 기준서 문단 134(6)에 따라 주요 가정(온실가스 배출권의 미래 가격)이 변동될 때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면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 관련 주요 가정치 그리고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일치시키는

주요 가정치의 변동 폭을 공시한다.

## ③ 사례.4와 사례.5

사례.4와 5는 사례.3과 달리 IFRS 회계기준의 특정 요구사항에 따른 공시 요구사항이 없을 때, IAS 1에 따른 가정에 대한 일반적인 공시 요구사항에 따라 공시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상황을 다룬다. 사례.4와 사례.5는 각각 기후 관련 전환위험으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토가 필요한 경우와, 정부 규제로 인해 법인세자산의 자산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다룬다. 두 사례 모두 관련 세부 기준서(IAS 36 및 IAS 12)에서 구체적인 공시 요구사항이 없다. 그러므로 IAS 1의 문단 125<sup>4)</sup>와 129<sup>5)</sup>에 따라 각 사례에서 경영진의 가정이 다음 회계연도 내에 관련 자산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 보유여부를 검토한다.

사례.4의 경우, 경영진은 기후 관련 전환위험과 관련하여 법률 및 규제, 소비자 수요, 상품가격 및 온실가스 배출권 원가(배출권을 미래에 취득하는데 드

**주4\_** IAS 1문단 125 :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이러한 가정과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다음 사항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1) 자산과 부채의 성격
- (2) 보고기간말의 장부금액

**주5\_** IAS 1문단 129 : 문단 125의 공시사항은 미래와 추정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판斷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표시한다. 제공하는 정보의 성격과 범위는 가정 및 그 밖의 상황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그러한 공시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가정 또는 기타 추정 불확실성의 성격
- (2) 계산에 사용된 방법, 가정 및 추정치에 따른 장부금액의 민감도와 그 이유
- (3)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 내에 예상되는 불확실성의 해소방안과 가능성 이 어느 정도 있는(reasonably possible) 결과의 범위
- (4) 불확실성이 계속 미해소 상태인 경우, 해당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과거에 사용한 가정과의 차이에 대한 설명



는 비용)와 같은 미래에 대한 가정을 사용하여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계산한다. 기업은 이러한 경영진의 가정이 다양한 요소(관련 자산의 장부금액 규모, 경영진이 가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린 판단의 주관성 및 복잡성, 다음 회계연도에 새로운 정보 또는 상황으로 가정이 변경될 위험 및 가정의 변경에 대한 민감도)를 고려할 때, 다음 회계연도 현금창출 단위의 비유동자산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IAS 1의 문단 125 및 129에 따라 현금창출 단위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가정에 대한 정보와 영향을 받는 비유동자산의 성격 및 보고기간 말의 장부금액을 공시한다.

그러나 사례.5의 경우, 경영진은 정부발표 규제와 관련하여 기업의 운영 및 수익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의 자산성을 검토한다. 기업은 정부가 해당 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변경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으므로, 해당 경영진 가정이 다음 회계연도 내에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유의적 위험이 없다고 보아 IAS 1의 문단 125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는다. 이때, 경영진은 IAS 1의 문단 31에 따라 해당 규제가 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추가 검토해야 한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 공시한다.

#### ④ 사례.6

사례.6은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기후 관련 위험이 신용위험 익스포저 및 신용위험 관리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러한 위험이 기대신용손실의 인식과 측정에 어떻게 고려되

는지를 다룬다. 기업은 보유한 전체 대출 포트폴리오 가운데 기후 관련 위험의 영향을 받는 포트폴리오의 규모 및 기후 관련 경제·법률적 규제 등을 고려할 때 기후 관련 위험이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지를 검토한다. 그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IFRS 7의 문단 35A~38의 요구사항에 따라 기후 관련 위험과 관련된 기업의 신용위험 관리실무, 그러한 실무가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및 측정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그리고 금융상품의 손상 여부 검토 시 기후 관련 위험을 어떻게 고려하였는지 등을 공시한다.

#### ⑤ 사례.7

사례.7은 석유화학 제조업체가 석유화학설비에 대한 공장 해체 및 부지 복구 의무를 보유하는 경우를 다룬다. 기업은 해당 설비를 장기간 유지하고 운영할 것을 가정하므로 해체 및 복구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면 충당부채의 장부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기업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으로 의무를 예상보다 일찍 이행할 위험 또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유출 금액의 규모를 고려할 때 해당 의무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정보(관련 의무의 성격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예상되는 시기, 경제적 효익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의 불확실성 정도 등)를 IAS 37의 문단 85를 적용하여 공시한다.

#### ⑥ 사례.8

사례.8은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대한 노출이 높은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두 가지 유형의 유형자산(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유형자산 및 배출량이 적은 유형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를 다룬다. 두 가지 유형

**재무제표 이용자는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의 유형자산이 총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두 가지 유형의 유형자산이 기후 관련 전환 위험에 대해 유의적으로 다른 취약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이 때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의 문단 41~42와 B110에 따라 두 유형의 유형자산이 공유되지 않는 특성(상이한 특성)을 보유하므로 유형자산 분류에 대한 주석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온실가스 배출량 정도(기후 위험 노출정도)에 따라 세분화해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한다.

### III\_현행 실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① 기후 관련 정보 등의 재무제표 공시에 대한 국내 현황

현재 국내에는 기후 관련 정보의 재무제표 공시에 대해 구체적인 회계기준이나 감독지침이 없다. 이 때문에 국내 대다수 상장기업들이 재무제표에 기후 관련 위험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표준문구 형태로 공시할 뿐, 구체적인 전환계획이나 회수가능액 계산 시 기후 관련 위험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관련 투입변수의 민감도 분석과 같은 세세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작성자에게 미치는 영향

공개 초안에 포함된 사례는 기준서 본문을 구성하지 않는 비강제적인 지침으로 각 기업은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공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외부 환경이나 제도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공개 초안의 사례를 기반으로 추가 공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이번 공개 초안이 작성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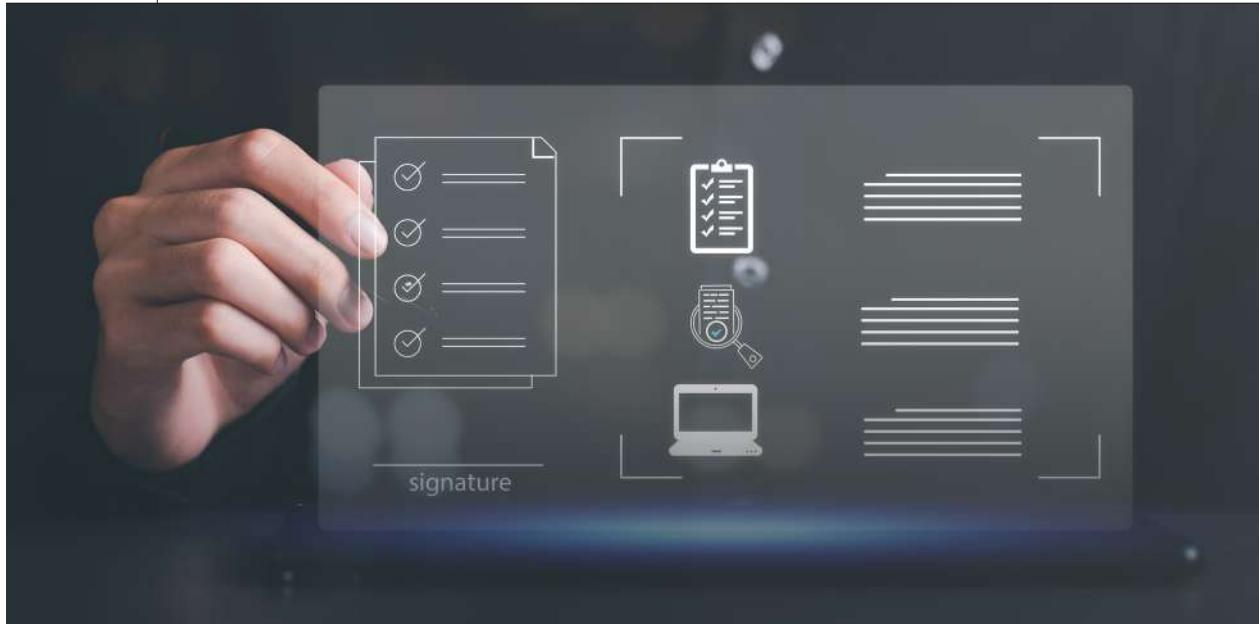
각 국가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도입 여부 및 기후 관련 공시 지침의 유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지침이 없어 대부분 기업들은 기후 정보를 ‘재무제표’가 아닌 ‘지속가능성보고서’와 같은 다른 보고서에 자발적으로 공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이번 공개 초안이 비강제적인 지침 형태로 제공되었지만, 주요 글로벌 국가들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도입하고 의무화하면서 해당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장한 국내 대기업 및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중소기업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 동안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던 기업의 경우 공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③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재무제표 이용자는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이전에 재무제표 외에서만 공시되었던 기후 관련 정보가 이제 재무제표에 포함됨으로써 정보 접근 가능성이 높아져, 이용자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통합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IV\_시사점 및 결론

많은 해외 국가들과 달리 국내는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기후 관련 및 기타 불확실성 정보에 대한 투자자 요구가 점차 늘고 있다. 이번 IASB 공개 초안을 계기로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외 보고서 간 정보의 연결성을 강화해서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①



## K-IFRS 제1115호의 적용범위 및 고객과의 계약의 정의

장기영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기업은 수익 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수익 기준서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은 드물다. 따라서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모든 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관련 기준서 문단 5 ‘적용범위’에서는 타 기준서 등을 우선 적용하므로 제외되는 계약을 설명하며, 기준서 문단 6에서는 ‘고객’의 정의를 설명하며 계약상대방이 고객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기준서 문단 9에서는 ‘고객과의 계약’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유로 제외되는 계약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유로 K-IFRS 제1115호에서 제외되는 유형을 설명하고, 몇몇 계약 유형에 대해 간단한 사례를 덧붙여 해당 기준서의 범위에 대한 이해를 돋고자 한다.

### I\_ 적용범위

K-IFRS 제1115호 문단 5 ‘적용범위’에서 타 기준서 등을 우선 적용하여 제외되는 항목은 ① 리스계약, ② 보험계약, ③ 금융상품 및 지분투자 관련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 ④ 비화폐성 교환이다.

첫 번째, 리스계약이 K-IFRS 제1115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리스 제공자인 경우 리스자산을 제공하고 리스료를 수취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에는 K-IFRS 제1115호를 적용하지 않고, K-IFRS 제1116호 ‘리스’를 먼저 적용해야 한다. 계약에서 K-IFRS 제1116호 리스요소를 식별한 후, 비리스 요소가 계약에서 식별되는 경우 K-IFRS 제1115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K-IFRS 1116.12). 관련 사례를 살펴보자.

### <사례 1> 용역제공과 장비임대의 계약 기간이 다를 때 대가와 거래 가격 배부

기업 A는 고객과 계약기간 동안 용역제공과 특정 장비를 사용할 권리 제공한다(단, 계약 종료 시 장비는 반환된다). 최초 계약 기간은 12개월이나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추가 12개월 연장된다. 연장 시 계약은 용역제공과 장비 임대 모두에 적용된다. 고객에게는 최대 24개월까지 계약을 연장할 경제적 유인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고객은 용역제공과 장비 사용 권리에 대해 월간 요금으로 C40을 지불한다. 월별 개별판매가격은 용역 제공이 C50이고 장비 임대는 C5라고 가정한다. 이 때 계약의 총 대가는 어떻게 결정되며, 비리스요소인 용역제공과 리스요소인 장비 임대에 어떻게 배분되어야 할까?

먼저 총 대가는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장비 임대 기간은 고객이 최대 24개월까지 계약을 연장할 경제적 유인이 있기 때문에 24개월로 결정된다. 용역제공 계약 기간은 집행 가능한 권리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이때 계약기간은 해지할 수 없는 계약 기간인 12개월이다.

다음으로 거래가격 배분 관련하여 K-IFRS 제1115호와 K-IFRS 제1116호 모두 구성요소의 기간이 다를 때에 대한 배분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사례에서 계약은 전체적으로만 연장될 수 있으므로,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의 기간을 결정하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대안이 가능하다. 기업 A는 장비 임대 기간(24개월) 기준 또는 해지할 수 없는 계약 기간(12개월)을 기준으로 대가 및 거래 가격을 결정하고 배분할 수 있다.

#### (1) 12개월을 기준으로 한 계산

총 대가는 C480 (12개월 × C40)이며,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구분	월별 개별 판매가격	계약기간동안의 월별판매가격	개별판매가격의 비율	배부된 대가
리스	C5	C5×C12=C60	C60/C660=9%	9%×C480=C43
용역제공	C50	C50×C12=C600	C600/C660=91%	91%×C480=C437
합계		C660		C480

장비 임대 기간은 2년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추가 대가는 최소 임대료로 리스에 포함된다. 이 대안에서는 추가 대가가 최초 12개월 동안 임대 구성요소에 배분된 것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구분	1개월-12개월	13개월-24개월	합계
리스	C43	C43	C86
용역제공	C437	N/A	C437
총계	C480	C43	C523

#### (2) 24개월을 기준으로 한 계산

총 대가는 C960 (24개월 × C40)이며,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구분	월별 개별 판매가격	계약기간동안의 월별판매가격	개별판매가격의 비율	배부된 대가
리스	C5	C5×C24=C120	C120/C1,320=9%	9%×C960=C86
용역제공	C50	C50×24=C1,200	C1,200/C1,320=91%	91%×C960=C874
합계		C1,320		C960

상기 금액들은 배분 목적을 위해서만 계산되었으므로, 기업 A는 계약 당사자들이 현재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계약의 준속 기간(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수익 금액을 얼마나 인식할지 결정해야 한다.

두 번째,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K-IFRS 제1115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보험계약 중 '고정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은 예외적으로 K-IFRS 제1115

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sup>

세 번째,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른 금융상품과 연결, 공동약정, 공동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기준서와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 공동, 관계기업 투자 관련 회계처리를 규정하는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따른 계약상 권리 및 의무는 K-IFRS 제1115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2020년 6월 국제회계기준 위원회에서 진행된 논의를 소개한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부동산 자산 하나만을 보유한 종속회사를 고객에게 매각하거나, 재고자산(및 관련된 법인세 자산부채) 하나만을 보유한 100% 종속회사를 고객에게 매각할 때의 회계처리 관련 안건이 논의되었다. 논의 주제는 이러한 종속회사를 고객에게 매각할 때 K-IFRS 제1115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수정안 허용을 제안하는 것이었다.<sup>2)</sup> 현재의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종속회사의 매각에는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해야 하나, 특정 조건을 갖춘 종속회사의 매각에는 수익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러한 제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결국 종속회사를 고객에게 매각하는 계약 유형은 수익기준서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K-IFRS 1110호 등 관련 투자주식 기준서들을 먼저 적용한다고 보아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객이나 잠재적 고객에게 판매를 쉽게 하기 위해 행하는 같은 사업 영역에 있는 기업 사이의 비화폐성 교환도 K-IFRS 제1115호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면 두 정유사가 서로 다른 특정 지역에 있는 고객의 수요를 적시에 충족하기 위해 두 정유사끼

주1\_ 이와관련해서는 2023년 2월호 '비보험사의 K-IFRS 1117 보험계약 적용여부 판단' 기고에서 사례와 함께 설명한 바 있으니 해당 호를 참고바란다.

주2\_ <https://www.iasplus.com/en/meeting-notes/iasb/2020/june/maintenance>



리 유류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계약에는 K-IFRS 제1115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잠재적 고객에게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교환거래임에도, 기업과 재고를 교환하는 거래상대방이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산출물을 획득하기로 계약한다면 거래상대방이 고객의 정의를 충족하여 수익 기준서를 적용하려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사이에 고객이나 잠재적 고객에게 판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비화폐성 교환을 포함하는 거래는 K-IFRS 제1115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 II\_고객

고객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계약은 수익 기준서를 적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배당수익, 비교환거래(기부금이나 출연금의 수령), 생물자산·투자부동산·일반상품 중개인(매매인)의 재고자산 가치변동은 거래상대방이 고객의 정의를 충족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K-IFRS 제1115호에서 제외된다(K-IFRS 1115.BC28).

**'고객이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그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를 말한다. (K-IFRS 1115.6)'**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을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활동이나 과정(예: 협업약정에 따른 자산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기업과 계약하였고, 그 계약 당사자들이 그 활동이나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과 효익을 공유한다면, 그 계약상대방은 고객이 아니다. 계약 및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협업이나 동업계약에 따른 관계를 이해하고 계약 전체 또는 일부가 실질적으로 고객과의 계약인지 식별하여야 한다. K-IFRS 제1115호 BC54에서는 공동 유형의 계약에서 거래상대방이 고객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 사실 및 상황(예: 거래상대방이 하는 활동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규정은 고객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기재하고 있다.

- (1) 생명공학·제약 기업의 공동 연구·개발 노력이나, 항공우주·방위, 기술·의료 산업이나 고등 교육기관의 이와 비슷한 약정
- (2) 석유·가스 산업에서 연안의 석유 및 가스 매장지역의 동업자들이 보고기간에 생산량에 대한 비례적 권리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서로에게 지급할 수 있는 약정
- (3) 기업이 연구활동을 위해 보조금과 후원금을 받고 그 교부자와 후원자는 연구활동의 산출물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규정할 수 있는 비영리산업의 약정(K-IFRS 1115.BC54)

## III\_고객과의 계약

고객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K-IFRS 제1115호를 적용하기 위해 계약이 '고객과의 계약'을 충족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준서 문단 9에서는 ① 계약의 승인 및 의무 확인, ② 권리의 식별, ③ 지급조건 식별, ④ 상업적 실질, ⑤ 대가의 회수가능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이를 사례와 함께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계약에서 의무수행이 확인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객과의 계약이라면, 기업의 의무는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것이고, 고객의 의무는 경제적 대가의 지급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승인은 서면으로, 구두로, 사업 관행에 따라 계약이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 <사례 2> 계약연장 협상기간 중 계약의 존재 여부

기업 B는 고객에게 매월 C1,000을 받고 12개월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는 자동 연장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20X4년 11월 30일에 기존 계약은 만료되었다. 기업 B와 고객은 20X5년 2월 28일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고, 새로운 계약은 20X4년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어 고객이 월 C1,250의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체결되었다. 고객은 12월, 1월, 2월 동안 계속해서 월 C1,000을 지불했고, 기업 B는 그 기간 동안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였다. 만료된 기간 동안 기업 B와 고객간 서비스 품질 관련 이슈는 없었으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요금 협상만 진행하였다. 이런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12월, 1월, 2월 동안 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까?

<사례 2>는 서면 계약이 존재하지 않은 기간이 있었지만, 계약의 식별이 가능하므로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이 계속 서비스를 제공했고, 고객이 계속해서 월 C1,000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재협상 기간 동안 양 당사자가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면, 계약이 존재하는 것이다. 단지 정식 서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기존 계약이 만료되었고 자동 연장 조

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12월부터 2월까지의 중간 기간 동안 계약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면 계약이 없는 경우 법적 해석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경영진이 재협상 기간 동안 계약이 존재한다고 결론 내린다고 해도, 변동대가 추정치를 고려하여 수익을 인식해야 할 수도 있다.

두 번째, 당사자의 권리가 식별되어야 한다. 기업이 이전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없다면,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자.

#### <사례 3> 무료 체험 기간 동안의 매출인식

기업 C는 모든 잠재 고객에게 유료 구독을 유도하기 위해 3개월 동안 무료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은 3개월 동안의 무료 체험 서비스가 종료되기 전에 12개월을 추가로 사용하기로 하는 유료 구독을 선택하거나, 무료 체험 서비스만 이용하고 추가 구독 하지 않고 종료할 수도 있다. 이때 한 고객이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즉, 3개월 체험 기간의 두 번째 달)에 12개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회사는 무료 체험 기간의 남은 기간(즉, 3개월 체험 기간의 마지막 달)에 이 고객과 관련된 매출을 인식할 수 있는가?

계약이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결되었으므로 기업은 남은 무료 체험 기간이 고객과의 계약의 일부인지 판단해야 한다. 경영진은 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무료 체험 기간 남은 한 달까지 포함하는지, 아니면 미래 12개월의 유료 구독 서비스 기간만을 포함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만약 경영진이 남아있는 무료 체험 기간이 고객과의 계약의 일부로 식별된다면, 매출은 남은 무료 체험 기간과 12개월 구독기간 동안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13개월에 걸쳐 전진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즉, 고객과 유료서비스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무료 체험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고객과의 계약이 존재하게 된다. 반대로 남은 기간이 고객과의 계약의 일부로 식별되지 않는다면 관련 재화나 용역의 제공은 모두 수익으로 인식될 수 없다.

**계약이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결되었으므로 기업은 남은 무료 체험 기간이 고객과의 계약의 일부인지 판단해야 한다. 경영진은 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무료 체험 기간 남은 한 달까지 포함하는지, 아니면 미래 12개월의 유료 구독 서비스 기간만을 포함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만약 경영진이 남아있는 무료 체험 기간이 고객과의 계약의 일부로 식별된다면, 매출은 남은 무료 체험 기간과 12개월 구독기간 동안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13개월에 걸쳐 전진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이 식별되어야 한다. 재화와 용역을 이전하는 계약에 지급조건이 없는 경우 거래가격을 식별할 수 없을 것이나, K-IFRS 제1115호 BC39에서는 건설업계의 관행(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산정 없이 일정 기간 확정되지 않았지만, 작업 범위는 이미 확정된 경우)으로 인해 명시적 지급조건이 없다면, 고객과의 계약이 식별되지 않을지 논의한다. 그러나 같은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 “작업의 범위가 승인되었고 기업이 가격은 승인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주문변경에 대한 수익인식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이러한 경우, 기준서에서는 기업이 계약변경에 관한 요구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네 번째,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한다. K-IFRS 제1115호에 BC40-41에서는 비화폐성 교환을 포함한 고객과의 계약에서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를 논의할 때 ‘상업적 실질’을 하나의 기준으로 포함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수익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흔히 현금성 대가가 사소하거나 아예 없이) 재화나 용역’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으므로 상업적 실질이라는 기준이 ‘모든계약(비화폐성 교환뿐만이 아님)에서 중요’하다 보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아야(probable) 한다. 대가의 회수 가능성을 평가할 때는 ‘지급기일에 고객이 대가(금액)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과 지급할 의도’와 ‘기업이 고객에게 가격 할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가가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기업의 고객에 대한 신용 위험 평가, 가격 할인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K-IFRS 제1115호 IE7-9는 이러한 회수 가능성이 평가에 대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니 회수 가능성이 대한 이해를 위해 해당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기업의 고객에 대한 신용 위험 평가와 관련하여 과거 경험에 따른 회수율이 대가의 회수 가능성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자.

#### <사례 4> 과거 경험에 따른 회수율과 대가의 회수 가능성

기업 D는 도매업체로 유사한 계약 조건으로 많은 고객에게 선글라스를 판매하고 있다. 새로운 고객을 등록하기 전, 기업 D는 고객 등록 및 신용 조회 절차를 수행하여 고객이 지불할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확인한다. 기업 D는 신용 평가 결과 고객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새로운 고객은 등록하지 않는다.

20X4년 1월에 기업 D는 여러 고객에게 선글라스를 배송하고, 그 대가로 총 C1,000을 받기로 하였다. 기업 D는 선글라스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고, 남은 수행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기업 D는 내부 고객신용평가 절차의 결과 각 고객에 대해 개별적으로 전체 대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결론지었으나, 과거 경험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전체 청구 채권 금액의 95%만 회수할 수 있었다. 기업 D는 과거 경험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적절히 반영한다고 예상하고 있다. 기업 D는 고객으로부터 청구 채권 전액을 회수할 예정이며, 특정 고객에게 가격 할인을 제공할 계획은 없다. 이 경우 기업 D는 얼마만큼 수익을 인식해야 할까?

각 고객에 대해 전체 대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기업 D는 선글라스의 통제를 이전할 때 C1,000의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기업 D의 과거 회수 경험은 수익 인식 여부 및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가의 회수 가능성 기준이 전체 청구 채권 기준으로 충족되며(즉, 고객과의 계약이 유효함), 가격 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 D는 K-IFRS 1109호에 따른 매출 채권의 손상 여부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K-IFRS 제1115호에 따른 적용 범위, 고객과의 계약의 정의를 살펴보았다. K-IFRS 제1115호를 적용함에 있어 첫 번째 단계는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 관계를 따져 거래 가격이나 수행 의무 식별에 못지 않게 계약이 K-IFRS 제 1115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 대가의 회수 가능성을 평가할 때는  
‘지급기일에 고객이 대가(금액)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과 지급할 의도’와 ‘기업이 고객에게  
가격 할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가가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기업의 고객에  
대한 신용 위험 평가, 가격 할인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K-IFRS 제1115호 IE7-9는 이러한  
회수 가능성이 평가에 대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니  
회수 가능성이 대한 이해를 위해 해당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 비금융 기업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 지침 - 시나리오 프로세스

심재경\_삼일회계법인 Sustainability Team 파트너

### I\_서론

세계경제포럼(WEF)은 기후위험을 상위 5대 비즈니스 위험 중 하나로 꼽으며, 기후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고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7월, TCFD는 기후변화로 인해 생기는 기업의 위험 및 기회에 대해 명확하고 효과적이며 일관성 있는 정보 공시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서는 기업의 중요한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전략적, 재무적 시사점을 공시하고, 다양한 기후 관련 시나리오에 대한 기업 전략의 회복력을 기

술하도록 요구한다.

시나리오 분석은 다양한 일련의 시나리오를 통해 기업의 전략 및 전략 방안을 테스트하는 수단으로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위험 및 기회 식별, Trigger point 식별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략을 모니터링하고 수정할 근거로 활용된다. 하지만 다수의 기업은 적합한 데이터와 도구의 확보, 재무적 시사점에 대한 정량화의 어려움, 기밀 정보를 공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TCFD는 기후 관련 시나리오를 수행하려는 비금융 기업들을 위해 시나리오 분석 지침을 발표하였다.

## II\_지침 설명

권고안의 구성은 <그림 1>과 같으며, 이번 호에서는 주로 A, B, C 내용에 대해서 ‘부록 1’과 ‘부록 3’을 참고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1> 비금융 기업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 가이드 목차



October 2020,  
<비금융 기업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 가이드>

- A. Introduction(서론)
- B. Getting Organized(체계적 준비)
- C. The Scenario Process(시나리오 프로세스)
- D. Strategy Management Using Scenarios  
(시나리오를 이용한 전략경영)
- E. Disclosure: demonstrating Strategy Resilience  
(공시: 전략의 회복력 제시)
- Appendix1: Overview of Public Scenarios  
(공개 시나리오 및 모델의 개요)
- Appendix2: Scenario Construction  
(시나리오 구성)
- Appendix3: Summary of Selected tools and information  
(선택된 시나리오 도구 및 정보의 요약)
- Appendix4: Interviewed Organizations  
(인터뷰 대상 기업)

### (1) 목차 A: 서론

기후변화는 기업을 포함하여 생태, 사회, 경제 시스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반면, 기후변화 원인과 파급 효과 간의 피드백 지연으로 인해 원인과 결과 간의 명확한 상관관계가 부족하고, 그 영향에 따른 결과의 발생 범위 및 시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존의 사업계획 수립 방식으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 쉽지 않다. 하지만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현재부터 미래까지 전개될 수 있는 경로(Pathway)를 기술한다. 이후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검토하고, 다양한 가설적인 미래 기후 상황에서 기업이 어떻게 운영할지 파악하게 함으로써 더 바람직한 전략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시나리오 분석 시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 관점에서 이를 각각 분리하여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침에서 강조한다. 전환 위험을 야기하는 기후 관련 정책과 법률의 도입은 향후 그 영향을 통해 폭염, 태풍 등의 물리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어 기후변화 위험 전반에서 시나리오 분석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목차 B: 체계적 준비

시나리오 분석을 위해선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림 2>



#### ① 정보 제공, 교육, 참여

시나리오 분석의 중요성을 기업 내 모든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 제공과 시나리오란 무엇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나리오 분석의 개념과 필요성을 알린다. 또한, 다양한 참여 워크숍을 통해 기업 내 시나리오 분석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 ② 시나리오의 당위성 형성

시나리오 분석의 필요성과 목적을 명확히 하여 기업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를 통해 시나리오 분석이 단순한 예측이 아닌, 전략적 사고와 의사결정의 중요한 도구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 ③ 명확한 지배구조 및 경영진의 리더십

시나리오 분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명확한 지배구조를 설정하고, 경영진의 리더십을 강화한다. 즉, 지배 구조상 이사회 수준까지 시나리오 분석 계

획 및 결과 보고가 필요하다. C레벨 이상의 경영진이 운영 및 보고 책임을 맡는 등 기업 내에서 시나리오 분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시나리오 분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 ④ 견고한 전담 시나리오팀 구축

시나리오 분석을 전담할 팀을 구성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보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이란 인적자원이다. 기업의 사업모델, 자산, 조직구조, 전략 등 전문성을 가진 인원 확보가 중요하다. 전담팀은 시나리오 분석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조직 내 다양한 부서와 협력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한다.

#### ⑤ 내·외부 자원 요구사항

시나리오 분석에 필요한 내·외부 자원을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내부 자원으로는 조직 내 인력, 데이터, 기술 등이 포함되며, 외부 자원으로는 외부 전문가, 컨설팅 업체, 데이터 제공업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시나리오 분석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 (3) 목차 C: 시나리오 프로세스

#### ▶ 시나리오란?

시나리오는 발생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고 가설적인 특정한 미래의 결과로 귀결되는 상황 전개의 경로(Pathways)다. 회계추정치처럼 합리적인 한 가지 경로를 식별하는 전망이나 예측이 아니라, 전략적인 사고의 기반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설계된 “만일 ~된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설명이다. 시나리오는 미래에 대한 모든 설명이라기보다는, 발생 가능한 미래의 핵심 요소들을 강조하고,

반대급부로 미래의 경로 및 결과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과 가정을 식별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그래서 본 지침에서는 시나리오를 통해 기업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당사의 현재 전략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돋는다.

<표 1> 시나리오 vs 비 시나리오

시나리오가 아닌 것	시나리오인 것
미래에 대한 예측(Forecast)	발생 가능한 미래에 대한 설명
한 가지 Case에 대한 다양한 변형	미래에 대한 상당히 다양한 견해들
결말에 대한 단편적 묘사	진화하는 미래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영화와 같은 형태
희망·공포가 반영된 추상적 관점	선택과 결과에 따른 구체적 관점
미래학자들의 산출물	경영진의 인사이트/인식을 위한 결과물

#### ▶ 시나리오 유형

시나리오 유형은 크게 ‘탐색적’ 시나리오와 ‘규범적’ 시나리오로 구분된다. 탐색적 시나리오는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래 상황들로 이어지는 다양한 경로를 탐색하는 데 사용된다. 규범적 시나리오는 넷제로 계획처럼 기업이 선호하는 미래에 대한 계획 수립에 사용된다.

이 중 TCFD가 권고하는 시나리오는 ‘탐색적 시나리오’다. 특히, 기업들에게 2°C 이하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기업 전략의 회복력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지침에서도 3~4개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이에 따라 공개된 시나리오인 IPCC의 RCP(대표농도경로)나 SSP(공통사회경로) 시나리오를 사용한다. 일부는 각 기업이 직면한 위험 및 기회에 따라 자체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이때 오랫동안 개발한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적용할 경영진의 의지와 기업의 시나리오 프로세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또한, 시나리오 분석 시 분석의 범위를 공급망 등을 포함한 기업의 전체 가치사슬로 적용한다. 분석 대



상 기간도 각 기업의 자본계획 수립 기간 등을 고려하고 국가 및 국제적인 기후정책에서 사용하는 기간(예: 2030년, 2050년)에 부합하는지 고려할 필요도 있다.

&lt;그림 3&gt; 시나리오의 종류



- ✓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미래 상황들로 이어지는 다양한 경로를 탐색
- ✓ 기후 관련 위험 및 불확실성을 평가하고, 여러 조건 속에서 기업 전략의 회복탄력성을 실험하는 목적
- ✓ 선호하는 미래 상황을 미리 설정한 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경로를 탐색(예: Net Zero)
- ✓ 기후 관련 위험 및 불확실성을 탐색하려는 목적보다는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계획을 세우고 평가하는 목적

### ▶ 시나리오 개발 프로세스

#### ① 이해관계자 협의·참여 확보

시나리오 개발의 핵심 요소는 내부 이해관계자(이사회 이사, 고위 경영진, 위험·재무·지속 가능성·전략 기능 담당 부서장 등)와 외부 이해관계자(투자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서 관심을 갖는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나리오는 의미가 없다.

#### ② 문제 정의 및 시나리오 전략 결정

이해관계자 참여가 결정되었다면, 초기 회의를 통해 시나리오의 중점사항 및 분석 범위를 논의하고, 시나리오 분석 일정을 수립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 제공 및 교육도 해야 한다. 또한,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서 현재 어떠한 위험에 직면해 있는지, 과거 경험상 기후와 관련하여 어떤 위험이 재발하여 사업 전략 및 목표에 영향을 줄 것인지, 미래에는 어떤 위험이 새롭게 생겨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등 다양한 의견을 수집한다. 궁극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가 기업, 각 사업부, 제품, 원자재, 고객 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문제를 식별하고 기업은 이를 위



시나리오 개발의 핵심 요소는 내부 이해관계자(이사회 이사, 고위 경영진, 위험·재무·지속 가능성·전략 기능 담당 부서장 등)와 외부 이해관계자(투자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서 관심을 갖는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나리오는 의미가 없다.

해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등의 핵심 의사결정 요소들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 ③ 환경 및 동인 파악

시나리오 수립 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기후 환경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후 환경은 여러 가지 동인으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동인들(예: 인구통계, 신기술, 거시경제, 에너지, 법률규제 등)과 관련한 추세, 패턴, 불확실성을 식별하는 것도 필요하다.

#### ④ 시나리오 경로 및 결과 이해

일반적인 기후 관련 시나리오들은 목표로 하는 온도라는 결과와 이에 상응하는 배출량, 에너지, 가격정책 그리고 기술 관련 가정들을 기반으로 하고, 이런 방식으로 IPCC의 RCP, SSP 시나리오들이 구축되어 있다.<sup>10</sup> 특정한 기온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시나리오들은, 특히 물리적인 위험의 영향을 이해하고,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기온 목표에 기반한 기업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보다 많이 사용된다.

#### ⑤ 시나리오 설명과 정량화

시나리오 분석은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경로에 대한 설명이다. 이러한 경로를 정

<sup>10</sup> 주1 \_ 공개된 시나리오의 자세한 설명은 지침의 부록 1 참고

성적으로 논리정연하고 타당하게 기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기업이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잠재적 영향을 정량화하는 것을 기대한다. '부록 3'에는 기업이 이러한 정량화된 분석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과 도구(MSCI, Jupiter, S&P, IEA 등)에 대해 설명한다. 또 이러한 정량화된 시나리오 도구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수치로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신뢰성 있는 정보를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아직은 Input 데이터의 한계로 정량화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침에서도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영향을 먼저 정성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정량화는 영향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⑥ 품질점검

시나리오 분석이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효과적이며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시나리오에 대한 전체 구조, 논리의 타당성, 가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III\_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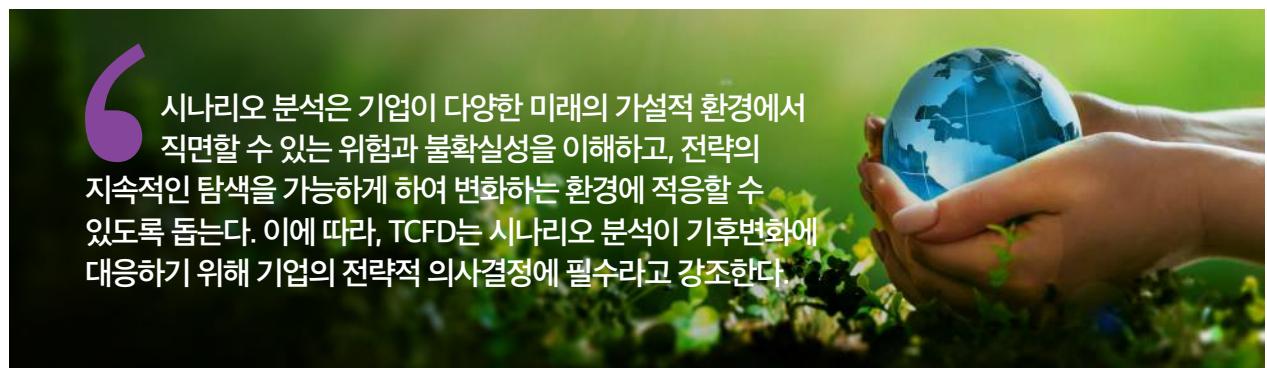
시나리오 분석은 기업이 다양한 미래의 가설적 환경

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전략의 지속적인 탐색을 가능하게 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돋는다. 이에 따라, TCFD는 시나리오 분석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필수라고 강조한다.

즉,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현실적이고 타당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미래의 기후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위험과 기회에 대한 기업 전략의 회복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공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이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가 기업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이 처한 환경과 활용할 수 있는 모델 및 Input 정보의 제약 등 시나리오 분석의 한계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기업이 경영진을 중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전담 인력 구성과 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시나리오 분석을 시작이라도 해 보는 것은 예상보다 더 빠르고 크게 다가오는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며, 계속 업데이트하여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점 역시 강조하고 싶다. ❶

시나리오 분석은 기업이 다양한 미래의 가설적 환경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이해하고, 전략의  
지속적인 탐색을 가능하게 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돋는다. 이에 따라, TCFD는 시나리오 분석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필수라고 강조한다.





## ‘실효성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컨설팅 성공 사례

정현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 파트너 / 박상준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 파트너

### I\_ 들어가며

2005년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최초 도입되어 2019년 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감사로 전환되는 등 규제 패러다임이 강화되었다. 이후 기업들은 업무 프로세스와 통제 활동 등 관리 수준을 꾸준히 점검·보완하여 재무보고의 질과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향상되었다. 그 결과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었다는 것이 시장과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반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시행된 이래 중대한 취약점을 공시한 기업이 많지 않음에도, 최근 수 년간 지속적인 자금 횡령 등 부정 사건이 끊이지 않아 동제도의 효용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 또한 존재한다.

이에 따라 감독 당국에서는 지난해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의 자율규정에서 시행세칙으로의 법규화, 자금관련 부정위험 평가 및 구체적 통제 활동 내용의 공시를 의무화하였다. 이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또 한번의 중요한 변곡점이라 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필수절차를 법규화한 것은 내용상 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평가 및 보고는 이전과 다르게 법의 영역에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금 관련 부정 위험평가 및 통제 활동을 정보이용자에게 공시하도록 한 것은 자금 부정 방지를 위한 실질적 내부통제 운

영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을 상기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감독 당국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재무보고 리스크뿐만 아니라 부정 리스크 대응 관점에서 실효성 있게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고 구성원들에게 업무수행과 관리수준 점검에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

필자는 ① 통제가 중요하고 실질적인 리스크를 사전 예방할 수 있거나, 사후적으로 적시 적발이 가능한 유효한 통제여야 하고, ② 통제가 업무매뉴얼과 연계되어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행되어 별도의 업무부담 없이 Compliance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리스크 평가를 통한 통제 활동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통제 활동의 정책과 절차와의 연계를 통한 내재화'를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관점에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컨설팅 및 감사 과정에서 실효적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위하여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노력한 사례를 소개한다.

#### <사례 1> 통제 활동의 정책과 절차(업무매뉴얼)의 연계를 통한 내재화된 회사의 감사 사례

A사는 글로벌 전자부품 등의 제조·판매 그룹의 한국 내 종속회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용함에 있어서 해외 모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룹 사의 통일된 정책 및 업무매뉴얼을 적용하여 A사의 업무매뉴얼 정비 및 통제기술서를 작성했다. A사 고유의 프로세스 및 통제는 별도로 업무 매뉴얼화하여 업무매뉴얼에 내재화시켜 당 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 수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의 시사점을 이렇다.

▶통일된 글로벌 정책과 업무매뉴얼 적용으로 업무의 통일화 가속화  
해외 모회사는 글로벌 기업으로 그룹 내 일관된 정책 및 규정 체계를 수립하고, 연결회계정책 외에도 각 프로세스·업무·부서별로 업무매뉴얼이 상세히 구비하고 있었다. 가급적 기존 업무매뉴얼의 업무절차와 통제 활

동을 베이스로 A사의 업무매뉴얼을 재정비하고, 통제기술서 작성의 기초로 삼아 프로세스 및 통제의 통일화를 가속화 하였다.

#### ▶회사 주도의 실질적 위험평가 및 내부통제 구축

A사는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처음부터 받지 않고 각 현업부서 주도로 해외 모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각 사업 영역별, 업종별, 지역별, 프로세스별 특성을 감안한 그룹사의 표준 리스크 항목의 질문지를 기초로 업무매뉴얼과 통제 활동을 Link 되도록 통제기술서를 작성했다. 또한, 미비한 업무 매뉴얼은 다시 보완함으로써 업무프로세스 및 구성원의 일상적인 활동에 통제 활동을 내재화시켰다.

#### ▶업무감사의 일화으로 동시에 수행된 설계 운영평가

중요 리스크에 대응하는 업무프로세스 및 통제 활동이 업무매뉴얼과 Link되어 통제기술서로 정립되어 있고, 설계·운영평가가 내부 업무 감사의 일환으로 동시에 수행되어 현업 임직원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계팀이나 전담 조직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 ▶모니터링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외부감사 절차

모회사 내부 감사팀의 요청에 의한 외부감사 시 모회사 내부 감사팀도 동석하여 각 통제 활동에 대한 통제수행자를 대상으로 감사팀 주도로 인터뷰 및 문서 검사를 수행함과 동시에 내부 감사팀도 실무적 내부감사 관점에서 추가 질문하는 등 평가 업무에 적극 참여했다. 이 덕분에 감사팀은 통제수행자의 적격성 및 운영평가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고, 내부 감사팀은 A사가 자체 평가한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

#### ▶실효적인 내부통제 운영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Tone at the top)

설계·운영평가 감사 결과 보고를 감사인과 내부 감사팀이 함께 대표이사, CFO, 현업의 부서장 및 통제수행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에 따라 평가 결과가 명확히 조직구성원에게 전달하고,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제대로 내부통제가 작동되도록 하였다.

#### <사례 2> 연결내부회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본사 주도 구축 및 예비평가 운영 사례

B사는 제조업 및 금융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으로써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이 되는 국내외 종속기업의 수가 다양한 국가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여 통제가 일관된 수준으로 유지·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다수의 해외 종속기업의 경우, 통제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인력과 현지 실무자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본사 주도하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구축 프로젝트에着手하였다. 또한, 구축 완료 후 외부감사 개시 이전에 사전 점검 및 예비 평가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전체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었다. 동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본사 주도방식 통제 구축 및 운영

회사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전 향후 통제 구축 및 운영 방식을 '본사 주도방식'과 '종속기업 위임방식'을 놓고 고민하였다. US SOX 등 타 국가의 유사 제도를 선 도입한 여러 타 글로벌 기업들의 사례를 볼 때 두 가지 방식을 각각 적용하거나 혹은 혼용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해외 종속기업의 인력 및 자식·경험 부족 상황을 고려하면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자칫 종속기업의 형식적이거나 미흡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그것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었다. 이를 고려하여 자문용역 회계법인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초기 단계에서는 '본사 주도방식'을 권고하였으며, 회사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규모와 업종 등 기타 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속기업을 그룹핑하였다. 규모가 크고 프로세스가 다양한 종속기업을 선제적으로 본사 주도하에 구축 후, 해당 결과물을 다른 유사 종속기업에 수평 전개(Roll-out)하는 방식으로 구축 업무를 진행하였다. Roll-out 시



에도 본사 주도하에 구축을 직접 수행하거나 예외적으로 종속기업이 타 자문 회계법인과 계약하여 업무 진행하는 경우 업무산출물 리뷰, 정기적인 미팅 등을 통하여 업무에 깊이 관여하였다. 예비평가 및 통제 설계/운영평가 과정에서도 본사 내부회계 담당부서 인원들을 각 종속기업별로 배정하였다. 협조가 더디거나 중요한 이슈가 발견된 종속기업의 경우, 내부회계 자문용역 회계법인과 종속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본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 ▶ 정기적인 교육 제공 및 동영상 제작

회사는 자문 회계법인을 통하여 구축 단계 및 후술할 사전 점검 및 예비 평가 기간 동안 종속기업별로 평균 월 1회 이상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때, 각 종속기업 실무자들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사에 구축된 통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실무 가이드를 전달하였다. 특히 평가 문서 작성 및 모집단 검증, 증빙 첨부 등에 있어 통제 평가단계에서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고자 변화관리/설계평가/운영평가 각 단계별로 문서 작성 및 기타 실무 요령에 대한 영문 동영상을 제작 및 배포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애로 사항을 감소시켰으며 질의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 ▶ 감사 도입 전 사전 점검 및 감사인 협의 진행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회사는 감사 개시 1년 전 통제 구축을 마무리하고, 구축 이후 1년간 사전 점검 및 예비 평가(Dry-run)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였다. 해당 기간에 식별된 통제 미비점에 대해서는 자문 회계법인과 긴밀히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수립하고, 미비점 해결 방안의 수행 주체와 기한을 결정·공유한 후 정기적인 회의 및 수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외부감사 이전에 해결함으로써 감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였다. 또한, 동기간 동안 각 종속기업 별 통제기술서 등 구축 용역 산출물을 본사 및 종속기업 감사인에게 전달하고 사전 점검을 요청하여, 감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선 논의·해결함으로써 감사대상연도의 연결 내부회계 감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 II\_마치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도입된지 어느덧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 기업과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익숙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익숙함은 외부감사인이나 기업의 구성원들에게 실효성에 대한 고민 없이 자칫 감사 대응을 위한 형식적 측면에 치우친 통제검증 업무를 반복하는 일로 치우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평가·보고 기준의 법규화, 연결기준 자금 관련 통제 활동 공시강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제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은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그룹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 및 점검 수준을 높이고, 실효적으로 부정위험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형식적인 위험평가는 형식적인 내부통제 운영을 초래한다. 그룹 차원에서 본사 주도하에 현재 설계·운영되고 있는 통제가 기업의 실제 리스크 관리에 충분하고 실효적인지 반문하고, 실질적이고 정밀한 리스크 평가를 통하여 통제 활동이 유효한지 점검해야 한다. 더불어 정책과 업무매뉴얼과의 연계를 통하여 통제 활동을 업무 과정에 내재화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을 기대해 본다. ◎



형식적인 위험평가는 형식적인 내부통제 운영을 초래한다.  
그룹 차원에서 본사 주도하에 현재 설계·운영되고 있는  
통제가 기업의 실제 리스크 관리에 충분하고 실효적인지  
반문하고, 실질적이고 정밀한 리스크 평가를 통하여 통제 활동이  
유효한지 점검해야 한다. 더불어 정책과 업무매뉴얼과의 연계를  
통하여 통제 활동을 업무 과정에 내재화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을 기대해 본다.





## 공인회계사와 함께하는 “회계”와 “미래”

- 2024년 중학교 1학년 대상 회계 교육

우리 회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전문직 멘토와 만남을 통해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주도적인 진로 계획 수립에 기여하고자 매년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회계 교육을 하고 있다. 올해 회계 교육에 참여한 회계사 2명과 학생들의 후기를 전한다.

1

### 회계사는 뭘 하는 사람이지?

이동천 동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작년에 로컬회계법인에서 개업을 한 이후 대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회계와 원가회계에 대한 강의를 종종 나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강의나 지식을 알려주는 일에 흥미를 느끼고 있어 강사라는 직업이 꽤 흥미롭고 적성에 맞았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회계 기초강의 및 공인회계사 소개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공인회계사

연수 과정 중 학교에 방문하여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연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사라져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던 저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지원하였는데 선정이 안 됐지만, 올해 또 한 번의 메일을 받고 신청하여 이번에는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회계사라는 직업을 성인이 된 이후 처음 들



어봤습니다. 대부분의 직업은 이름에서 하는 일을 유추할 수 있는데, 회계사란 직업은 들었을 때 ‘회계를 한다’는 것이 잘 와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회계사라는 직업을 들어만 본 채 다른 자격증 공부를 하던 중 회계라는 과목이 너무 재밌고 또 정교한 매력이 있어 회계에 매료되어 결국 회계사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회계사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회계사가 되면 하는 일, 회계사 시험을 보려면 최소 준비해야 하는 학점, 토익 등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사전에 준비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에게 회계사란 직업에 대한 소개와 회계사가 되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정도는 꼭 소개해 주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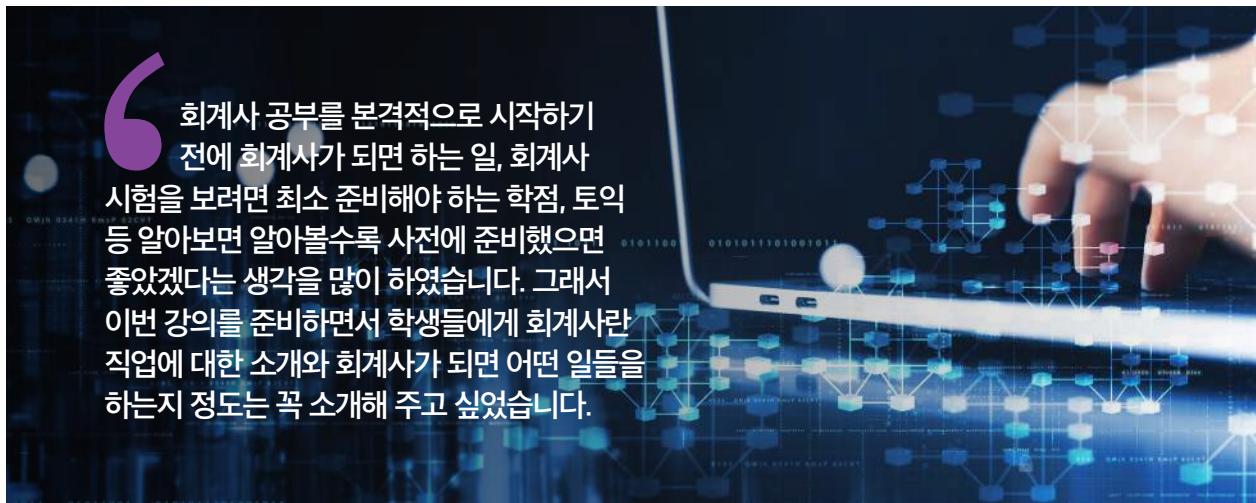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쓰였던 부분은 중학생의 눈높이에서 회계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였습니다. 저는 감사본부에서 회계감사 업무와 Deal Advisory에서 M&A 업무, 증권사에서 IPO 및 기업 금융 업무를 경험하여 회계사가 자본시장에서 수행 할 수 있는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자신 있었지만, 최대한

중학생의 눈높이에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공해 주신 교재를 바탕으로 화폐의 탄생부터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이 나오기까지, 또 회계사가 되면 하는 일과 회계사가 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점들, 학생들이 흥미가 떨어지지 않게 재밌는 시청각 자료 등 여러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회계사라는 직업을 들어봤다고 대답한 학생이 2명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단순한 2시간의 강의 시간일 뿐이었지만, 학생들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쉽고 재밌게, 또한 꾸밈없이 전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니 회계사에 관심이 생겼다고 대답한 학생이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요즘 중학교 교실 한 반에 학생이 20명 남짓한데 6명이나 관심을 표현해 주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면서 장래 희망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요즘 교육이 정말 좋아졌다고 느끼면서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한국공인회계사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회계사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회계사가 되면 하는 일, 회계사 시험을 보려면 최소 준비해야 하는 학점, 토익 등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사전에 준비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에게 회계사란 직업에 대한 소개와 회계사가 되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정도는 꼭 소개해 주고 싶었습니다.**



## 2

## 알아두면 쓸모 있는 회계 지식

이용진\_태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24년 8월 말 한공회로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회계교육과 공인회계사 직업 소개를 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회계사 1년 차 때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재능기부로 한 번, 그리고 5년 차 정도에 대학 동기의 부탁으로 사설 기관을 통해 고등학교에서 한 번, 총 두 번의 중·고등학생 대상 회계 교육을 한 적이 있어서인지 ‘한번 해볼까?’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강사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나 강사로 선정되었다는 메일이 왔고 첨부파일을 열어보니 참여 날짜와 학교를 정하는데 놀랍게도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바로 아래 위치했던 중학교가 명단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를 졸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반가운 나머지 바로 그 학교에 ‘참여 가능’ 체크 후 회신하고 그곳으로 교육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아는 분은 자녀가 해당 중학교로 진학할 예정이어서 선택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반가움에, 그 분께서는 궁금함에 그 학교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

선정된 이후 강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과거 2번의 교육과 다르게 이번 교육은 준비가 매우 수월했는데, 한공회에서 강의 교재와 아이스 브레이킹 할 수 있는 재료들을 PPT로 준비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교재의 모든 내용을 다루기엔 시간도, 아이들의 집중력도 허락하지 않았겠지만, 이 중 일부를 선별해서 사례와 함께 설명할 수 있어 교육 준비 시간이 이전보다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회계가 그렇게 딱딱하지는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

아두면 꽤 쓸모 있는 지식이라는 것과 자산 및 순자산, 수익 및 이익 정도는 구분하도록 해주자라는 것 이었습니다. 어차피 아이들에게 회계의 진한 맛(?)을 보여줄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이렇게 소박한 저만의 목표를 세우고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교육 날짜가 되어 학교에 가니 중학교 위쪽으로 제 모교(고등학교)가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보면서 ‘참 변한 것 없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15년 전과 너무 달라진 것이 없어서 좀 놀랐습니다. 물론 내실을 다졌겠죠(하하)? 몸을 돌려 제가 강의할 중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발을 디뎌 교실에서 아이들과 만났습니다. 요즘 아이들이라 그런지 저보다 키가 큰 남학생도 있었지만 위축된 마음을 다잡고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첫 25분 정도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며, 한공회에서 준비해 주신 과자를 나누어 주는 데 집중하며, 되도록 모든 아이가 소외되지 않고 과자를 받을 수 있게 신경썼습니다. 듣기로 북한도 중2가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이 아이들은 중1이라 그런지 아주 순수해 보였습니다. 또 교육 시간이 마의 5교시라 걱정했는데 저는 그날 식욕이 수면 욕을 이기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후 회계사, 회계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간단한 질문과 함께 교재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 예시를 사용해 자산, 부채, 자본(순자산)과 수익, 비용, 이익의 개념을 설명하자 곧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 세무, 재무 자문 업무를 하고 회계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이연’ 되어있



**‘ 교육 대상이 중학생이라 딱딱한 회계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즐거운 시간과 임팩트 있게 학습의 시간을 잘 배분한다면 충분히 집중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던 아이들의 수면욕이 ‘당기’ 수면욕으로 대체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음 한 켠으론 서운했지만 아직 중학생이라 회계사가 되는 법 보단 좋은 고등학교 가는 법이 더 목적 적합한 정보일 수 있겠다 싶어 이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후 잠을 깨우기 위해 2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4개 조로 나누어 조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역시 교재에 있는 투자의사 결정하기 실습을 활용했습니다. 한정된 자금으로 뉴진스, TWS, 변우석, 영지 중 누구에게 투자할 것인지 토론 후 발표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답을 말한 조와 아닌 조, 토론이 활발한 조와 한두 명만 고민하는 조도 있었지만 그래도 모든 조가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모습이 참 기특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2시간의 교육을 마친 후, 제가 여기 위의 고등학교 출신인데 그래도 선배가 밥 짖지는 않는다

고 자궁심(?)을 심어주고 회계사가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회계사가 언제 필요한지, 회계가 대략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시간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교육 대상이 중학생이라 딱딱한 회계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즐거운 시간과 임팩트 있게 학습의 시간을 잘 배분한다면 충분히 집중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또 중간에 회계사의 독립성 준수 의무와 회계정보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는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과연 관심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여러 사건 사고와 교재의 풍부한 예시를 통해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한 눈빛을 본 것 같아 뿌듯했고, 저 조차도 이번 교육을 통해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한 번 더 곱씹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회계사님들께서도 아이들과 교감하며 회계를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시간에 기회가 되신다면 참여해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교재 마련뿐만 아니라 학교 까지 오셔서 도움 주신 한공회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 <영등포 종학교 교사 및 학생들의 참여 후기>

노경남  
(교사)

이번 회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공인회계사가 하는 일을 배우고, 경제 교육에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들에게 뜻깊고 의미있는 진로 교육이 되었으리라 생각 됩니다. 나중에도 다시 좋은 교육으로 뵙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김\*선  
(학생)

회계사 선생님께 여러 질문을 했는데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로 회계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신 회계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관련 직업인 체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정\*은  
(학생)

이번 회계사 직업인 체험을 통해 장래희망에 회계사라는 직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물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어렵긴 하겠지만 이번 교육을 들으면서 회계사라는 직업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희  
(학생)

이번 회계사 직업인 체험을 통해 공인회계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 회계사가 될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회계사라는 직업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강사님께서도 재밌고 지루하지 않게 잘 설명해 주셔서 회계사라는 직업에 대해 더 흥미가 생긴 것 같습니다.





## 재무빅데이터분석사(FDA) 1급 합격자 후기

지난 9월 시행한 제6회 재무빅데이터분석사(FDA) 시험 합격자의 후기를 전한다. 특히 이번 회차에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 FDA 1급 시험이 있었다. 2급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많지 않아 준비 과정에서 난항을 겪는 경우도 많다. 합격자 4명의 생생한 후기가 도움이 될 것이다.

1

### 백문(百聞)이 불여일타(不如一打), 일단 도전!

이홍규\_휴업(회원)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재무빅데이터분석사(FDA) 1급 시험에 합격한 이홍규입니다. 먼저, 「공인회계사 저널」에 제 수기를 남길 기회를 주셔서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부족한 글이지만 제 경험 이 회계와 IT가 융합되는 새로운 트렌드에 관심을 가진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재무빅데이터분석사(FDA) 시험을 알게 된 경로

저는 재무빅데이터분석사(FDA) 시험을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3년간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퇴사 후 약 1년 동안 여행, 유튜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야를 넓혔고, 회계업무에서 IT 및 AI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가

장 기본적인 코딩 공부부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빅데이터분석기사 및 재무빅데이터분석사 자격증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회계업무의 기본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정확한 재무 정보를 도출하는 것이기에 이 자격증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 분석에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 시험준비 과정 및 방법

“백문(百聞)이 불여일타(不如一打)”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쳐보는 것이 낫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표현은 개발자들 사이에서 널리 통용되는 말입니다. 저 역시도 강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론적인 학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한



번 쳐보세요!

### - 2급 시험 준비: 기초부터 탄탄히,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2급 시험은 데이터베이스 이론, 기초회계, 기초통계, 파이썬 기초 등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며, 감사에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 분석 프로그램인 Fraudit의 기본 기능을 익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직전에 빅데이터분석기사 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있어 중복된 부분이 많아 비교적 쉽게 준비할 수 있었지만, 통계와 코딩 지식이 부족한 분들은 한공회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꼼꼼히 따라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Fraudit은 처음 접하는 프로그램이라 모든 기능이 생소했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해 보며 교재 문제와 기출문제를 직접 풀어본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급 시험은 누구나 충분히 도전할 만한 정도의 양과 난이도로 데이터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 이 세계에 발을 들이는 분들에게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공인회계사회의 기본강의만 성실히 따라간다면 합격하실 수 있는 수준이니 두려워 말고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 1급 시험 준비: 깊이 있는 학습으로 자신만의 논리를 세우자!

제가 응시한 FDA 1급 시험은 두 번째로 시행된 시험이었으며, 관련 자료나 가이드가 많지 않아 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일한 참고 자료였던 전년도 기출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답안의 길이와 복잡성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강의를 완강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했으나,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기억에 남는 것 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후 교재의 문제를 풀며 답안

을 참고하여 코드를 작성해 보는 연습을 반복하면서 점차 논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문제를 푸는 방식을 저만의 논리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Chat-GPT'를 활용해 다양한 코딩 방식을 시도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정답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논리로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hat-GPT'와 같은 도구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학습한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FDA 1급 시험에서는 모든 문제를 직접 코딩으로 해결해야 해서 기본적인 코딩 능력이 필수였으며, 자료를 해석하고 전처리하는 논리적 사고도 중요했습니다. 이 때문에 2급과의 난이도 차이는 상당하다고 느꼈으나, 자신의 논리를 꾸준히 구축하려 노력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합격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 마치며

최근 IT와 회계 분야의 접목이 중요한 이슈로 떠 오르면서, IT기술이 마치 영어처럼 강력한 하나의 언어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현재 저는 그 언어의 '알파벳'을 배우고 있는 단계라고 여깁니다. 결국 이 언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사용자에게 달려 있으며, 회계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IT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 영향력은 훨씬 더 강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FDA를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새로운 분야에서 생소함과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이 새로운 언어와 트렌드를 포기하지 말고 즐기며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 2

## FDA 시험을 통해 확인한 컴퓨터 언어의 잠재력과 가능성…

이기환 태성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저는 현재 태성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기환 회계사입니다. 지난 9월에 실시된 제6회 재무빅데이터분석사(FDA) 1급 성적 우수 합격자로서 후기를 쓸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와 다양한 목적의 공정가치 평가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무를 하면서 지난 이삼십년 동안 회계사의 업무 Tool 이었던 액셀의 한계를 조금씩 느끼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회계감사 절차 중 하나인 분개장 분석 (Journal Entry Test)이었습니다. 기업들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거래가 복잡해지면서 회계정보의 양이 매년 크게 느는 상황에서 액셀을 통한 분개장 분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해결 방안을 찾던 중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으로 ‘FRAUDIT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분개장 분석’ 강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실제 업무에 적용해 보면서 액셀로 불가능한 작업이 가능해지는 마법 같은 순간을 경험했고, 그 잠재력을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강의를 듣고 FRAUDIT 소프트웨어도 구매해서 기말감사 업무에 활용했던 것이 2021~2022년쯤이었는데, 이때는 자격시험은 딱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FRAUDIT 소프트웨어와 기반 컴퓨터 언어인 Python을 업무에 접목할 방안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올해 상반기에 한국공인회계

사회에서 ‘최적화와 옵션평가’ 강의를 들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분개장 분석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업무 Tool인 액셀의 한계를 느끼던 분야였기에 기쁜 마음으로 강의를 들었고 역시나 컴퓨터 언어의 기능과 속도에 매료되었습니다. 강의 중 FDA 자격시험에 대해 강사분께서 소개해 주시며, 아직 1급 합격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 한 번 도전해 봄아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험과목을 보니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찾아 들으며 공부해 왔던 분개장 분석, 최적화, 옵션평가를 제외하면 새로 공부해야 하는 분야는 정규표현식과 네트워크 분석 정도였기에 도전에 대한 부담이 덜했습니다.

올해 5월에 치른 FDA 2급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고 반기 검토가 끝난 뒤 8월 말부터 1급 시험을 대비 해서 공부했습니다. 돌이켜 보니 교재에 있는 연습문제와 기출문제를 해설을 보지 않고 풀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시험에는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꼼꼼하게 3회 독을 하고 그다음에는 연습문제와 기출문제 풀이만 반복적으로 익혔습니다. 컴퓨터 언어의 특성상 부분 점수가 없고 점이나 쉼표 하나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답이 달라지는 점이 제일 큰 부담이었지만 무한 반복하면서 손에 익히는 것 이외에 지름길은 없었습니다. 교재 내용을 눈으로만 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라도 키보드로 직접 입력해 봄아 합니다. 시험 막판에는 머리 속으로 풀



이 순서를 계속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했는데 이것 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처음 접할 때는 다 외계 어 같고 답안을 한 번 타이핑 해보는 수준이지만, 반복을 거듭할수록 조금씩 이해되는 부분이 생겨나면서 익숙해지니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1급 시험은 3시간 동안 객관식 30점, 주관식 70점으로 출제되고 100점 중 70점을 넘어야 합격입니다. 저는 객관식은 20분 동안 다 맞는 것을, 주관식은 남은 2시간 30분 동안 70점 중에서 50점 정도를 목표로 했습니다. 실제 시험을 볼 때 주관식 문제 수준부터 확인했는데, 대부분 예상을 벗어나는 문제는 없었고 오히려 쉽게 출제한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규표현식과 네트워크 분석 분야는 출제되지 않았고, 최적화나 옵션평가도 교재에 있는 내용 중 연습 문제 수준 이하로 출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첫 번째 1급 시험에서 합격자가 나오지 않아서 출제자가 난이도 조절을 했지 않나 싶었습니다. 다만 분개장 분석 문제에서 그동안 풀었던 연습문제나 기출문제에서는 각각 주어졌던 '전표일자'와 '전표번호' 데이터가 실제 문제에서는 하나의 데이터로 합쳐져서 주어진 것을 보고 '이 데이터를 정규표현식을 사용해서 전표일자와 전표번호를 분리하라'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제 기억에 15-20점 분량의 문제를 전혀 풀 수가 없기에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긴장하면서 풀었습니다. 처음에는 정규표현식 코딩에 자꾸 어려가 나면서 원하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계속 떠올리면서 차분하게 풀다 보니 다행히 시간 내에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답안을 보니 굳이 정규표현식으로 풀지 않고 간단하게 텍스트 추출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했던 것이어서 좀 허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컴퓨터 언어, Python을 공부하자고 생각하면 막막할 수 있지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일부 기능만 먼저 알아간다고 생각하면 그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고 해야겠다는 의지도 생깁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의 목표로 FDA 시험을 선후배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다. 그래도 막판까지 정규표현식과 네트워크 분석 분야를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던 덕분에 어쨌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FDA 시험을 통해서 컴퓨터 언어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 업무에 적용해서 고객들에게 좀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대부분의 산업에서 '디지털 혁명이다', 'AI시대로의 대변화이다', '조기 영어교육이 아니라 조기 코딩 교육을 한다' 등등 컴퓨터 언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업계는 변화에 느리고 보수적인 분야라서 아직 액셀이 주된 업무 Tool로 활용되지만, 머지않아 컴퓨터 언어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작년부터 XBRL도 시행되면서 업계에서 적어도 상장사를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사라면 컴퓨터 언어를 활용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계업계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컴퓨터 언어, Python을 공부하자고 생각하면 막막할 수 있지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일부 기능만 먼저 알아간다고 생각하면 그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고 해야겠다는 의지도 생깁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의 목표로 FDA 시험을 선후배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끝으로 공부한다고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음에도 믿고 응원해 준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3

##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활용도!

송민성 안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응시 계기

대학교 시절 빅데이터라는 키워드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경영학과에서도 데이터 관련 수업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흥미를 갖고 시작한 수업이었지만, 회계사로서 감사본부에서 일하면서 데이터 분석 분야를 감사 업무에 직접적으로 활용해야 할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회계법인에 입사해 3년 동안 일하면서 빅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을 체감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주로 겪은 어려움은 기업들의 IT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가공하고 해석하는데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만 되어도 총 계정원장의 크기가 엑셀의 행 수 제한보다 커서 이를 단순히 취합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대형 상장사의 경우 원장의 크기가 수 GB 이상 되는 경우가 많아 감사 절차 준비를 위해 이를 가공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때 학부 시절 배웠던 Python이나 Visual Basic을 활용해 각종 업무에 투입되는 노력을 크게 줄이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감사 업무에 활용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부 때 잠깐 배웠던 수준으로는 활용에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겪던 중,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직접 주관하는 FDA 시험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회계 분야의 빅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을 직접

적으로 다루며, 출제 주제가 대부분 실무 사례로 구성된다는 점에 흥미를 느껴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고, 올해 5회 시험에서 2급, 6회 시험에서 1급을 취득하였습니다.

### 준비 과정

FDA 1, 2급 모두 KICPA Alldemy의 강의, 교재, 기출 문제만으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김태식 회계사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강의가 시험 교재와 매우 높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강의 주제마다 실무 사례를 충분히 예시로 들어주셔서 몰입감 있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당 시간이 약 30분 정도로 길지 않아 업무와 병행하며 준비하기에도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교재의 예제가 실제 시험에 비슷한 유형으로 자주 출제되었기 때문에 교재와 강의를 위주로 준비한 것이 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준비 과정에서 가장 유익했던 학습 방법은 수업에서 활용된 코드들을 직접 타이핑하며 복습한 것이었습니다. 수업 중에 설명을 들을 때는 이해했다고 생각한 코드들도, 처음부터 직접 타이핑하고 실행해 보면 예상치 못한 오류들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업 내용이 이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대부분 실무 사례로 이루어져 있어서 직접 자료 파일



을 다운로드 받아 가공해 보는 과정에서 코드를 응용하는 다양한 방법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실제 시험도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재와 강의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활용

FDA 시험의 가장 큰 차별점은 실무 활용도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분석이라는 용어가 다양한 곳에서 쓰이지만, 그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데이터 분석 방법을 공부하더라도, 어떤 주제의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따라 학습 주제와 방법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본인이 필요한 영역의 도메인 지식과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맞게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

다. FDA는 회계·재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집중하고 있으며, 강의와 시험 모두 다양한 실무 사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활용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원장 간의 대사를 통해 이상 데이터를 쉽게 찾아내는 방법이나, 이상 거래의 징후를 보여주는 전표를 자동으로 추출해 주는 방법 등 실제 감사 업무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KICPA Alldemy를 통해 전체 강의가 제공되며, 프로그래밍 언어를 전혀 접해보지 않은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에 관심 있는 회계·재무 분야 종사자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 4

# 공인회계사의 실제 업무에서 활용성이 매우 높은 것이 장점

권현택\_한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올해 9월에 실시된 재무빅데이터분석사(FDA) 1급 시험에 합격한 한울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권현택입니다. 오래전부터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와 코딩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2023년 7월에 공인회계사회로부터 받은 이메일에서 재무빅데이터분석사 1급 오프라인 교육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육 과정은 Python, Fraudit, Numpy, Pandas, Pandas를 이용한 Journal Entry Test, Numpy와 Pandas를 이용한 옵션가치평가, 벤포드 분석, 네트

워크 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포함하고 있어 현업에서 느꼈던 불편한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또 실제로 교육을 수강하면서 갖고 있던 기대를 충분히 충족하며 매우 재미있게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김태식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화전략본부장께서 직접 강의하셨는데, 평일 월수금 저녁 시간과 주말에 걸쳐 진행된 교육 일정이 반기 검토 업무와 겹쳐서 어려움이 있었

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흥미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나서 바로 2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2023년 9월에 시행된 2급 시험은 기초회계, 기초통계, 데이터베이스 개요, Python 기초, Fraudit(데이터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과정 수강을 통해서 Python과 Fraudit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서 그런지 축박한 시험 준비 기간에 비해서 큰 어려움이 없이 합격했습니다.

2급 시험에 합격한 후 2024년 초에 있었던 감사 시즌에는 Fraudit의 Sampling Tool을 이용해서 실제 업무에 그동안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Python, Numpy, Pandas에 대해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진 수준은 아니라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분석에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적용하는 것에는 확실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감사 시즌이 지나고 2024년 9월에 1급 시험이 시행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시험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확실히 1급 시험은 2급에 비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SAP에서 다운로드 받은 대용량 GL을 분석하는 코딩과 Monte Carlo Simulation을 이용한 의사결정, Genetic Algorithm을 이용한 최적화, Numpy와 Pandas를 이용한 옵션가치평가, 벤포드 분석, 네트워크 분석 등은 모두 하나 같이 상당한 분량의 코딩을 실제로 수행하면서 각각의 코딩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고, 또 그러한 코딩

을 정밀하게 수행해야만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코딩 과정 중에 내용에 하나라도 오류가 있으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으므로 반복적으로 코딩 내용을 검증하는 지난한 연습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몇 번씩 반복하는 연습 과정을 거친 후 1급 시험에 응시했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생각했던 시험문제의 난이도 보다 어렵지 않게 출제되어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1급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우수한 성적의 합격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1년간의 정품 FRAUDIT 사용 기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존 위하고 회계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 받은 분개장의 경우 FRAUDIT에서 제공하는 JET메뉴를 이용여 10가지가 넘는 Journal Entry Test를 수행하고, SAP이나 영림원에서 다운로드 받은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서도 Journal Entry Test를 수행할 수 있도록 코딩하고 있습니다.

재무빅데이터분석사(FDA) 시험 내용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Python 기반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Fraudit을 이용한 시산표 작성 및 검증, Journal Entry 분석 등과 같이 공인회계사의 실제 업무에서 활용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용량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거나, 실무에서 대용량 데이터 분석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 재무 실무자라면, 재무빅데이터분석사(FDA) 시험을 통해서 배우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❶

**재무빅데이터분석사(FDA) 시험 내용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Python 기반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Fraudit을 이용한 시산표 작성 및 검증, Journal Entry 분석 등과 같이 공인회계사의 실제 업무에서 활용성이 매우 높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

김수정\_케이에스세무회계 공인회계사

### I\_들어가며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한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주거용 외의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취득세 중과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대 목적으로 상업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변경 시나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에 취득 시 건물분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반적으로 상업용 건물 취득 시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분양사는 일반과 세자로 사업자를 내고, 10%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면 된다고 수분양자들에게 권하고 있고 실제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시행이 된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임대를 놓고 있던 한 수분양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세를 55만원 받고 있었고,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660만원으로 연간 4,800만원에 미달해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이 일어났다. 이에 따른 안내문을 세무서에서 받았으나 별 내용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무시하고 있었다. 이후 갑자기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추징에 대한 과세 예고 통지를 받고 적잖이 당황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상업용 건물 취득 시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분양사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고, 10%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면 된다고 수분양자들에게 권하고 있고 실제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시행이 된다.**

이처럼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과 재고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간과하기 쉽고, 특히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금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II\_ 구체적인 내용

### (1) 과세유형 전환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 금액이 1억 5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홍장소 경영 사업자는 기준금액이 4,800만원이다. 공급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신규사업자는 12개월로 연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과세유형의 전환시기는 다음연도 7월 1일이며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전환 되지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재고납부세액과 재고매입세액이 일반적으로 상당한 금액일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6월 10일)까지 통지한다.

### (2) 재고납부세액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에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매입세액에 대한 10% 환급은 일반과세자만 적용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만 환급받기 때문이다. 간이과세자였으면 환급받지 못할 금액을 일반과세자였기 때문에 환급받았다는 뜻이 되며, 이에 대한 조정이 일어난다.

### ① 대상자산

모든 매입세액 공제받았던 자산이 아닌 다음의 자산에 대해 적용한다.

- (1) 상품
-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 (3) 재료(부자료를 포함한다)
- (4) 건설 중인 자산
- (5) 감가상각자산(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 ② 계산구조

각 자산군별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건물은 10년, 그 밖의 자산은 2년이 경과해야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 <표 1>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고품

$$\text{재고납부세액} = \text{재고금액} \times \frac{10}{100} (1 - 0.5\text{퍼센트} \times \frac{100}{10})$$

##### 2.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 중인 자산

$$\text{재고납부세액} = \frac{\text{해당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하여 공제받은}}{\text{매입 세액}} \times (1 - 0.5\text{퍼센트} \times \frac{100}{10})$$

##### 3.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text{재고납부세액} = \frac{\text{취득}}{\text{세액}} \times (1 - \frac{5}{100}) \times \frac{\text{경과된}}{\text{과세기간의 수}} \times \frac{10}{100} \times (1 - 0.5\text{퍼센트} \times \frac{100}{10})$$

#####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text{재고납부세액} = \frac{\text{취득}}{\text{세액}} \times (1 - \frac{25}{100}) \times \frac{\text{경과된}}{\text{과세기간의 수}} \times \frac{10}{100} \times (1 - 0.5\text{퍼센트} \times \frac{100}{10})$$

### ③ 일정 및 신고

7월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1~6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7월 25일까지 하여야 한다. 이때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세무서에서 재



고납부세액을 승인하거나 결정하여 통지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신고서대로 승인한 것으로 본다.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다음 해 1월 25일에 하고 재고납부세액을 이때 같이 납부하게 된다.

#### ④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적용

일반적으로 재고납부세액을 내더라도 간이과세자 전환 이후에 부가가치세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상당한 경우에는 불리할 수도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10년 이내에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변경 시, 폐업 시에는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주의해야 한다.

#### (3) 간이과세 포기

사업자가 재고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포기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로 남기 위해서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려는 전달의 마지막 날(예: 7월 1일부터 전환되면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 (4) 재고매입세액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 시에도 적용된다.

대상자산은 재고납부세액과 동일하며 <표2>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표 2>

$$\text{재고납부세액} = \text{재고금액} \times \frac{10}{100} (1 - 0.5\text{퍼센트} \times \frac{100}{10})$$

2.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 중인 자산

$$\text{재고납부세액} = \frac{\text{해당 건설 중인 자산과}}{\text{관련된 공제 대상}} \times (1 - 0.5\text{퍼센트} \times \frac{100}{10})$$

3. 제1항제5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text{재고납부세액} = \frac{\text{취득}}{\text{세액}} \times (1 - \frac{10}{100} \times \text{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times \frac{10}{110} \times (1 - 0.5\text{퍼센트} \times \frac{110}{10})$$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text{재고납부세액} = \frac{\text{취득}}{\text{세액}} \times (1 - \frac{50}{100} \times \text{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times \frac{10}{110} \times (1 - 0.5\text{퍼센트} \times \frac{110}{10})$$

일정은 상기의 재고납부세액과 동일하며 '일반과 세전환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III 맷음말

개인이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수입금액이 미달하여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거나, 주거용으로 변경 시나 폐업 시 등의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간이과세 포기 등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업종의 간이과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임대 물건 취득 시 일반과세자를 내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간이과세가 배제되기 때문이다.

초기에 투자비용이 커서 환급금액이 큰 경우나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

이처럼 관련 세법을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계획을 잘 세워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게 되어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①



수원지방법원	2023년 7월 13일 선고	원고 승소	2022구합71586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년 4월 5일 선고	원고 승소	2023누14332 판결
대 법 원	2024년 9월 12일 선고	원고 승소	2024두42659(심리불속행) 판결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 배우자 증여 후 자기주식 이익소각의 실질과세 가능 여부

이동건\_국립한밭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법학박사/공인회계사

### I\_사실관계

- 주식회사 B(이하 'B사')는 신문, 잡지 발간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3년 6월 17일 설립된 회사임. C는 B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C의 배우자임.
- 원고는 2018년 11월 21일 C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B사 주식 3,310주 중 2,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함. C는 2018년 11월 22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583,250,000원(1주당 가액 233,300원)으로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한도 내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함.

- B사는 2018년 11월 23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 2,500주를 1주당 가액 233,300원에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8년 12월 27일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583,250,000원(1주당 가액 233,300원)에 매입(이하 '이 사건 양도')하여 소각함.
- C는 2019년 1월 10일 B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 대금 583,250,000원을 수령하여, 4억 8천만원은 자



신의 B사에 대한 가지급금 반제에 사용하였고, 1억원을 제3자에게 대여함. C는 양도대금과 취득가액(증여금액)이 동일하므로 소득세도 내지 않음.

-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1년 5월 13일부터 2021년 9월 14일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증여는 가장거래로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상 원고가 B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피고는 2021년 12월 1일 원고에게 2018년 종합소득세 224,570,8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년 10월 1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22년 1월 28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년 4월 26일 기각결정을 받음.

## II\_관련 법령 및 쟁점

### (1)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15220호, 2017.12.19.) 제14조 제3항에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다단계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과세할 수 있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2) 쟁점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매입한 뒤, 이익소각한 거래를 부인하고 회사에게 바로 양도한 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III\_대상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래를 원고가 B사에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주식양도대금을 C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표 1>

구분	구체적 사유
1.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 감소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는 증여가액 583,250,000원만큼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증여 시 가액 평기가 과소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었다.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증여공제 한도, 가액 평가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진의 아닌 하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기장행위'라 할 수 없다.
2. 상법상 적법한 절차	B사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소각하였다. 이 사건 양도 역시 상법상 절차를 거친 적법한 것으로 기장행위가 아니다.
3. 유효한 법률관계 존중	이 사건 양도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①이 사건 증여, ②이 사건 양도를 모두 부인하고, 이 사건 거래를 ①원고가 B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 ②원고가 주식양도대금을 C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위 조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에게 이익 귀속이 안됨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583,250,000원 중 480,000,000원은 C의 B사에 대한 가지급금 반제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도 C가 사용하였다. 위 양도대금은 C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이 사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독립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의 존재	원고는 이 사건 증여는 B사의 지배구조를 단순화하여 C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 사건 양도는 C의 가지급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B사의 부채비율을 감소시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로 위와 같은 목적이 달성되었다.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

## IV\_판결의 시사점

### (1)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과세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

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 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될 수도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

**이번 대법원 판례는 과세관청과 납세자와의 다툼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중요한 판례다. 기존 주주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그 주식소각 대가를 배우자를 통해 다시 원 주주에게 훌러 들어간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여전히 기존 거래를 부인하고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세금 회피 목적이 외에 다른 사업적·경제적 목적이 전혀 없었다면 여전히 실질에 따라 과세당할 위험은 있다고 할 것이다.**

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 (2) 시사점

본 판결은 최근 몇 년 동안 절세방법으로 활용되다가 국세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여 합법성 논란이 일었던 '증여' 및 '이익소각'을 활용한 방안에 대해 마침내 대법원에서 적법한 것으로 최종 판결이 난 것에 의미가 있다. 즉, C(수증자)가 배우자증여 공제 제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았고, 주식을 B사에 양도한 C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소득세도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의제배당소득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익소각이란 법인의 대주주인 대표이사가 급여, 상여금, 배당 등의 방법으로 보상받을 경우 과다한 세금을 부담하는데 반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회사의 자기주식 매입 및 이익소각을 통해 세금 부담 없이 회사의 잉여금을 대주주가 가져갈 수 있



는 획기적 방법으로 제안된 절세플랜이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주식을 소각할 때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 주주인 대표이사가 자신의 주식 중 6억원 정도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에 따른 세금은 없다.
- 증여받은 배우자는 주식을 회사에 자사주로 매각하고 회사는 이를 소각한다.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이 경우 증여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해 차익이 없으므로 소득세가 없다.
- 결국 6억원의 회사 자금을 세금 부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것이다.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아 자본금이 감소하는 ‘감자’보다 더 유리한 방법일 수 있다. 만약 주주가 대표이사와 자녀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주식을 소각한 만큼 자녀의 지분율은 높아지므로 승계의 효과도 발생하는 이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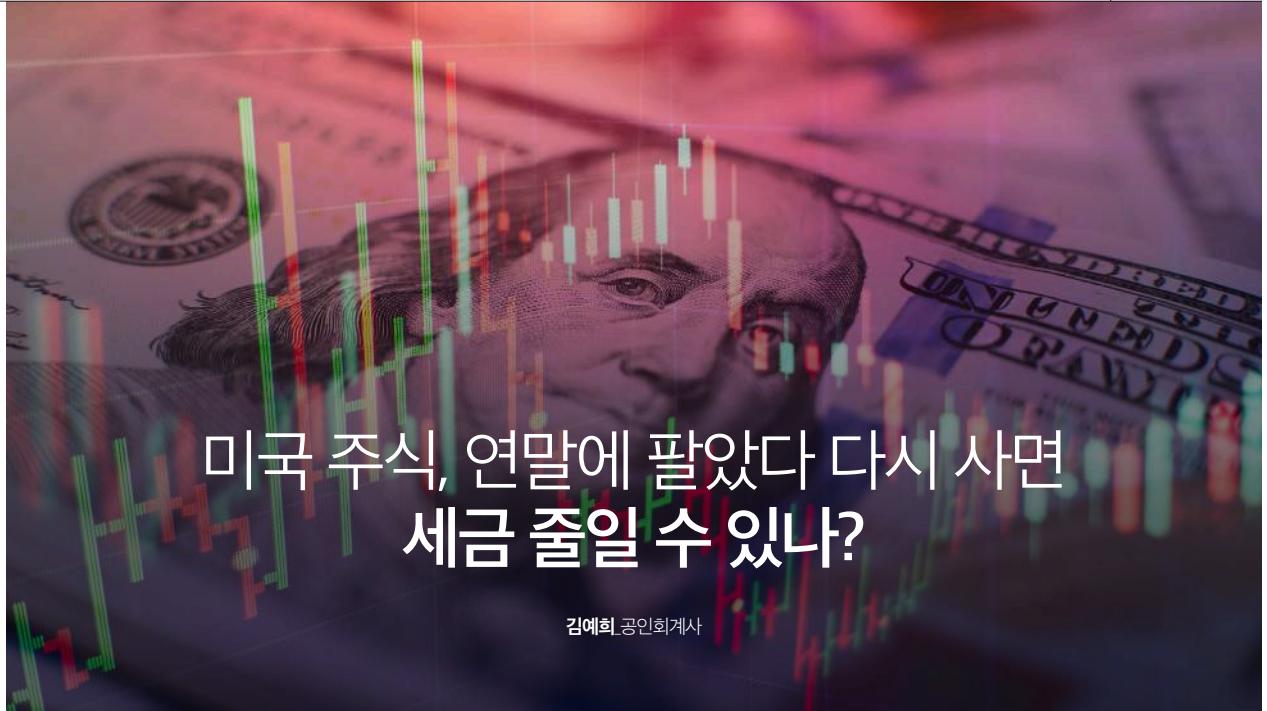
이러한 장점을 때문에 많은 대주주들이 자기주식 취득 후 이익소각을 했는데 2022년에 국세청에서 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사실 다른 방법으로 6억원이란 돈을 회사에서 인출했다면 상당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겠지만 이익소각 방법으로 인해 막대한 세금이 걷히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를 원래 대표이사 주주가 주식 6억원을 회사에 팔고 그 돈을 배우자에게 주었다면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조세회피를 위해 순서를 바꾼 가장거래로 본 것이다. 이에 실질과세원칙상 원고가 회사에 쟁점 주식을 직접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당사자는 국세청이 너무 자의적으로 법을 확대해석했다며 불복했고, 결국 조세심판원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해 1, 2심 법원은 ‘납세자인 원고가 자기주식 이익소각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법상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고, 배우자

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단지 배우자 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주식 증여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부당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국세기본법상 거래의 실질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 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과세관청과 납세자와의 다툼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중요한 판례다. 이 판례를 통해 과세관청은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며 배우자증여를 통한 이익소각에 대해 무작정 과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익소각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기주식 대기가 누구에게 귀속되느냐는 것이다. 기존 주주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그 주식 소각 대가를 배우자를 통해 다시 원 주주에게 흘러 들어간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여전히 기존 거래를 부인하고 과세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세금 회피 목적이 외에 다른 사업적·경제적 목적이 전혀 없었다면 여전히 실질에 따라 과세당할 위험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2024년 9월 2일자로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즉,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을 추가하는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의안번호 제2203518호) 해 놓은 상태다. 관련 세법이 개정된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가 치유되는 점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 I\_들어가며

나름 투자 전문가라고 불릴만한 친구에게 물어봤다.

“미국 주식을 세금 때문에 팔았다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공인회계사 저널에 기고해 볼까하는데 어때?”

“미국 주식을 왜 팔았다 다시 사?”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매매차익을 연마다 나누어 실현하려고 물론 팔았다 다시 그 가격에 못 살 리스크도 감수해야 하지만….”

“미국 주식은 세금 내야 해?”

“……”

현업에서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 전문가의 저주가 무슨 말인지 실감하는 순간이 많다. 앞서 언급한 투자 전문가란 그 친구는 사실 ‘회계사’다. 회계사에게 조차 수시로 바뀌는 세금이란 어려운 주제다. 세무 업무를 해본 적이 없다면 더욱 그렇다.

이번 호는 주식의 과세체계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부터 정리해 보고자 한다. 주식의 과세를 논할 때 주의할 점은 주식을 직접 투자할 때와 펀드를 통해 투자할 때(ETF 포함)는 적용되는 세금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호의 주제는 상장주식을 직접 투자했을 때 세금에 대한 이야기다.

## II\_배당소득과 세금

- 해외 고배당주에 투자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챙기자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상관없이 보유 주식에 대해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것이 불투명해졌지만, 만약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회사의 잉여금으로 배분하는 배당금 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내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 이자와 배당은 합산해서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된다.

해외주식의 경우, 현지에서 원천징수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잘 챙겨야 한다. 실무



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미국 고배당주에 투자해 배당소득은 2,000만원 이 넘었지만, 주가가 떨어져 실현 손실이 3,000만원 생겼다면 그래도 세금을 내야 할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순손실이 1,000만 원이지만 주식 매매로 인한 손실은 배당소득과 상계되지 않는다.

### III\_국내 상장 주식 매매차익

상장 주식 매매차익은 거의 모두가 알고 있듯 비과세다. 물론 소액주주들이 장내에서 매매할 경우에 대한 혜택이다. 소액주주라도 장외 거래하거나 상장 주식의 대주주가 된다면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 금액 기준이 종목당 10억에서 2024년부터 50억으로 상향되어 양도세를 걱정할 상황은 줄어들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이 50억을 넘거나 지분율이 1%(코스닥 2%, 코넥스 4%)이상인 경우가 대주주다.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판단한다. 주의할 사항은 이를 판단하는 기준일 및 양도소득세 신고일이다.

<표 1>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소득종류	구분	대주주 판정기준일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여권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일 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 을 청산 한 경우	예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일 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일 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간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023년 하반기(7~12월)에 상장 주식의 대주주가



과세대상이 되는 종목들의 손익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과세대상 주식(대주주인 주식)의 손익과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소액주주인 주식)의 손익은 합산되지 않는다. 소액주주인 주식으로 손해를 많이 봤어도 대주주인 주식의 양도소득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주식을 양도하여 차익을 얻었다면, 2024년 2월 29일 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대주주 금액 기준은 10억이었다.

2024년 상반기(1~6월) 주식 양도소득세는 2024년 9월 2일까지 신고기한이었는데, 이때부터 대주주 기준이 50억으로 상향되었다. 2024년 하반기 매매 기준, 대주주 판단은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므로 대부분 2023년 12월 31일이 될 것이다. 이날 보유 금액이 50억이 넘었다면, 2024년 양도로 인한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보유량을 연말에 줄일 경우, 보유가액은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T+2)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매매 체결일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니라고 여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가산세를 납부한 사례가 있었다. 2024년에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해도 대주주가 된다(소득세법 시행령 157조 참고).

과세대상이 되는 종목들의 손익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과세대상 주식(대주주인 주식)의 손익과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소액주주인 주식)의 손익은 합산되지 않는다. 소액주주인 주식으로 손해를 많이 봤어도 대주주인 주식의 양도소득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 IV\_해외 상장 주식 매매차익

'애플'이나 '엔비디아'와 같은 국외 주식을 한국 증권

사를 통해 직접 매매하는 경우(이하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세율은 주민세 포함 22% 적용되며, 기본공제 250만원이 차감되어 과세표준이 구해진다.

<표 2> 국외 주식 등(소득세법 §104①⑫)

구분	국외주식 등		기타자산 (특정주식 등)
	중소기업 주식 등	그 밖의 주식 등	
세울	10%	20%	누진세율(6~45%)

※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의 매매 손익은 모두 통산된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가 없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중에 신고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의 매매 손익은 해외주식의 매매 손익과 통산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이란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 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 주식등 및 비상장 주식 등을 의미한다.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을 의미한다. 이때 세율이 다른 양도손익이 있는 경우 손익통산의 순서를 유의해야 한다.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차감하고 남은 차손을 세율이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손익을 통산한다.

## V\_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 (1) 매도 후 재매수

취득일과 상관없이 올해 매도해서 이익을 얻었다면, 올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분할매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A 주식의 평가이익이 오늘자 기준 400만원인데, 향후 3년 이상 계속 보유해서 매매차익을 1,000만원 기대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마침 또 다

취득일과 상관없이 올해 매도해서 이익을 얻었다면, 올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분할매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른 해외주식 B는 취득가 대비 200만원 손실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A와 B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재매수하는 경우, 2024년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200만원으로 기본공제 250만원을 고려 시 양도 소득세는 없다. 물론 매도 후 같은 가격에 재매수하지 못할 리스크와 증권사 수수료 및 매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는 감수해야 한다. 또한, 2024년 12월 31일 전에 결제가 완료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 (2) 배우자 증여 후 매도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의 증여가 증여세 없이 가능하다. 이 점을 이용해서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있어 배우자 증여 후 10년 내 양도 시 증여 전 취득기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반면, 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도 이월과세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다. 그러나 부동산과 달리 증여 후 1년만 이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투자자라면 여전히 배우자 증여 후 양도를 고민해 볼 수 있다.

## VI\_마치며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법 규정이 최근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내 자산관리에 있어 세법의 이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①



## 스포트라이트

※ 본 내용은 지난 9~11월 사이에 진행한 '우리나라 주요산업 리스크 온라인 세미나'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저축은행 산업 전망

이정현 NICE신용평가 수석연구원

### I\_들어가며

2023년에 이어 2024년 상반기에도 저축은행업권의 부진한 실적과 자산건전성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 개인신용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화도 일부 영향을 미치기는 했으나,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대출의 부실화와 이와 관련한 대손비용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에 대한 부정적 신용등급 변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4년 하반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저축은행에 불리한 업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기고를 통해 저축은행 산업의 현황을 설명하고, 현재의 부진한 영업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동산 PF의 실적과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저축은행에 대한 당사의 신용평가 체계 및 등급 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한다.

### II\_저축은행 산업 현황

부동산 시장과 내수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리스크관리 차원에서의 대출 심사 강화와 신규영업 위축이 지속되면서 2023년 이후 영업자산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상품별로는 부동산 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차주별로는 개인 사업자 및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여신 규모가 감소하였다. 가계부문의 여신 규모가 증가한 점을 볼 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개인신용대출을 통해 자산감소세에 대응하고 있으나, 영업자산 축소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2023년과 비교하여 순이자 마진이 회복되고 있는 점은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대출의 건전성 저하로 인해 대손비용 부담이 커짐에 따라 2023년에 이어 2024년 상반기에도 대구모당기순손실이 지속되고 적자 규모가 확대된 모습이

다. 2024년 상반기 전체 저축은행업권의 대손상각비는 2조 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천 5백억원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저축은행의 당기순손실은 3,864억원으로 순손실 규모도 확대되었다.

저축은행의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4년 들어 더욱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관련 충당금 적립 수준도 미흡한 수준이다. 보유자산의 부실화 위험에 대한 최종적인 손실흡수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BIS 자본비율은 적자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2023년 말 14.4%에서 2024년 6월 말 15.0%로 오히려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순손실 규모를 상회하는 유상증자 실시, 여신 규모 감소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감소 효과 때문이다.

한편, 2024년 들어 저축은행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산건전성 저하의 주요 원인은 주로 부동산 PF 대출의 건전성 저하에 기인한다. 고정이하자산에서 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가운데, 기업 부문 고정이하자산 내에서 부동산 PF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2024년 상반기 고정이하여신 증가액에서 부동산 PF 대출이 약 70%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부동산 PF 대출의 건전성 저하가 전체 건전성 저하를 견인하였으며, 이는 대손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저축은행의 영업실적 저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 **III\_ 저축은행 부동산PF 현황 및 단기 전망**

#### **(1) 현황**

저축은행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및 부실 정리 노력에 힘입어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PF 규모의 감소는 긍정적이나, 잔여 익스포저 중에서 사업성이 열위한 사업장의 비중이 커지고 있

어, 자산건전성은 빠르게 저하되고 있다. 2024년 6월 말 저축은행업권의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9.7%로 2023년 말 10.9%에 비해 크게 올랐으며, 절대적인 수준도 매우 미흡하다.

상대적으로 열위한 자본력과 부동산 PF 대출 관련 규제로 인해 양질의 대규모 사업 접근이 제한적인 것은 저축은행 부동산 PF의 근본적인 한계다. 소규모 사업장 특성상 공사비 증액 리스크에 보다 크게 노출되며, 준공 위험 측면에서는 여타 제2금융업권 대비 시공 순위나 신용등급 측면에서 열위한 시공사가 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시공사 부실화로 인한 사업 차질 가능성도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본 PF보다 사업 초기의 리스크가 큰 브릿지론 비중이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의 60% 수준으로 20%대인 증권이나, 30%대인 캐피탈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저축은행 간 컨소시엄을 통해 단일순위로 취급한 사업장이 부동산 PF 내 60% 이상을 차지하며, 중순위 및 후순위 비중이 여타 업권 대비 낮게 나타난다. 다만, 단일순위 사업장의 LTV(Loan To Value) 수준이 일반적인 선순위 사업장 대비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환 순위 구성에 있어서 저축은행 업권이 타 금융업권 대비 우위에 있다고 보기是很 어렵다. 용도 및 소재지별 구성의 경우, 부동산 PF 내 수도권 소재 비중은 약 70%, 주거시설 비중은 약 50%로 높은 편이다. 다만, 저축은행은 수도권의 아파트보다는 수요 회복이 부진한 지방 아파트 및 그 외 비주거 시설 비중이 높아 여타 업권 대비 부동산 경기 및 가격 변동 위험이 크다.

한편, 2024년 2분기부터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 중 하나로 강화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적용하였다. 기존 사업성 평가 기준 '양호', '보통', '악화 우려'의 3단계에서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의 4단계로 세분화하였으며, 본 PF 외에 브릿지성 토지담보대출로 평가대상도 확대하였다. 평가 결과 사업성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거나,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의’ 혹은 ‘부실 우려’로 분류하여 재구조화, 매각 및 상각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였다.

당사가 신용등급을 보유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강화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적용과 상각 및 제각 등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가 부동산 PF 관련 손실을 인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 매각 관련해서는 처분이익이 인식되었다. 매각규모 기준 저축은행중앙회 펀드에 매각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나, 처분이익 기준으로는 경·공매의 이익규모 및 이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공매의 경우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함에도 가장 높은 처분 이익률을 시현한 점을 감안하면, 충당금 적립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약호한 PF 사업장부터 매각된 것으로 보인다.

## (2) 단기 전망

2024년 상반기 부동산 PF 관련 저축은행의 손실 인식 규모는 연초 시장의 우려 대비 제한적인 수준이었다. 다만, 이는 부실 사업장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이 본격화되지는 않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약호한 PF 사업장을 충당금을 반영한 장부가액 이상으로 매각하면서 관련 이익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추가 손실 인식은 2025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첫 번째, 여타 업권 대비 부동산 PF 익스포저에서 차지하는 ‘유의 및 부실 우려’ 비중이 높고, 관련 부실 위험도 높은 수준이다. 2024년 8월 금융당국

이 발표한 ‘부동산 PF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증권 및 캐피탈 업권의 부동산 PF 내 ‘유의 및 부실 우려’로 분류된 비중은 각각 12.5%, 8.7%였으나, 저축은행은 27.7%로 제2금융권의 타 업권 대비 높았다. 이와 같이, 저축은행 부동산 PF의 질적 특성이 열위한 가운데, 매각 대상 PF 사업장 규모도 더 크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부터 ‘유의 및 부실 우려’ 사업장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이 진행될수록 사업성이 열위한 사업장이 매각 비중이 높아지면서, 매각 과정에서 매각 손실이 발생하고 그 규모가 증가할 것이다.

두 번째, ‘양호 및 보통’으로 평가된 PF 사업장의 부진한 분양률과 2025년 상반기까지 집중된 만기 구조, 2회 이상 만기 연장된 대출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양호 및 보통’으로 평가되었던 대출 중 일부가 ‘유의’ 혹은 ‘부실 우려’로 재평가되면서 대손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경우, 손익분기점 분양률은 대부분 60% 내외 수준으로 결정되나 실제 분양률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양호 및 보통’으로 평가된 부동산 PF 익스포저의 2회 이상 만기 연장된 대출 비중이 약 28% 수준으로 높으며, 2025년 상반기 만기도래 대출 비중이 82%로 대부분의 만기가 2025년 상반기 내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의 및 부실 우려’로 평가된 부동산PF 사업장의 부실 위험이 여타 업권보다 높은 가운데, 부동산 PF 채권 매각이 본격화되면서 매각에 따른 손실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2025년 상반기까지 만기도래하는 부동산 PF 대출의 상황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2회 이상 만기 연장된 대출의 추가 만기 연장이 이루어지면서 ‘양호 및 보통’으로 평가되었던 대출이 ‘유의 혹은 부실 우려’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부동산 PF 대출만기가 집중되어 있는 2025년 상반기까지 매각 및 재구조화 대상 사업장이 늘고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미흡한 사업장 비중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PF 관련 추가 손실 인식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 **IV\_ 저축은행 신용등급 체계 및 유효등급 현황**

저축은행에 대한 당사의 평가방법론인 저축은행 법론에서는 피평가 회사의 사업위험과 재무위험을 정량·정성 요인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여기에 미래 전망 및 기타고려요소를 감안하여 자체 신용등급을 산출한다. 자체 신용등급이 산출되면 계열 요인을 반영하여 최종 신용등급을 도출하는 구조다. 계열과의 신용 의존성이란 계열사 간 비경상적인 재무적 지원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그 정도를 감안하여 자체 신용도에서 + 또는 - notch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신용등급 및 등급 전망 하향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대상도 증가하였다. 당사가 유효등급을 보유한 저축은행 기준으로 2023년 3개 사, 2024년 9개 사의 신용등급 또는 등급 전망 하향이 이루어졌다. 등급 조정 이유는 대체로 대규모 적자 기록, 자산건전성 저하 추세 지속이다. 업권 전체적으로 보면 2024년 9월 말 기준 공시된 신용등급 기준으로 총 28개 저축은행이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2개 사의 신용등급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부여되어 있어, 여전히 신용등급 하향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28개 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은 A0부터 BBB-까지 분포되어 있다. 가장 높은 A0 등급의 경우 총 8개 사다. SBI 및 한국투자저축은행을 제외하고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부정적' 등급 전망이 부여된 저축은행은 KB 및 BNK 저축은

**▶ 신용등급을 보유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강화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 적용과 상각 및 제각 등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가 부동산 PF 관련 손실을 인식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반면, 매각 관련해서는 처분이익이 인식되었다. 매각규모 기준 저축은행중앙회 펀드에 매각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나, 처분이익 기준으로는 경·공매의 이익규모 및 이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행이다. A-등급의 경우 5개 사이며, 주로 대기업계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고려, 키움, 대신 저축은행이 '부정적' 등급 전망이 부여되었다. BBB+등급 저축은행은 4개 사이며, 다율, 모아, 예가람 저축은행이 '부정적' 등급 전망이 부여되었다. BBB0등급 저축은행은 8개 사이며, 더케이, 애큐온, JT친애 저축은행이 '부정적' 등급 전망이 부여되었다. BBB-등급 저축은행은 3개 사이며, JT저축은행이 '부정적' 등급 전망이 부여되었다.

#### **V\_ 마치며**

시중금리의 하락과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현재까지는 질서 있는 부실정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아직 낙관하기는 어렵다. 최소 2025년 상반기 까지 부실정리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손실인식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이라 단기간 내 저축은행의 실적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다.

당사는 BIS자본비율 11% 하회, 고정이하여신비율 7% 상회, 적자전환 저축은행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용등급에 반영하고 있다. 향후에도 부동산 PF 익스포저 관련 위험 및 부실정리 진행 경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이러한 평가지침 하에서 저축은행 신용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①



## 침체의 높에 빠진 건설산업 진단

권준성\_NICE신용평가 책임연구원

### I\_들어가며

국내 건설업계는 현재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고물가·미분양·PF부실’의 삼중고로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484개에 달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수의 중소·중견기업은 자금 여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2024년 10월에 있었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주택 거래량 회복 조짐 등의 상황으로 미루어 건설업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어 업황에 대한 관점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주요 지표를 통해 건설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업계 내 최근 이슈를 짚어보고자 한다. 아울러, 건설사에 대한 당사의 신용평가 체계 및 등급 현황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 II\_산업현황

#### (1) 건설

건설 수주, 착공 등 건설경기의 주요 선행지표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를 통해 건설업황 부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건설 수주 규모는 2022년 약 248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추세 전환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2023년과 2024년 상반기 각각 -16.8%, -6.3%의 역성장을 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부문의 건축공종을 중심으로 이러한 수주감소 현상이 나타난 반면, 공공부문은 SOC 예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택 착공 물량은 202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2022~2023년 연평균 35%대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이 상승한 가운데, 부동산

PF에 대한 투자위축과 급등한 공사비 관련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분쟁 등에 따른 사업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선행지표와 건설투자의 시차 관계를 고려할 때, 2년간의 수주 및 착공 물량 저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규 건설투자가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 착공 사업장들 중 후행 공정 비중이 늘고 있는 점은 2024년 하반기부터 건설사의 매출 기반 약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건설사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고물가 영향이 이미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1년~2022년 급등한 이후 현재 상승률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상승 추세다. 건설투자의 인력난이 누적되고, 전력비 부담 등으로 시멘트 사의 가격 인하 여력이 제한되면서 공사원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수년간 계약 및 착공된 사업장의 수주단가가 현재 투입원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당분간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저조한 상태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 (2) 부동산

국내 건설사의 핵심사업 영역인 주택시장은 침체 장기화 국면에서 지역별 양극화의 양상을 뚜렷하게 보인다. 전국 주택 미분양 물량은 분양가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 영향 등으로 2024년 8월 기준 6.8만 호에 육박하고 있다. 한편 초기 분양률은 2024년 3분기 54.5%를 기록하였으며,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의 충격으로 49.5%를 기록했던 2023년 1분기 이후 최저치에 해당한다. 특히 7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수도권과 달리, 광역시 및 기타 지방의 경우 50%를 하회하였다.

이처럼 분양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미분양을 우려하며 2023년 아파트 공급 물량을 대폭 축소하였다. 동 결과로 2023년 아파트

**건설업의 인력난이 누적되고, 전력비 부담 등으로 시멘트 사의 가격 인하 여력이 제한되면서 공사원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수년간 계약 및 착공된 사업장의 수주단가가 현재 투입원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당분간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저조한 상태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물량은 10년(2013년~2022년) 장기 평균인 33.4만호에 크게 미달하는 21.2만 호를 기록하였다. 다만, 금융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선별적 분양과 이로 인한 사업 지연은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에게 부담이므로, 2024년 이후 기존의 이연된 물량이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신규로 공급되는 물량 중에는 상대적으로 열위한 사업성을 보유한 사업장 비중이 이전 대비 증가하고, 이러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국의 미분양 적체 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2025년 입주 물량이 수도권 및 광역시의 경우 20년 장기 평균치의 각각 80%, 63%에 해당하는 반면, 지방의 경우에는 100%에 달해 상대적으로 과중하다. 이에 수도권 대비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부족한 지방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지표를 종합하였을 때 주택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점은 공통적인 현상이나, 정도의 차이가 지역별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택시장 내 양극화 양상은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 III\_최근 주요 이슈

### (1) 부동산 PF

2024년 5월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기존 브릿지론 및 본 PF에 더



해 토지담보대출, 유동화증권 채무보증 등을 추가하여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등급을 기준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새로운 평가 방식에 따라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부실 우려' 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각 및 경·공매를 통한 매각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PF 사업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관행적인 만기 연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새로운 평가 기준을 토대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사후관리 의지가 더해지며 향후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8월에는 상기 개선된 사업성 평가방안에 따른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융권 PF대출 및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꾸준히 올랐으며, 유의 및 부실 우려 사업장 관련 PF 규모는 전체의 약 9.7%인 21조원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건설사의 경우 수도권 등 비교적 우수한 입지 기반의 사업장 비중이 높고, 사전에 PF 차입금 만기를 장기화함에 따라, 이번 PF 구조조정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존 사업장들에 대한 분기별 상시 평가가 진행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 및 장기 미착공 사업장의 PF 우발채무 현실화 위험은 지속될 전망이다.

## (2) 책임준공

부동산 호황기 수면 아래 잠겨있던 책임준공 이슈는 업황 침체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요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과거에는 건설사가 준공 의무를 다하면 의무가 해제되는 책임준공 약정에 대해 큰 리스크로 보지 않는 경향이었다. 다만 최근에는 착공 지연, 공사중단 등에 따라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해 채무인수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책임준공 약정은 연대보증이나 자금 보증과 같은

PF 우발채무 대비 리스크가 낮다고 평가되나, 규모 측면에서 자기자본을 크게 상회하는 점이 부담 요인이다.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 양호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소수의 채무인수 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반면, 중소형 건설사들은 단위가 수 백 억원에 달하는 채무인수 1건으로도 부도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대주단의 보수적 기조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계획 스케줄과 실제 공정률과의 차이가 클 경우 책임준공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 (3) 시공 리스크

과도한 원가절감이나 무리한 공기 단축 등에 따른 부실시공 사례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하자 분쟁 사건 처리 건수는 예년 대비 약 20% 늘었다. 하자 건수가 많은 건설사의 경우 관급 공사 입찰 참여가 금지되거나 영업정지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행정처분을 차치하더라도 브랜드 이미지 타격으로 인해 수주경쟁력이 약화되며, 이는 곧 저가 입찰과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품질 이슈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인식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공 품질 저하는 직접적인 재무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IV. 건설회사 신용평가

건설회사에 대한 당사의 평가방법론에서는 피평가 회사의 사업위험과 재무위험을 정량·정성 요인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여기에 미래 전망 및 기타 고려요소, 계열 요인을 따져 최종 신용등급을 산출한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건설회사 평가 시 평가 요소 중 사업경쟁 역량과 재무구조 및 자산

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성으로 고려된다. 이는 건설업종이 기본적으로 이익·자금수지 변동이 높아 동일 등급의 여타 업종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사업 및 재무적 여력이 요구됨에 따른 것이다.

건설회사들의 신용등급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이후 주택사업 호황기를 맞아 많은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되었다. 일부 건설사들은 이 과정에서 축적한 재무적 완충력을 통해 현재에도 신용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익성과 현금창출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앞서 살펴본 PF 우발채무, 부실시공 등 특정 이슈들로 인해 신용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신용등급 또는 전망 강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에도 열위한 사업성의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높고, 유동성 대응력이 부족한 건설사의 신용위험이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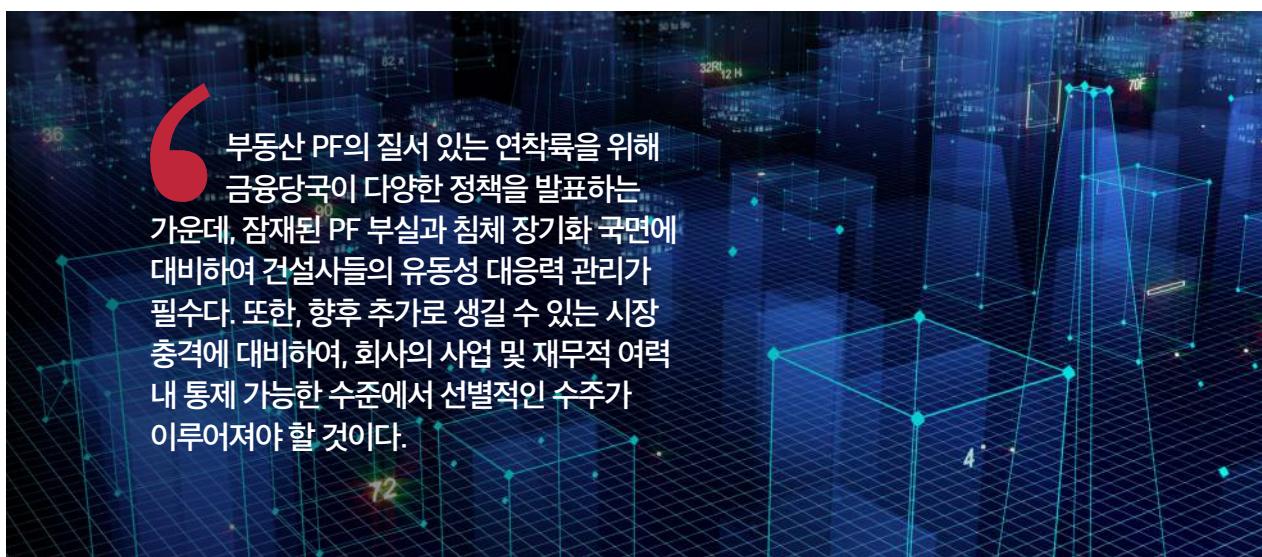
### V\_마치며

역사적으로 건설경기 침체기에서 부동산 PF의 잠재부실은 매번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지목되었다. 부동산 호황기에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과

도한 PF 익스포저를 보유하게 된 건설사들에게는 현재 상황이 마치 살얼음 위를 걷는 형국일 것이다.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금융당국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잠재된 PF 부실과 침체 장기화 국면에 대비하여 건설사들의 유동성 대응력 관리가 필수다. 또한, 향후 추가로 생길 수 있는 시장 충격에 대비하여, 회사의 사업 및 재무적 여력 내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선별적인 수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수한 분양 실적이 뒷받침되던 시기에는 건설사의 레버리지가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하지만 주택경기 불확실성이 상승하면서 이는 높은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당사는 향후 건설업 대내외 사업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분양시장 안정화 여부, 부동산 PF 자금조달 상황 등 업계 내 전반의 시황을 중심으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당사가 유효 등급을 부여 중인 건설회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 부담 변동 폭이 예상 수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검토 후 필요시 신용등급에 적시 반영할 계획이다. ◉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금융당국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잠재된 PF 부실과 침체 장기화 국면에  
대비하여 건설사들의 유동성 대응력 관리가  
필수다. 또한, 향후 추가로 생길 수 있는 시장  
충격에 대비하여, 회사의 사업 및 재무적 여력  
내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선별적인 수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지급명령신청 - 감사수수료 미지급 시 법적 조치<sup>①</sup>

최지영 법무법인 정안 변호사

※ 이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 I\_질의의 요지

### 가. 사실관계

- A회계법인은 甲회사와 2022, 2023 사업연도에 대하여 각각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업무를 종료하였음
- 2023 사업연도의 경우, 2023년 2월 중으로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으므로, 앞선 2022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수수료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
- 甲회사는 2024년 11월 현재까지도 2022, 2023 사업연도의 감사수수료를 미지급 중임

### 나. 질의사항

- A회계법인이 甲회사에게 감사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 II\_관련 규정

### ■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67조(일방적 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채권자가 제4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

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입류의 목적) ①가입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등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불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입류를 할 수 있다.

## III\_검토의견

### 다. 내용증명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정식으로 법적 절차에 나아가기에 앞서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내용 및 불이행 시 법적 절차에 나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먼저 송부할 수 있다. 내용증명만 잘 작성하여도 채무자로 하여금 임의로 변제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발송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자체로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계속하여 변제 하지 않는

**주1\_** 본 기고문은 필자들이 한국공인회계사회 소속 회원에게 자문을 제공한 것 중, 다른 회원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검토내용을 선별하여 수정한 것으로 원래 질의내용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변형하였음

다면 결국 정식의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 라.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지급명령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① 서면심리로 이루어지므로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 ② 지급명령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 ③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액과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 ④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처럼 지급명령은 간이한 절차로서 장점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다투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채무자가 다투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명령보다는 통상의 소송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통상의 소송절차에서는 사실조회를 활용해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급명령에서는 사실조회를 할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기에 앞서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지급명령은 활용하기 어렵다. 다만, 인적사항을 몰라서 생기는 문제는 주로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발생하며, 채무자가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법

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큰 어려움은 없다.

그렇다면 질의와 같은 감사수수료의 경우, ①법인이 채무자이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토대로 법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②외부감사계약이 체결되어 수수료 약정을 한 사실이 계약서로 쉽게 확인된다. ③계약에 따른 감사업무가 종료되었고 그에 따라 수수료 지급채무가 변제기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특별히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바,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 마.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보전조치를 해두는 의미가 있고, 한편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사실상 부담을 느껴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다.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담보를 조건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 질의에서도, 甲회사의 재무상태나 현황에 비추어 지급명령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사전에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둘 필요가 있다. 가압류는 지급명령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①



# 원천세 신고 대리 업무에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검토<sup>①</sup>

박지인\_법무법인 정안 변호사

※ 이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 I\_ 배경

B회계법인은 고객사 A와 세무신고대리에 관한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A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제3자에게 지급하는 사업·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신고(소속 근로자 연말정산 포함)를 대리하여 수행함

## II\_ 질의 내용

- 상기 원천징수 신고대리 업무 수행을 위해 A사가 B회계법인에 소속 근로자 및 사업·기타소득 수령자의 개인 정보(예: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 및 해당 이슈 해소를 위해 A사가 취해야 할 행위(질의 사항 ①)
- 정보를 제공받는 B회계법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질의 사항 ②)

## III\_ 검토내용

### 가.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고 정한다. 가목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나목에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다목에서는 이른바 가명 정보를 정하고 있다.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호 가목에서는

**주1\_** 본 기고문은 필자들이 한국공인회계사회 소속 회원에게 자문을 제공한 것 중, 다른 회원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검토내용을 선별하여 수정한 것으로 원래 질의내용에서 사실관계를 다소 변형하였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자택 주소 역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로써(법 제24조) 그 처리가 엄격하게 제한되며,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법 제24조의 2).

한편, A사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바(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의 적법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나. 개인정보 수집(제15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며 제1호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제4호에서는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미리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제2항).

나아가 제4호와 관련하여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는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주소,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를 '계약이행'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로 예시하고 있다.

생각건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지급, 계약서에 명시된 복지제공 등 근로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법 제4조 제1호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로써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점 및 근로계약 관계에서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직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사업·기타소득 수령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하는 행위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4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겠으나, 미리 동조 제1호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보수적인 업무처리라고 하겠다.

#### 다. 개인정보의 제공(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제17조는 수집목적 범위 내의 제공을 규정하며, 정보주체에게 이용·제공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범위나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용·제공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18조가 적용됨).



한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를 따라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능하다. 제2호에서는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하거나 제15조 제4호(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여기서 제외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는 정보주체가 제공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미리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②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⑤ 동의 거부권이 존재하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알려야 할 사항 중 어느 하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변경 사실을 다시 알리고 동의

를 받아야 한다(동조 제2항).

사안의 경우 A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의 동의를 받고 소속 근로자 및 사업·기타소득 수령자의 개인정보를 B회계법인에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규정(동법 제71조 제1호) 및 과징금 부과규정도 존재한다(동법 제64조의 2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동의를 반드시 받을 것을 권고한다(질의 사항 ①에 대한 답변).

#### 라. B회계법인의 유의사항

우선, 상기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민감정보(제23조), 고유식별정보(제24조), 주민등록번호(제24조의2)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유의하고, 그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아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였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❶

**사안의 경우 A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의 동의를 받고 소속 근로자 및 사업·기타소득 수령자의 개인정보를 B회계법인에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규정(동법 제71조 제1호) 및 과징금 부과규정도 존재한다(동법 제64조의 2 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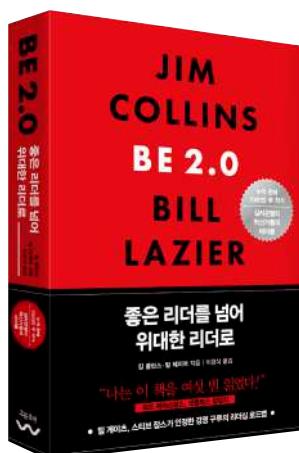




『좋은 리더를 넘어 위대한 리더로』  
“처음부터 89페이지까지 달달 외워라”

여경미\_포브스코리아 기자

짐 콜린스 빌 레지어 지음  
흐름출판 역음  
26000원



스티브 잡스가 애플대학을 설립할 때,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의 경영비전을 정리할 때, 세릴 샌드버그가 페이스북 중흥기를 이끌 때, 리드 헤이스팅스가 넷플릭스를 창업할 때 공통점은? 바로 이 CEO들에게 짐 콜린스라는 영감을 준 조언자가 있었다는 점이다.

세계적 명성의 경영 구루 짐 콜린스는 현재를 “기업 환경 아이디어는 넘쳐나지만, 성장이 정체된 시대”라고 정의한다. 그의 설명처럼 최근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강점으로 창업한 벤처기업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소수정예 멤버들만으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훌륭한 리더가 있는 한 기업은 결국 두각을 나타내고 만다. 이른바 기술, 제품, 아이디어만으로는 차별화할 수 없고, 결국 리더의 자질이 기업의 성패를 대변하는 시대다.

애플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아이폰, 에어팟 등으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지만, 1997년만 해도 애플이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독립적인 회사로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해냈다. 그는 사람을 신뢰하는 유형이었기에 ‘수많은 조력자를 거느린 천



재' 유형의 리더였다. 가령, 신뢰하는 직원이 자리에 걸맞은 A급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개인 역량을 개발하든, 아니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든 둘 중 하나다. 이 때 스티브 잡스는 전자인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사람의 성장 역량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돋는 타입 이었다. 책『좋은 리더를 넘어 위대한 리더로』에서 저자 짐 콜린스는 “스티브 잡스는 이제 세상에 없지만, 그가 배출한 인재들로 애플엔 그를 대신할 리더들이 차고 넘친다”고 했다.

우리나라에도 무장한 스타트업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 기업들에 대한 투자리시로 창업한지 1~2년만에 직원 100여 명을 거느리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 스타트업 기업들의 최고령자는 마흔이 채 되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다.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 번도 타기업 문화를 경험해보지 못한 조직원들이 모여 바람직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럴 때 짐 콜린스는 해결책이 있다고 말한다. 바로 리더십이다.

### 좋은 리더도, 위대한 리더도 결국 ‘사람’

짐 콜린스와 그의 스승 빌 레지어는 위대한 기업을 만들려면 ‘단계5의 리더십 계층도’에 따라 리더 자신은 물론, 자신이 속한 팀이 그에 적합한 리더십을 갖출 것을 조언한다. 단계1은 자기가 가진 재능 등을 통해 생산적인 기여를 하는 ‘매우 유능한 개인’, 단계2는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자신의 역량을 투입하는 ‘열심히 기여하는 팀 구성원’, 단계3은 정해진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유능한 관리자’, 단계4는 높은 성과 기준을 자극하는 ‘효과적인 리더’, 단계5는 개인적인 차원의 겸손함과 전문가적 의지로 영속성을 추구하는 ‘임원’이다. 이렇듯 각각의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기업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학자이자 비즈니스·사회 분야 리더들의 경영 구루인 짐 콜린스가 가장 강조해온 것은 ‘사람’이다. 좋은 리더도, 위대한 리더도 ‘결국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건 짐 콜린스가 그의 스승인 빌 레지어와 함께 쓴 책『좋은 리더를 넘어 위대한 리더로』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책에는 ‘위대한 리더의 7가지 조건’, ‘비전, 리더의 시작과 끝’, ‘행운을 불러오는 마인드’, ‘위대한 기업으로 가는 지도’, ‘전략,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를 만드는 법’, ‘혁신 조건으로 거듭나기’, ‘전술적인 탁월함, 신은 리테일에 있다’ 등으로 용인술, 비전, 전략, 전술, 혁신과 관련한 내용이 총망라돼 있다. 이미 리더십 이론으로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짐 콜린스의 리더십 이론을 집대성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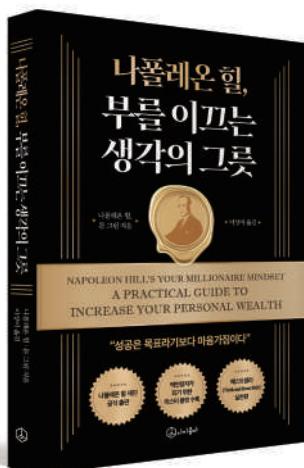
짐 콜린스와 함께 공저자로 참여한 빌 레지어는 스텐퍼드경영대학원에서 1967년부터 1993년까지 26년간 경영학과에서 기업가 정신을 가르쳤다. 짐 콜린스의 경영 철학에도 큰 영향을 준 ‘스승’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넷플릭스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는 “이 책을 여섯 번이나 읽었다”면서 “처음 89페이지까지는 달달 외우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만큼 기억해 둬야 할 내용들이 담겨있다는 뜻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지속적인 발전을 꿈꾸는 이들에게 짐 콜린스는 언제나 큰 영감을 준다”고 했고,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짐 콜린스의 리더십 이론이 지금의 아마존 리더십 모델이 됐다”고 말했다. 평소 짐 콜린스의 연구와 저서는 실리콘밸리 혁신가들 사이에서 중요한 지침서로 평가받는다. 애플,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처럼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꿈꾸고 있다면 이 책을 정독해볼 것을 권한다. ❶



『나폴레온 힐, 부를 이끄는 생각의 그릇』  
부자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성공 방정식

오유진\_중앙SUNDAY 기자

나폴레온 힐 돈 그린 지음  
아이콤마 퍼냄  
17,000원



'성공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이제 이런 광고문구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이다. 서점마다 제각기 성공 스토리를 담아낸 책들이 쏟아지는 요즘, 이 책 역시 그저 그런 성공담에 불과할 거라 짐작하고 고개를 저을 수도 있다. 하지만 50년간 2,000만 부 이상 팔린 성공 철학에 대한 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저자 나폴레온 힐은 신문사 기자로 일하며 약 20년간 500명이 넘는 자수성 가 부자들을 만나왔다. 단순 계산하면 20년동안 한 달에 두 명의 성공한 부자들을 꼬박꼬박 만난 셈이다. 그는 다양한 부자들을 인터뷰하며 연구한 성공 철학을 1928년 『성공의 법칙』으로 평냈다. 이후 미국 '성공학의 아버지'라는 명성을 얻게 됐고 반세기동안 그는 성공의 법칙을 공식화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책에는 그동안 그가 주장해 온 성공의 법칙을 현대 사회에 맞춰 다듬은 내용이 담겼다.

책이 제시하는 성공하는 방식은 결코 까다롭지 않다. 하지만 쉽다고 할 수도 없다. 저자는 "돈을 모으는 법칙은 너무나 간단해서 누구든지 따라 할 수 있다. 중요한 전제 조건은 원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당장의 고난을 감당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나 누구도 쉽게 달성하지 못한 법칙들을 알려준다.



우선, 성공에 다다르기 전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확고한 열망’을 품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단순히 성공하고 싶다는 작은 바람은 금물이다. 희망 사항은 어디까지나 희망에 머물 가능성이 커서다. 진정 성공하고 싶다면 우선 성공을 향한 타오르는 열망을 갖고, 그 열망을 확실한 목표로 구체화한 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행동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 가령, 많은 돈을 갖는 것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부를 쌓고 싶다는 열망과 더불어 부를 쌓을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와 행동을 계획해야 한다는 얘기다.

열망을 품었다면, 다음 스텝은 ‘스스로를 믿는 것’이다. 돈을 모으겠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면 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부터 하라는 뜻이다. 스스로도 나의 성장 가능성을 믿지 못한다면 결코 빙곤을 벗어날 수 없다. 저자는 자신이 만나온 수백 명의 부자들이 말한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믿음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이때 추천 방법으로 내 능력을 선언문처럼 작성해 시각화한 후 생각날 때마다 입으로 반복해 말함으로써 ‘확인’이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 믿음이 성공을 조금씩 더 앞당겨줄 방법이라고 강하게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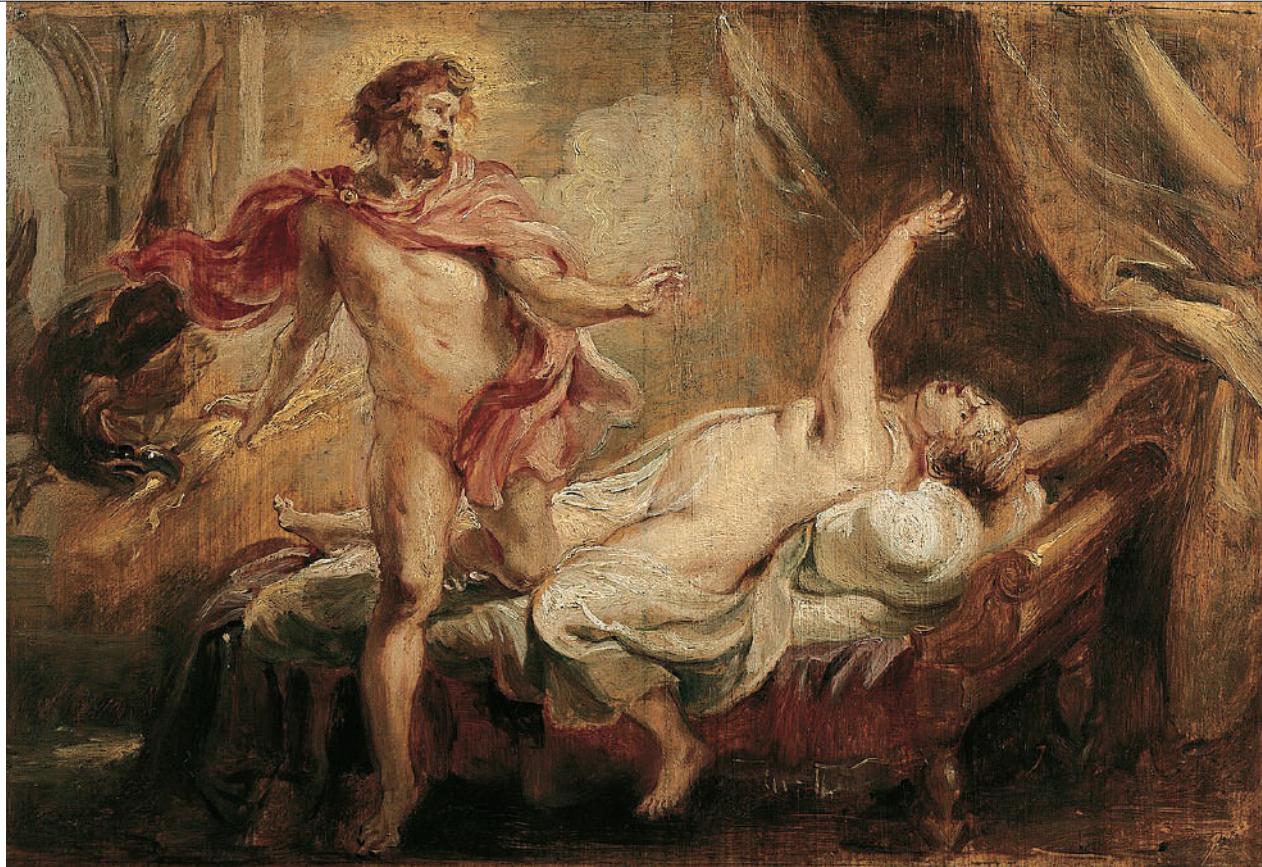
앞서 소개한 열망과 믿음이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졌다면, 이제는 실전이다. 두 가지 마음가짐을 성공과 연결 짓기 위해서는 7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절약, 일, 교육, 저축, 자산, 투자, 봉사… 이 7가지는 성공 공식을 완성하는 핵심이나 다름없다. 가령, 일과 관련해서는 ‘사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부업을 고려하라는 조언을 해준다. 지금의 일이 원하는 성공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 같아도 우선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하는 습관을 갖고, 할 수 있는 걸 남김 없이 다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이 곧 나의 자리를 더 좋은 곳으로 옮겨줄 것이고, 그게 곧 성공이 되리라는 맥락이다. 비단 저자뿐만

저자는 성공한 사람들은 당장의 이익에 집착하기보다 자신이 창출하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표일 순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책은 “다른 무엇보다 가장 큰 성취는 베풂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화다”라는 말로 끝을 맺는다.

아니라 우리 사회의 롤모델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던 가치관과도 일맥상통한다.

일반 성공학 책에선 보기 드물게 봉사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나폴레옹 힐은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당신이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핵심엔 봉사도 포함된다고 말한다. 남을 돋는 일이 마치 내가 가진 것을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려 성공을 낼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성공한 사람들은 당장의 이익에 집착하기보다 자신이 창출하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표일 순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책은 “다른 무엇보다 가장 큰 성취는 베풂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화다”라는 말로 끝을 맺는다.

성공의 법칙은 누구나 알지만 성공한 사람이 적다는 건 그만큼 실천하는 사람이 극소수이기 때문은 아닐까. 연말은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엔 다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기다. 성공 빅데이터 집약체인 이 책을 믿고 일상에 변화를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독할 시간이 없다면, 각 장의 끝마다 요약된 주요 내용만 제대로 체화해도 분명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달라져 있을 것이다. ①



풀 루벤스 <세Mel레의 죽음> 1637

## 약속 - 과거의 나와 당신에 대한 믿음

김소울 미술치료학 박사 / 플로리다마음연구소 대표

스코틀랜드 시인 재키 케이(Jackie Kay)는 '약속'이란 시에서 "약속들은 부서지고, 지켜지라고 만들어졌다"고 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다른 일 년을 맞이하는 연말 연초. 예술 작품과 함께 지난 약속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약속을 다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많은 사람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민감하게 사용한다. 곁에 두고 싶지 않은 사람의 유형을 조사했을 때, 가장 높은 순위가 '거짓말하는 사람'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일 정도로 사람들은 서로 간의 약속에 예민하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상대방이 나와의 약속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거나, 나와의 관계를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았거나, 나와 한 약속은 그저 무시해도 괜찮은 정도로 여겼다는 등 어느 해석도 자신에게 유쾌하게 다가오는 것은 없다.

그런데 나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은 어떨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기



까지 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한 약속도 이처럼 칼같이 지키고 있을까. 때론 약속이라는 이유로 주변 상황이나 다른 요소들을 보지 않고, 미련하게 약속 자체만 쫓는 사람들도 있다. 강제성이 없더라도 약속은 힘을 가지고 있고 어느 순간에는 힘을 잃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 약속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사람들

올림포스의 왕 제우스는 인간 여자인 세멜레를 사랑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세멜레에게 당신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런데 이를 질투한 헤라가 세мел레에게 “제우스가 하늘에서 입는 황금빛 옷을 당신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간질을 했다. 세мел레는 제우스에게 황금옷을 보여달라고 재촉했고, 어떤 부탁이든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했기에 제우스는 황금빛 옷을 세мел레에게 보여주었다. 인간이었던 세멜

레는 제우스의 빛을 견디지 못하고 불타 죽었고, 제우스는 임신한 그녀의 재를 자신의 허벅지에 넣어 꿰맸다. 이때 태어난 아이가 술의 신 바쿠스이다.

제우스는 자신이 황금빛 옷을 입으면 그녀가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녀가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다는 판단을 내려 그녀에게 황금빛 옷을 보여주는 선택을 했다.

강박적인 사람들은 약속이라는 단어에 남들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은 실패했다고 여기거나 완벽하지 않다는 자책감에 빠지기도 한다. 강박적인 사람은 스스로에게 수많은 규율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무던히도 애쓴다. 친구끼리는 돈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스스로의 철칙이 있는 사람은 지갑을 차에 두고 식당에 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시 차에 돌아가는 선택을 한다. 친구들은 식사 후에 줘도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엄연히 단기적으로 돈을 벌리는 상황이기에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규율은 갈등 없이 살아가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정한 하나의 규칙이다. 그렇기에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목적이 흐미해진다면 사랑하는 여인을 불태워 죽이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미련한 제우스가 될 수도 있다.

###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사람들

인간에게 중요한 삶의 가치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10년 전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와 5년 전이나 지금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다르다. 그렇기에 약속을 하던 당시 의미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약속을 이행할 때가 되니 그때만큼의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또는, 지금의 나에게 더 가치 있는 무언가가 과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보다 더 커졌기 때문일 수 있다. 지금 내가 중요



요아힘 폰 잔드라르트 <포세이돈과 아폴론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라오메돈> 17세기

하게 생각하는 게 당시와 달라졌다는 이유로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라오메돈이 트로이의 왕이 되었을 때, 포세이돈과 아폴론이 헤라와 함께 제우스에게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왕의 종이 되었다. 제우스에게 벌을 받아 종이 된 두 신은 트로이 성벽을 쌓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성벽 쌓기가 끝나고 나서 라오메돈은 약속한 임금을 주지 않았다. 화가 난 아폴론은 트로이에 전염병을 퍼트렸고, 포세이돈은 바다 괴물을 수시로 보내 트로이를 힘들게 만들었다.

### 같은 상황에도 다르게 반응하는 태도

누군가와의 약속이 상대에 의해 깨진다 하더라도, 지금 자신의 상황에 따라 감정과 행동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예를 들어, 토요일 오전 집에서 한 시간 거리의 약속 장소에서 누군가와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고, 옷을 차려입고, 미팅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잠뜩 기대하고 15분 일찍 도착할 생각으로 집을 나선 순간, “죄송합니다. 오늘 사정이 생겨 약속을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소중한 주말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한 것, 주말에도 사업차 사람을 만나야 하니며 아내에게 잔소리를 들었던 것 등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기분이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그러나 토요일 아침, 전날 회식으로 인해 늦게 잠든 데다가 몸살 기운까지 있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 같은 약속 취소 연락을 받았다면 오히려 ‘잘 됐다’는 안도감에 다시 마음 편히 침대에 눕게 될 것이다.

결국 약속이라는 것, 약속이 깨지는 상황은 모두 그 약속에 대한 자신의 기대감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게 된다. 로마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사람은 상황



마리 로랑생 <키스> 1927

때문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 때문에 불행해진다”라고 말한 바 있다. 모든 유쾌하고 불유쾌한 감정들은 한 개인의 현상학적 장에 따라 다르게 발현된다.

###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사람은 스스로의 자아를 분리해서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나 ‘나와의 약속’과 같은 표현들이다. 심리치료에서도 스스로에게 건네는 자기대화의 목록을 확인하고, 긍정적 자기대화의 비율을 높이고 부정적 자기대화의 비율을 낮추려는 시도를 한다.

나와 나를 분리한 사람들은 ‘나와의 약속’이라는 이름하에 다양한 약속을 한다. 다른 사람과는 서로의 사생활을 배려하며 둘의 점점만 고려해 약속을 하지만, 나와의 약속에서는 나와 약속하는 당신 역시 나이기에, 모든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강력한 약속이 될 수 있다.

‘올해는 꼭 운동을 주 2회는 해야지’, ‘반드시 금연을 해서 건강을 챙겨야지’,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예



전에 입었던 정장을 다시 꺼내 입어야지' 등 자신을 위해 하는 약속은 정말 많다. 또는 '부모님께 잘해드려야지', '아이에게 화내지 말아야지' 등 관계에 관련된 약속도 많다.

그러나 모두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지는 않는다. 아내에게 금연을 약속한 사람이 금연에 실패했을 때는 '미안해'라며 아내에게 사과를 하고, 사업체를 확장할 생각으로 마케팅 방법론을 배운 사장님들이 이를 성실히 적용하지 못하면 강사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한다. 그런데 이들은 사과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금연은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이고, 사업체 확장도 자신의 수익 향상을 위해 하는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사과하는 대상은 자신이 되어야 한다.

심리치료 현장에 오는 내담자들에게 심리치료사들은 다양한 과제를 내준다. 성실히 이행하여 변화에 다가가려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머무르고 싶은 이유를 찾으며 움직이지 않으려는 내

담자도 있다. 그리고 내담자는 어김없이 상담자에게 이번 주 과제를 해오지 않아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다. 심리치료사들은 내담자에게 사과를 듣고 대상을 자신으로 바꿔 다시 이야기하도록 한다.

### 중요한 사람과의 약속을 대하듯

약속에도 경증이 있다. 계약을 위한 미팅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약속의 자리이지만, 동창회에서 만났지만 잘 기억나지 않는 친구와 밥 한번 먹자는 약속은 인사치레에 불과할 때도 많다. 자신이 누군가와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누군가와의 약속에 크게 의미를 가지지 않았는지를 생각해본다면, 나와의 약속이 어느 상황에서 의미를 갖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스스로 나를 의미 있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믿고, 또 나의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인지해야만 나와의 약속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스스로 지금 꼭 무언가를 변화시킬 필요가 없고, 언젠가 하면 되는 건데 꼭 지금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다면,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도 무한대로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나와의 약속은 결코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한 해가 끝나가는 지금,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 속 주인공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 곰곰이 생각하며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올해 나는 어떤 결심을 했고, 무엇을 어느 정도 실천했는지를 점검해보자. 만약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면, 아직 올해는 남았으니 시도해볼 수도 있다. 운동이든, 금연이든, 변화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약속이라면 이번에는 '나'라는 아주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과 하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변화를 도모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❶



카스파르 프리드리히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 1818

컬쳐&라이프 II  
<숨겨진 명소를 찾아서>



# 이국적인 국내여행지

- 무주 덕유산 / 동두천 니지모리스튜디오

이환수\_여행 작가





## 무주 덕유산

백두대간 중 덕유산의 겨울 경치가 으뜸이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상고대가 가득 편 덕유산의 겨울은 몽환적인 느낌이 들 정도로 아름답다. 덕유산 정상인 향적봉은 해발 1,614m로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높지만, 콘돌라가 설천봉(1,520m)까지 설치돼 있어 겨울에도 정상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상고대가 내려앉은 덕유산의 설경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영하 10도 이하에 습도가 높고 바람이 많이 불지 않은 날씨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콘돌라에서 내리면 한옥 쉼터 상제루가 보이는데, 1997년에 지어진 후 설천봉의 상장이 됐다. 이곳에서 정상인 향적봉까지는 불과 600m 남짓 거리이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도 30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목은 눈꽃 터널과 홀로 서 있는 나무, 고목 등 조금씩 다른 풍경들이어서 산행을 더 즐겁게 한다. 고산 지대에서만 자라는 주목이 군데군데 서 있어 운치를 더한다. 향적봉에서 중봉으로 가는 길이 평평하고 경치가 좋아 인기가 많지만, 등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정상까지만 봐도 충분히 멋진 설경을 만끽할 수 있다.



## 주소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1로 159

## 콘돌라 왕복 이용료



대인 16,000원, 소인 12,000원

## 콘돌라 동계 운영 시간



상행 09:00~16:00 하행 16:30까지  
※ 10월 초~2월 말 주말·공휴일 사전 예약제 운영

## 여행 Tip

설천봉에는 매점이 있으므로 핫팩, 귀마개 등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면 여기서 채비할 수 있다. 아이젠도 대여해 준다.

## 인생사진 tip

정상 풍경도 멋지지만, 설천봉에서 향적봉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상제루를 바라보는 풍경이 일품이다. 또 가는 길에 눈꽃 터널이 길게 이어져 있어 터널 안에서 사진을 찍는 것도 좋다.



## 동두천 니지모리스튜디오

일본 에도시대의 한 마을을 재현해 놓은 드라마 세트장이다. 많은 드라마와 영화가 이곳에서 촬영됐으며 일본풍 배경이 필요한 사진작가들이 많이 방문했다. 2021년부터 일반인에게도 공개하면서 완벽하게 구현된 일본식 빛칸 숙박과 함께 인기 관광지로 떠올랐다. 지금은 테마파크형 드라마 세트장으로서 재미있는 요소와 역사적인 배경들이 가미돼 있다. 가운데의 호수를 중심으로 카페, 일식당, 의상실 등 자체적으로 즐길 거리가 많다.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국내에서 이국적인 풍경을 볼 수 있어 수많은 연인과 가족들이 방문하고 있다.

###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천보산로 567-12

### 운영 시간



매일 11:00~21:00(평일 입장마감 pm 7:30, 공휴일 pm 8:00)

### 가는 법



동두천중앙역(3번 출구) 60-3번 버스→조산마을회관 하차→도보 20분

### 인생사진 tip

의상실에서는 일본 전통 의상뿐 아니라 일본식 나막신, 우산, 소품 등을 대여해주기 때문에 의상을 갖추고 사진을 찍으면 더 할 나위 없는 일본 여행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정문 앞의 메인 골목과 나룻배 앞도 대표적 인생사진 스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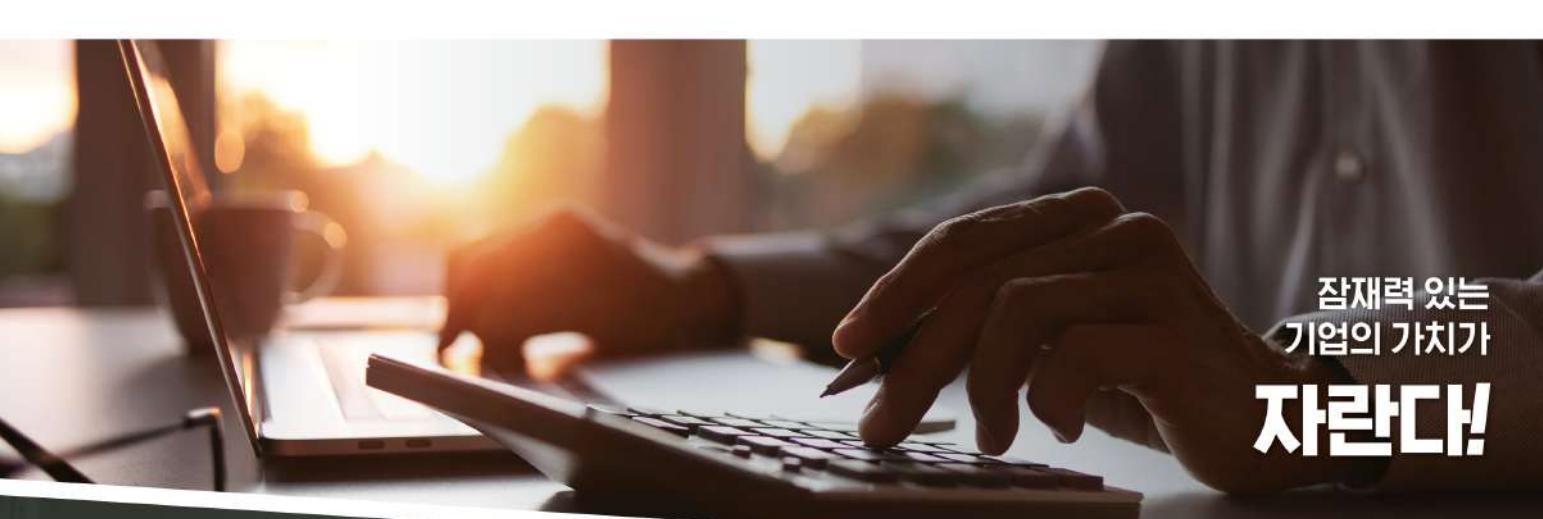


컬쳐&라이프 II  
<숨겨진 명소를 찾아서>

여행 Tip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햇빛이 있는 풍경을 원한다면 일몰 시간보다 최소 2시간 이상 일찍 가야 한다. 저녁이 되면 볼 수 있는 야경도 인기가 많아 조명이 켜지는 시간에 맞춰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잠재력 있는  
기업의 가치가  
**자란다!**



가계 자산을  
늘리는 방법을

**잘 안다!**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일도

**잘한다!**

튼튼한 대한민국 경제

투명한 회계로

**자란다 잘 안다 잘한다**

